

월간

# 재정포럼

2024. September  
Vol.339

09



---

## 권두칼럼

정부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 박진

---

## 현안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 송경호

---

## 특집

“민생 활력, 미래 도약”

2025년 예산안

| 김경국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김빛마로

---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팁 소득(Tip Income)

비과세 법안 관련 보고서 발표 외

---

Kipf

# 재정포럼

2024.09. Vol.339

월간 재정포럼 2024년 9월호 통권 제339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

## CONTENTS

### 권두칼럼

- 02 정부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 박진

### 현안분석

- 06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 송경호

### 특집

- 36 “민생 활력, 미래 도약” 2025년 예산안  
| 김경국
- 40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 김빛마로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66 미국 - 팁 소득(Tip Income) 비과세 법안 관련 보고서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정부예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들어가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송부되었다. 내년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비율은 2.9%로 예상된다. 2016~2018년에는 그 비율이 0.5~1.3%에 불과했으나 2020~2022년 중 코로나19로 인해 팽창된 재정이 아직 원상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주마가편(走馬加鞭)이 필요하다. 먼저 예산사업의 부문별 효과성을 평가해보자.

## 예산사업의 부문별 현황과 효과

학술지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 2024)』에 의하면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2위, 총규모는 5위이나 연구성과는 세계 8위에 그쳤다. 학술지는 “한국은 연구지출 대비 연구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낮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저출산 예산은 2006년 2.1조원에서 2023년 50조원 내외로 증가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같은 기간 1.13명에서 0.72명으로 떨어졌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규모도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2024년도 예산은 122조원으로 작년 대비 12%나 증가했다. 그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의 18.6%에서 2022년 14.9%로 크게 개선되진 않았다. 2013년, 2016년, 2022년은 전년 대비 악화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4년도 예산은 14.9조원이다. 2024년 정책금융은 모두 212조원인데, 이 중 상당 규모가 중소기업에 지원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 경총(2024)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2002년에는 대기업의 70%였으

나 2022년에는 58%로 떨어졌다. 올해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8.3조원이다. 최근 5년간 농림부 예산은 18.5% 증가하였으나 농업분야의 노동생산성(원/시간)은 2017년 2만 1,444원에서 2020년 1만 7,990원으로 하락하였다(「농업·농촌 발전계획」, 2023).

## 정부예산의 효과적인 운용

정부예산은 왜 효과가 낮을까? 예산과정은 ① 정책목표 설정 ② 사업설계 ③ 수혜자 선정 ④ 사후평가 순으로 전개된다. 각 단계별 문제점을 알아보자. 첫째, 정책목표가 잘못된 사업이 많다. 중소기업 지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중소기업 예산의 목표는 대체로 중소기업의 숫자와 고용규모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 늘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여야 한다. 농림부 예산도 마찬가지로 농업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농가소득 확대와 농업인구 유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농업 노동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지만 2019~2023년 중 농가 평균소득은 4,118만원에서 5,083만원으로 965만원 증가했다(e나라지표). 이 증가액 중 62%인 596만원이 정부예산 등 이전소득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예산도 목표가 잘못되었다. 인구감소 시대에 모든 기초단체의 인구유지는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비수도권에 서울에 버금가는 대도시가 있어야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다. 그러자면 지방의 대도시를 키워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여건은 유지되어야 하나 일자리 목표는 잘못이다. 국회와 정부는 부문별 핵심 정책목표를 재점검하길 바란다.

둘째, 사업설계의 문제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부처 간 분절성과 각 부처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다. 예산이 여러 사업에 분산되면 개별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져 효과가 떨어진다. 한 컵의 물을 여러 명이 제각기 뿌려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또한 각 부처는 서비스의 수요자보다는 공급자를 지원하거나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그래야 조직과 권한이 커지며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산하기관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체감과 선택이 제약되어 사업효과가 저하된다. 이 두 유형의 문제가 겹쳐 나타나는 것이 저출생 예산과 복지예산이다. 여러 부처가 직접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중앙 부처 차원에서 사업 통폐합을 하거나 예

예산과정은

① 정책목표 설정

② 사업설계

③ 수혜자 선정

④ 사후평가 순으로

전개된다.

본고에서는

정부예산의 각 단계별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란  
단순히 사업별  
감액 수준을 넘어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산을 지자체에 주면서 지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많은 사업을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하길 바란다.

셋째, 예산의 수혜자 선택 시엔 효과를 잘 낼 대상을 우선해야 한다. 예컨대 연구개발은 연구를 가장 열심히 하는 계층, 즉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과 정년임용 전 교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제도나 노조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계층에 대한 연구지원은 효과가 낮다. 우리 연구개발 예산의 효과가 낮은 이유는 공공부문 연구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복지예산도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기초연금 등 수혜자가 너무 광범위한 탓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기업에 주는 보조금도 정부가 무상 지원하면 절실하지 않은 기업도 공모에 응하게 된다. 기업에 최소 50%의 자기부담을 요구하거나 융자 사업으로 전환해야 예산을 잘 쓸 기업만 참여하게 된다. 국회와 정부는 예산의 수혜자 혹은 선정방식을 대폭 바꾸어야 할 사업을 찾아보길 권한다.

넷째, 사후평가가 작동하기 어려운 사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각 부처의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이 전반적으로 효과가 낮다고 평가 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소수의 수혜자가 문제라고 하면 그 선정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각 부처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라 자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재부가 모든 사업을 다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부처가 수혜 지자체를 직접 고르기보다는 광역단체에 예산과 선정권을 주고 광역을 평가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국회는 사업별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주체가 없다면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한편 지표가 잘못되면 평가가 없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악은 예산소진 등 투입(input) 중심 성과지표로서, 이는 성과와 무관하게 돈만 쓰면 된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과정(process) 중심 성과지표는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는 전시행정을 부추긴다. 국회는 예산사업의 성과지표가 결과(result) 중심이 아닌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 나가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란 단순히 사업별 감액 수준을 넘어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치와 정부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건드려야 한다.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전문가 집단의 협력으로 이를 성사시키는 날을 기대해 본다. 

# 현안분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kyungho@kipf.re.kr

## I. 서론

지난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 개정안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1회로 한정)를 정당한 사유<sup>1)</sup>가 존재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한도를 5%로 제한하여 임차인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보다 장기간(최대 4년(2+2년)) 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sup>2)</sup>하였다.

그러나 이 법 개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양한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와 관련된 문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sup>3)</sup> 2년 단위의 계약이 임대인의 이사나 주택 매매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sup>4)</sup>이

1)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외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보도자료, 2020. 7. 30.

3)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계약갱신/종료와 관련된 분쟁 접수 건수는 2017년(54건), 2018년(143건), 2019년(49건), 2020년(154건), 2021년(417건), 2022년(36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접수 건수는 2017년(53건), 2018년(156건), 2019년(133건), 2020년(135건), 2021년(340건), 2022년(784건)으로 집계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분쟁 건수가 증가함  
한국일보, 「“실거주하려니 나가라” “못 믿겠다” 임대차 3법 ‘소송 대란’», 2022. 6. 29.; 매일경제, 「“내가 살거니 나가라”... 임대차법 반년, 집주인·세입자 ‘웬수’됐다», 2021. 2. 7.

4) 조선일보, 「임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2020. 7. 30.; 이데일리, 「위헌논란 불사하는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 2020. 10. 19.; 세계일보, 「“임차인만文정부 국민인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논란», 2020. 8. 2.

제기되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거주 기간과 계약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했으나, 계약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제도 도입 초기에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sup>5)</sup>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제약이 늘어남에 따라 임대인의 기대 수익이 감소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sup>6)</sup>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료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와 선행연구(송경호, 2023)의 분석에 의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법 개정은 전월세 임대가격, 거래량, 주택 매매가격<sup>7)</sup> 그리고 임대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임대 계약에 대한 지불 의사 금액(willingness to pay)이 증가하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임대인의 경우, 임대와 관련된 비용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임대 공급의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료 상승 압력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임대(전월세)와 매매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으며, 한쪽의 가격이 변동하면 다른 쪽의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된다. 임대가격이 법 개정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승하면 일부 임대 수요가 매매계약으로 이동하여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전월세 가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상승할 경우, 이는 매매가격 인상<sup>8)</sup>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대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2+2년)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신규 계약의 임대료 수준과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4년 동안의 미래 가치를 현재의 계약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서, 전월세상한제를 수반한 계약갱신청구권의 옵션 가치가 현재의 임대계약에 포함되어, 기존 2년 단위 계약과 비교할 때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이때 임대료 상승 폭은 시장의 미래 임대가격 예측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계약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이자율 변동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임대료의 변동성도 커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한 미래 예측과 장기 계약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추가되어 임대료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sup>9)</sup> 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여러 영향 가운데, 이론 모형 시

본 연구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여러 영향 가운데, 이론 모형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실증분석을 통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 5) 이에 대한 상세한 실증분석 결과는 송경호(2023)를 참고
- 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 전세계약 건수 감소에 대한 자세한 실증분석은 송경호(2023)를 참고  
연합뉴스, 「임대차법 2년, 수도권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46% 증가...월세전환 가속」, 2022. 7. 31.
- 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거래량,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송경호(2023)를 참고
- 8) 임대인에 대한 규제 증가로 인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소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며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주택매매가격 하락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 9)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송경호, 2023)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법 개정이 임대가격변동성에 미친 영향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다양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은 선행연구(송경호, 2023)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차인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재계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나타난 현상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물레이션과 데이터 실증 분석을 통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실증 분석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을 평가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효과

### 계약기간 장기화의 효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인하여 2년 뒤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 시장 임대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5% 이상 임대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차인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재계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나타난 현상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면 미래를 예측하여 이를 현재 의사 결정(최초 계약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2년 뒤 전세가격이 지금 현재가격보다 20%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sup>10)</sup> 법 개정으로 인해 2년 뒤 재계약시에 전세가격을 20%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현재 계약 가격에 반영하여 현 시점의 신규 계약 전세가격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도입 초기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미래 임대료 가격 상승이 선반영<sup>11)</sup> 됨으로써 임대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sup>12)</sup>이 나타났다.

### 법 개정의 실효성

임차인에게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전월세상한제)으로 기존보다 장기간(계약갱신청구권) 거주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거주 비용이 감소하였는지 생각해도록 하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소급적용하여 기존 임대계약까지 법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법 개정을 예상하지 못한 채로 이뤄진 기존의 임대 계약 중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성공한 세입자들에게는 일회성으로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 이뤄진 신규계약은 미래 임대가격 상승 기대분이

10) 반대로 시장이 미래 임대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2년 뒤 더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초 계약가격은 기존의 2년 계약 가격과 유사하게 형성된다. 단 이 경우에도 5% 초과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자의 옵션가치(계약갱신청구권)는 신규계약 가격에 추가된다.  
11) 연합뉴스, 「국토부 장관 “중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2024. 6. 9.; 중앙일보, 「임대차 3법 손본다는 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할 것”」, 2022. 3. 29.; 이데일리, 「심교언, “임대차법 폐지...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할 것”」, 2022. 3. 29.  
12) 제도 도입 초기 임대료 가격 상승에 대한 자세한 실증 분석 결과는 송경호(2023)를 참고

모두 최초 계약 가격에 반영되며, 시장 임대료가 5%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옵션)의 가치도 최초 계약 가격에 반영<sup>13)</sup>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은 정당한 시장가격(미래 임대가격 기대 반영 + 계약갱신청구권의 옵션가치)을 지불해야 하므로 어떠한 금전적 혜택도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법 개정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임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가격이 재계약가격보다 높아지게 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며 법 개정이 의도한 효과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를 임대인이 이용하여 임대가격이 크게 상승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5%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임대인과 협상하여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sup>14)</sup>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가격 인상 기대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가치가 모두 신규계약 가격에 선반영됨으로써 임대료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세입자에게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못한 채로 시장에 다양한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있다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 부작용

제도 도입 초기에 미래 예상되는 임대료 상승분이 선반영됨으로써 전월세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sup>15)</sup>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계약기간이 장기화되고 재계약 가격이 최초 계약가격에 연동됨에 따라 미래 예상되는 가격 상승 기대분이 최초 계약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 자체가 문제점 또는 제도의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계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듀레이션 증가)

본고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임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임대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어 신규계약 임대가격이 더 높게 상승하게 된다. 예를 들어 2년 뒤 임대가격이 3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최대 5% 인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가치는 이보다 낮은 임대가격 상승률을 예상하는 경우보다 그 가치(가격)가 높아지게 된다.

14) 한겨레, 「임대차 3법? 임대인 실거주 주장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2022. 1. 26.; JTBC News, 「“전세금 안 올려주면...” 임대차법 빈틈 노린 집주인 꼼수», 2021. 8. 12.; 뉴시스, 전세값 뺀자 실거주한다'속여 임차인 내보낸 집주인... 배상은?, 2024. 8. 24.; 매일경제, 「“나가라”“못나가”분쟁... 집주인도 세입자도 증거확보 살길.», 2024. 5. 30.

15) 이에 대한 자세한 실증분석과 논의는 선행연구(송경호, 2023)를 참고

본 연구에서는 임대가격 변동성 확대, 임대가격 예측의 부정확성 증가,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에 관하여 이론 및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자율 변동에 의한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두 번째, 미래 장기간 예측의 정확도는 단기간 예측보다 정확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신규계약가격이 고려해야 하는 미래 시계열이 장기화되었으며 예측의 정확도가 낮아짐에 따라 적정가격에 전월세 매물을 계약한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위험 회피적(risk averse) 경제주체의 사전적(ex-ante)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은 감소하게 된다. 세 번째, 법의 사각지대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을 두고 임대인-임차인 분쟁이 증가하여 임대계약 과정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가격 변동성 확대, 임대가격 예측의 부정확성 증가,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에 관하여 이론 및 실증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 Ⅲ.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

#### 1. 임대가격의 변동성 - 이자율 위험

주택의 임대료는 식 (1), (2)와 같이 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미래 주거서비스( $H_{t+i}$ )의 현재가치(present-value)로 정의할 수 있다.

(2기간 임대료)

$$PV_{2,t} = H_t + \frac{E[H_{t+1}]}{1 + E[r_{t+1}]} \quad \text{식 (1)}$$

(4기간 임대료)

$$PV_{4,t} = H_t + \frac{E[H_{t+1}]}{1 + E[r_{t+1}]} + \frac{E[H_{t+2}]}{1 + E[r_{t+2}]} + \frac{E[H_{t+3}]}{1 + E[r_{t+3}]} \quad \text{식 (2)}$$

$$r_{t+1} = r_t + \epsilon_{t+1}, \epsilon \sim N(0, 1\%) \quad \text{식 (3)}$$

16) 본고에서 이자율은 미래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현 시점 기준(현재가치)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된 할인이자율로 현실에서의 이자율(고정 및 변동 금리 대출이자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우선 이자율<sup>16)</sup> 변동이 임대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계약기간 장기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요인만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 예상되는 주거서비스의 가치는 고정( $H_t = \bar{H}$ )으로 가정한다. 이자율은 식 (3)과 같이 마팅게일 과정(martingale process)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 시점 정보( $I_t$ )를 활용한 다음 기 이자율의 예측치

$(E[r_{t+1}|I_t])$ 는<sup>17)</sup> 현 시점 이자율과 동일( $E[r_{t+1}|I_t] = r_t$ )하다.

이를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100으로 고정한 경우( $H_t = \bar{H} = 100$ ), 이자율이 5%에서 6%로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는 경우(2기간 임대료)의 경우 현재가치는 2.8% 하락하는데 반대(4기간 임대료)의 경우 현재가치는 7.8% 하락하게 된다. 즉 이자율이 변동(5→6%, 20% 상승)에 대한 탄력성은 2기간의 경우 0.14, 4기간의 경우 0.39로 장기간의 계약일수록 동일한 폭의 이자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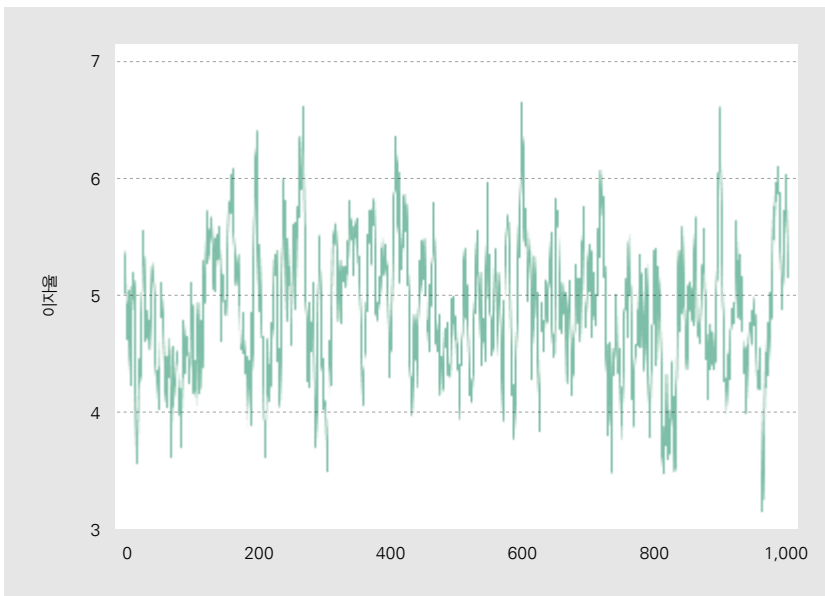
이 내용을 10,000기간(time = 1 ~ 10,000)의 가상적인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위와 동일하게 이자율은 마팅계열 과정( $r_{t+1} = r_t + \epsilon_{t+1}$ )을 따른다고 가정하며 오차항은 정규분포( $\epsilon \sim N(0, 1\%)$ )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초기 이자율( $r_0$ )은 5%로 설정하였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가상적인 이자율의 변동과 그에 따라 계산된 2기간 임대료, 4기간 임대료의 시계열 그래프를 보여준다. 동일한 이자율 변동에 대하여 임대료의 변동성이 계약기간이 2기간에서 4기간으로 장기화될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가상적인 이자율의 변동과 그에 따라 계산된 2기간 임대료, 4기간 임대료의 시계열 그래프를 보여준다. 동일한 이자율 변동에 대하여 임대료의 변동성이 계약기간이 2기간에서 4기간으로 장기화될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이자율의 변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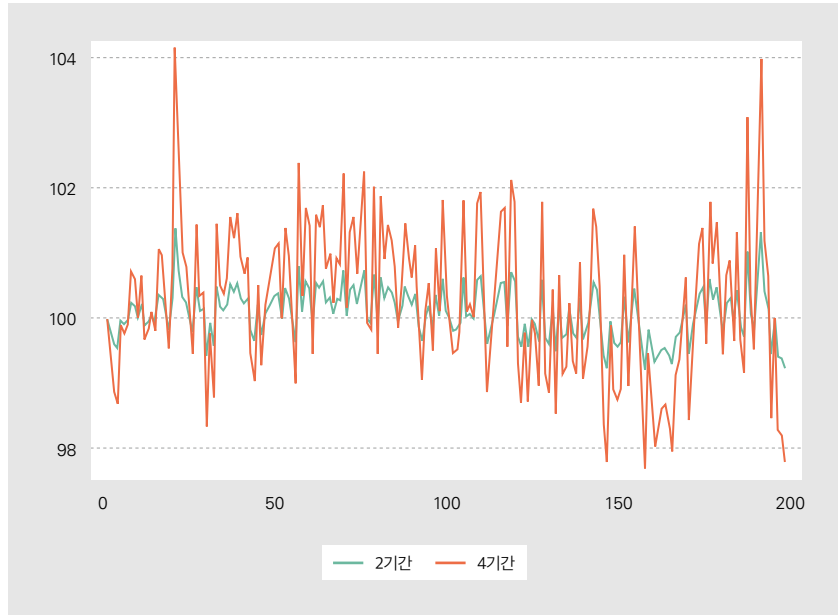


주: 전체 10,000기간 중에 1,000기간에 해당하는 그래프

17)  $E[\epsilon_{t+1}|I_t] = 0$   
 $\Rightarrow E[r_{t+1}|I_t] = r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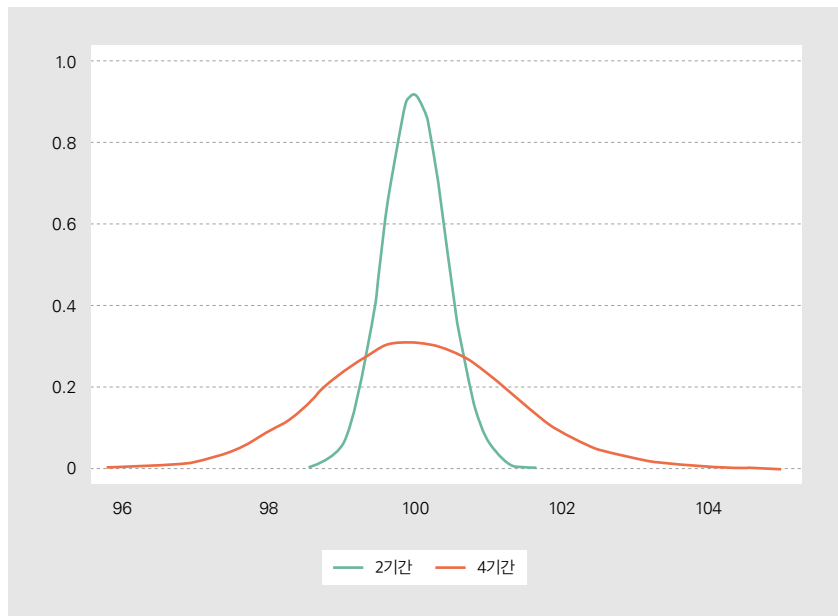
[그림 3]과 [그림 4]는 10,000기간 동안의 2기간, 4기간 임대가격을 통해 각 기간별 임대가격의 분포와 전기 대비 임대가격 변화율(%)을 kernel density를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2] 임대가격의 변동



주: 1. 전체 10000기간 중에 200기간에 해당하는 그래프  
2. t=1 시점 가격을 100으로 normal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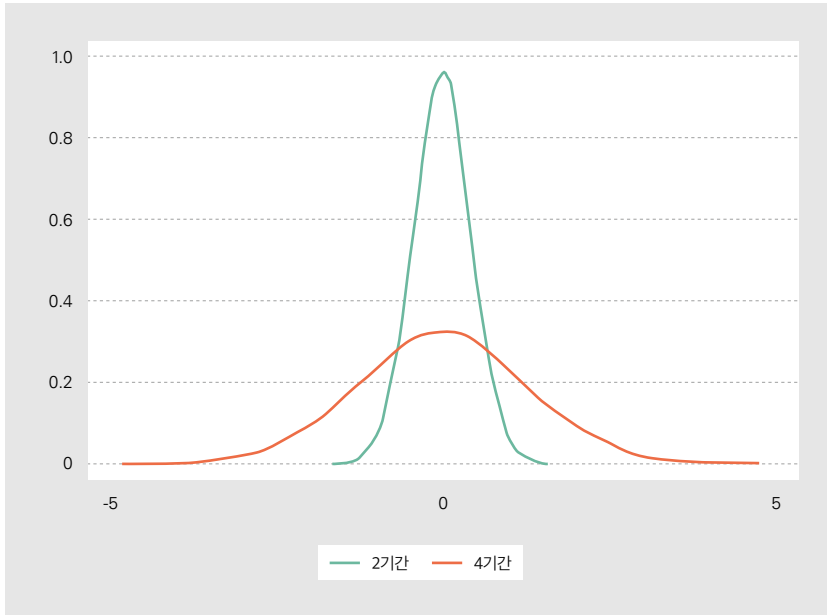
[그림 3] 임대가격 분포(1시점 가격을 100으로 normalize)



주: 표준편차 (2기간: 0.4272 / 4기간: 1.261)

[그림 4] 전기대비 임대가격 변화율

(단위: %)



주: 표준편차 (2기간: 0.4221 / 4기간: 1.245)

단기간 미래 예측의 정확도보다는 장기간 미래 예측의 정확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임대계약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계약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그림 3]과 [그림 4]는 10,000기간 동안의 2기간, 4기간 임대가격을 통해 각 기간별 임대가격의 분포와 전기 대비 임대가격 변화율(%)을 kernel density를 통해 추정한 결과이다. 2기간에서 4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변동성(가격과 변화율의 표준편차)이 약 3배가량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임대가격의 변동성 -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앞에서 설명한 이자율 변동 이외에 임대가격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은 미래 예측의 부정확성이 있다. 단기간 미래 예측의 정확도보다는 장기간 미래 예측의 정확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임대계약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계약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우선 이를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t$  시점에 미래 주거서비스의 가치( $H_{t+i}$ )가 매기 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런 경제 불황으로 미래 예상되는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래 주거서비스의 가치( $H_{t+i}$ )도 매기 7% 하락할 것으로 전망

미래 주거서비스를 예측하여 현 시점 임대료 계약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장기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다.

이 변경되었다. 이 경우 이자율이 분석대상기간 중에 고정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기간 임대료의 현재가치는 t 시점 대비 t+1 시점에 0.07% 하락하는 반면, 4기간 임대료의 현재가치는 t 시점 대비 t+1 시점에 12.52% 하락하게 된다.

미래 주거서비스를 예측하여 현 시점 임대료 계약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장기화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였다. 주거서비스의 가치( $H_{t+1}$ )는 상승(=1)과 하락(=0)을 마코프 연쇄(Markov chain)에 따라 확률적으로 반복한다.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은 이번 기(t)가 상승기(=1)인 경우 다음 기(t+1)도 상승할 확률은 a(하락할 확률은 1-a)이며, 이번 기(t)가 하락기(=0)인 경우 다음 기(t+1)도 하락할 확률은 b(상승할 확률은 1-b)라고 가정하자.

Transition matrix

		$t$	
		상승	하락
$t + 1$	상승	a	1-b
	하락	1-a	b

주거서비스의 로그 값( $\ln H$ )은 Random walk with Drift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동하며 (상승기)와 (하락기)에 다음 식 (4)에 따라 시계열이 생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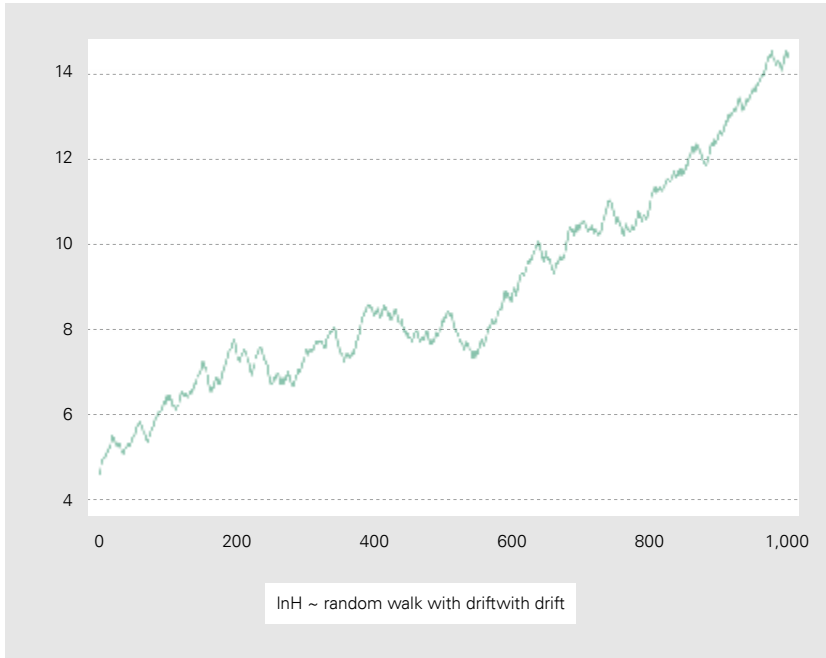
$$\text{(상승기)} \quad \ln H_{t+1} = \alpha + \ln H_t + \epsilon_{t+1} \quad (\alpha > 0) \quad \text{식 (4-1)}$$

$$\text{(하락기)} \quad \ln H_{t+1} = \theta + \ln H_t + \epsilon_{t+1} \quad (\theta < 0) \quad \text{식 (4-2)}$$

$$\epsilon \sim N(0, \sigm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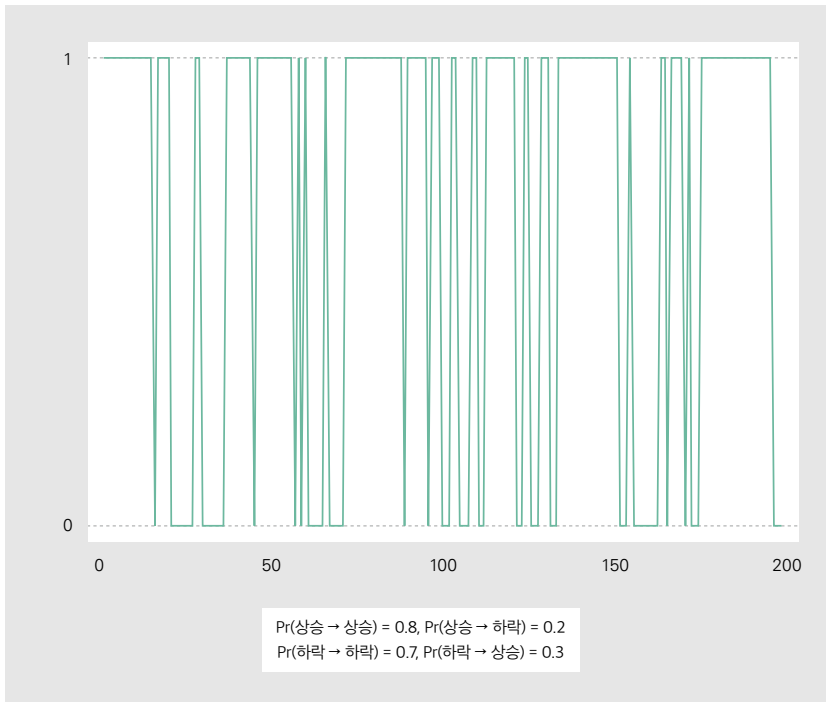
[그림 5]와 [그림 6]은 마코프 연쇄에 의한 상승기, 하락기의 확률적 변동, 식 (4)에 의한 주거서비스(H)의 시계열 변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예시이다. 예시에서는 마코프 연쇄의 전이행렬 값을  $a = 0.8(\text{Pr}(\text{상승} \rightarrow \text{상승}))$ ,  $b = 0.7(\text{Pr}(\text{하락} \rightarrow \text{하락}))$ 로 시계열을 생성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을 위해 경제주체는 상승기-하락기 주거서비스 가치가 변동하는 방식(law of motion, 식 (4))와 전이행렬(transition matrix)의 모수 값(a, b)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예측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로 주택가격의 상승기, 하락기에 관하여 지금 현재의 상황(상승기 또는 하락기)과 그에 따라 다음기에 발현될 상황에 대한 확률 값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실현된 값에 대해서는 불확

[그림 5] ln(주거서비스)의 변동



[그림 5]와 [그림 6]은 마코프 연쇄에 의한 상승기, 하락기의 확률적 변동, 식 (4)에 의한 주거서비스(H)의 시계열 변동을 그래프로 표현한 예시이다.

[그림 6] 상승기-하락기(Markov Chain)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실제  
 임대계약가격( $PV_t^e$ )과  
 사후적으로 계산한  
 적정임대가격( $PV_t$ )의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며 앞의 두 가지 유형  
 (운 좋은 또는 운 나쁜)  
 임대인-임차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성이 존재한다. 즉 이번 기가 상승기일 경우 다음 기도 상승할 확률이 80%라는 것을 알고 있을 뿐, 다음 기에 실현된 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상승 또는 하락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식 (4)에 존재하는 매기 발생하는 예측 오차항(또는 shock)의 존재로 인해 다음 기에 실현될 주거서비스의 가치(H)에 대한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며 예측한 값( $H_{t+i}^e$ )과 실제 실현된 값( $H_{t+i}$ )에는 차이(예측 오차)가 존재( $H_{t+i} \neq H_{t+i}^e$ )하게 된다. 따라서 식 (5)와 같이 예측( $H_{t+i}^e$ )에 기반한 t 시점 실제 계약가격( $PV_t^e$ , 식 (5-1))과 사후적으로 실제 실현된 값( $H_{t+i}$ )으로 역산하여 계산된 t 시점 현재가치( $PV_t$ , 식 (5-2))는 차이가 발생한다.

$$PV_t^e = H_t + \frac{H_{t+1}^e}{1+r_{t+1}^e} + \frac{H_{t+2}^e}{1+r_{t+2}^e} + \dots \quad \text{식 (5-1)}$$

$$PV_t = H_t + \frac{H_{t+1}}{1+r_{t+1}} + \frac{H_{t+2}}{1+r_{t+2}} + \dots \quad \text{식 (5-2)}$$

이를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t 시점(2년 계약) 미래 예측에 기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4억원( $PV_t^e$ )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계약 이후 주택시장이 급변하여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이 동반 하락하였으며 사후적으로 실현된 값( $H_{t+i}$ )으로 계산한 t 시점 현재가치(사후적으로 계산한 t 시점 적정가격)는 3억원( $PV_t$ )이라고 가정하자. 이처럼 경제주체의 미래 예측에 대한 오차로 인해서 운 나쁜 세입자( $PV_t^e > PV_t$ ), 운 좋은 세입자( $PV_t^e < PV_t$ )의 두 가지 유형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실제 임대계약가격( $PV_t^e$ )과 사후적으로 계산한 적정임대가격( $PV_t$ )의 편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되며 앞의 두 가지 유형(운 좋은 또는 운 나쁜) 임대인-임차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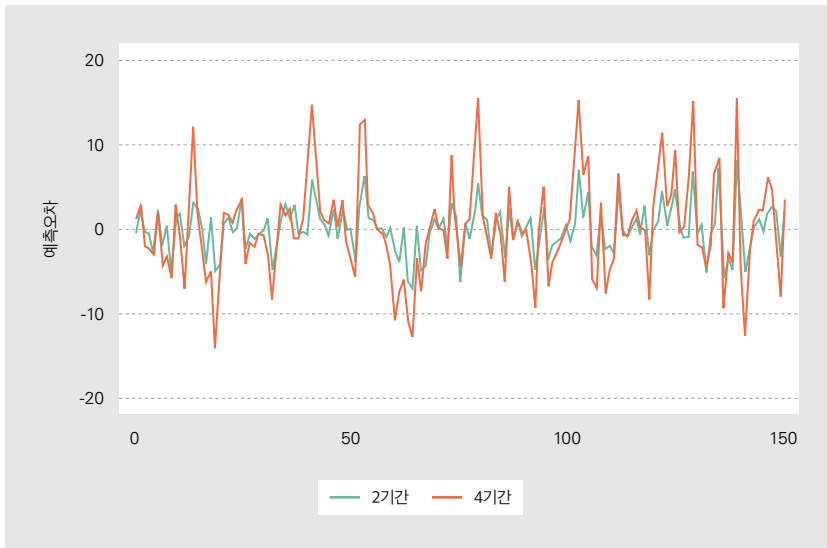
이를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한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에서는 2기간 계약과 4기간 계약을 비교하였다. 2기간 계약에서는 t+1 시점을 예측하여 현재 계약가격에 반영해야하고, 4기간 계약에서는 t+1, t+2, t+3 시점 미래를 예측하여 현 시점에 계약을 해야 한다. 각 기간별 예측의 정확도, 실제계약가격과 적정계약가격의 차이를 비교검증하기 위해 1,000 기간(period) 시뮬레이션을 500번 반복하였다. ‘2기간 계약’ 모형에서는 t+1기의 임대가격 상승-하락을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이 67.84%였으며 bootstrapping 표준편차는 1.26%였다. 반면 ‘4기간 계약’ 모형에서는 모든 기(t+1, t+2, t+3) 임대가격 상승-하락을 정확

하게 예측한 비율은 33.85%(bootstrapping SE: 2.00%), 2기간 예측성공(29.63%, bootstrapping SE(1.37%)), 1기간 예측성공(23.73%, bootstrapping SE(1.51%)), 모든 예측이 실패한 비율(12.49%, bootstrapping SE(0.77%))로 각각 나타났다.

[그림 7]과 [그림 8]은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예측 값(=실제 계약가격,  $PV_t^c$ )과 사후적으로 계산된 적정가격( $PV_t^p$ )의 차이와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7] 2기간 VS 4기간 예측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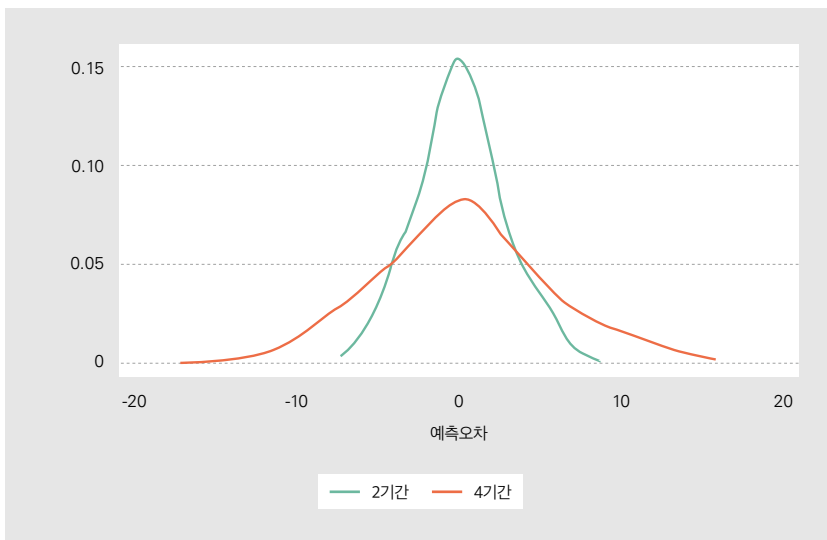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1,000period 중 150period까지만 그래프에 표시

[그림 8] 2기간 VS 4기간 예측오차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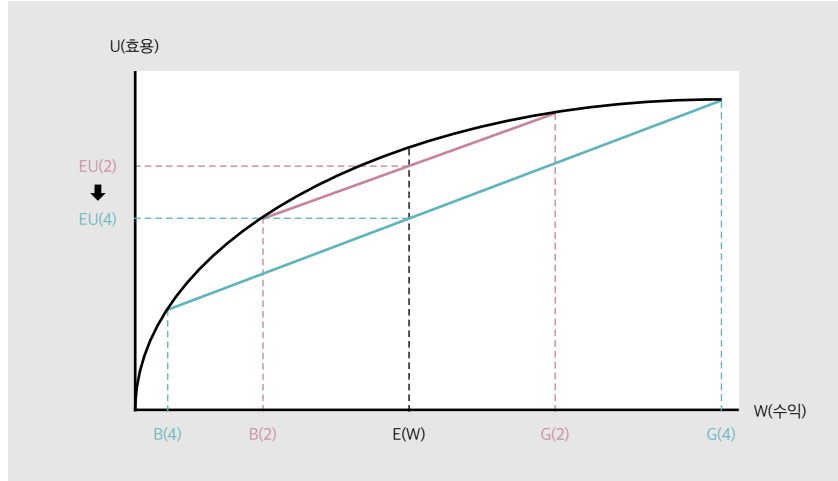
(단위: %)



주: Epanechnikov kernel 로 추정, bandwidth = 1.15

실제계약가격과  
적정임대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동일한  
기대 값( $E(W)$ )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주체는 위험회피적  
(risk-averse)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으로 인해  
기대되는 사전적인  
기대효용은 [그림 9]에  
서와 같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9] 변동성 확대로 인한 기대효용 감소



1. X축의 G(.)는 임차인 입장에서 실제계약가격이 적정임대가격보다 저렴하여 운이 좋은 상황, B(.)는 반대의(실제계약가격 > 적정임대가격) 상황을 의미, E(W)는 임대계약으로 발생하는 임차인의 기대수익(계약가격 - 적정가격)을 의미한다.
2. 괄호 ( ) 안의 숫자는 계약기간을 의미한다.
3. Y축은 임차인의 효용(utility)으로, EU(2), EU(4)는 각각 2기간, 4기간 임대계약으로 기대되는 임차인의 효용을 의미한다.

[그림 7]과 [그림 8]은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예측 값(=실제 계약가격,  $PV_t^e$ )과 사후적으로 계산된 적정임대가격( $PV_t^i$ )의 차이와 분포를 보여준다. 예측오차의 분포의 경우 2기간 모형의 예측오차 표준편차는 2.75%, 4기간 모형의 예측오차 표준편차는 5.34%로 2기간에서 4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예측오차의 편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약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운 좋은(또는 운 나쁜) 임대인(또는 임차인)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림 7]과 [그림 8]처럼 실제계약가격과 적정임대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동일한 기대 값( $E(W)$ )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주체는 위험회피적(risk-averse)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으로 인해 기대되는 사전적인 기대효용은 [그림 9]에서와 같이 감소하게( $EU(2) \rightarrow EU(4)$ ) 된다.

### 3. 임대가격의 변동성 - 소결

앞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계약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일한 이자율 변동에 대해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또한 미래 예측의 부정확성,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사후적(Ex-post)으로는 적정가

격보다 저렴하게 또는 비싸게 계약한 세입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며, 이러한 변동성의 확대에 의해 사전적(Ex-ante)으로 기대되는 임대계약의 효용이 하락하게 된다. 즉, 미래 주거서비스 가치 및 이자율(할인율)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계약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위 내용은 이론적으로 가상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2년 계약과 4년 계약을 비교 분석하였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실제 계약형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불확실한 4년(2+2년) 계약으로 확정적인 앞선 모형에서와 같이 4년 계약이 아니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기존(2년 계약)보다 듀레이션(계약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분명(최소한 2년으로 동일)하며 이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앞의 논의는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옵션)의 가치는 임대가격 상승기대에 비례하여 그 가치가 증가하며, 임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그 가치는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임대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이 2년 계약가격보다는 더 높아지는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4년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의 경우 가격비교인데, 4년 계약과 비교하여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의 장점은 예상과 다르게 임대료가 하락하는 경우 더 낮은 계약으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입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자면 가격상승 기대 시의 임대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계약 가격은 2년 계약 가격보다는 분명히 높아지며 4년 계약과 비교하면 어느 가격이 더 높을지는 불확실( $P_{4년} \leq P_{임대차} \gg P_{2년}$ )하다. 반면, 임대 가격 하락 기대 시에는 4년 계약의 임대가격이 2년 계약의 임대가격보다 더 낮으며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의 가격은 2년 계약 임대가격보다 근소하게 높게 형성된다. ( $P_{임대차} \rightarrow P_{2년}^* > P_{4년}$ )

정리하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임대계약가격은 언제나 기존의 2년 계약 임대가격보다 높으며, 임대가격의 변동성을 기존 2년 계약보다 확대시키는 문제가 존재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 2년 계약과 개정 이후의 계약가격을 비교하면, 2년 계약 가격을 하한선(low-boundary)으로 임대가격 상승 기대 시에는 두 계약 가격의 편차가 벌어지며( $P_{임대차} \gg P_{2년}$ ) 임대가격 하락 기대 시에는 두 계약 가격이 유사해지는 형태<sup>18)</sup> ( $P_{임대차} \approx P_{2년}$ )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임대계약가격은 언제나 기존의 2년 계약 임대가격보다 높으며, 임대가격의 변동성을 기존 2년 계약보다 확대시키는 문제가 존재한다.

18)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의 가격이 2년 계약 가격보다는 항상 높으므로 보다 정확하게는  $P_{임대차} \rightarrow P_{2년}^*$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모든 표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매매가격 변동이  
전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16~21%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IV. 실증분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sup>19)</sup>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

### 1. 임대가격의 변동성 (실증분석-1)<sup>20)</sup>

송경호(2023)에서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라졌는지를 식 (6)을 통해서 실증 분석하였다.

$$\begin{aligned} \log(\text{전세가격})_{ijkt} = & \alpha_i + \beta_{j, yt} \text{시도}_k \times \text{Year}_{yt} \\ & + \beta_{k, mt} \text{시도}_k \times \text{Month}_{mt} + \beta_k \text{시도}_k \times \text{time}_t \\ & + \beta_k \text{시도}_k \times \text{time}_t^2 + \beta_k \text{시도}_k \times \text{time}_t^3 + \theta X_{ijkt} + \lambda_k \text{시도}_k \\ & \times \log(\text{매매가격})_{ijkt} + \delta \text{임대차시행} \times \log(\text{매매가격})_{ijkt} + \epsilon_{ijkt} \end{aligned} \quad \text{식 (6)}$$

위 식 (6)에서<sup>21)</sup> 모형의 주요 관심변수는 ‘δ’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매매가격 변동이 전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추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 매매가격 변동이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λ<sub>k</sub>’로 시도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고, 법 개정 이후 매매가격변화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λ<sub>k</sub> + δ’로 추정할 수 있다. ‘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는 경우 매매가격변동이 전세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로 더 커진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변동성의 확대로 해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분석 표본을 2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 번째 표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법 개정(2020년 7월 30일) 이후 2020년 12월까지의 실거래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표본은 법 개정 전후(2020년)의 표본을 제외시킨 후 분석하여 법 개정 직후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 등의 효과를 제거하고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sup>22)</sup>하고자 하였다.

<표 1>은 식 (6)을 이용하여 각 표본별(시기별)로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보여

19)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 시스템 (<https://rt.molit.go.kr>)

20) 1절의 내용은 선행연구(송경호, 2023)의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21) 식 (6)에서 ‘α<sub>i</sub>’는 개별주택단위 고정효과이며 모형에서 시도별-연도별, 시도별-월별, 시도별 상이한 시계열 추세 등을 고려하고 있다.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선행연구(송경호, 2023)를 참고

22) (2), (3)의 결과와 같이 법 개정 직전-직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정책효과와 식별에는 장점이 존재하나 보다 안정적인 제도 변경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보이기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강건성 검증 및 각각의 경우 장단점을 보완하고자 단기효과((2), (3))와 중장기 효과(4)의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으며 추정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변동성 효과

표본구성	추정계수 $\delta$ (A)	매매가격계수 $\lambda$ (B)	(A / B) %	Adj. R-sq
(1) 전체표본	4.335*** (0.2868)	25.73*** (0.7743)	16.84%	0.9610
	3.752*** (0.2954)	지역별차등	-	0.9614
(2) 2018~2020년 표본	4.181*** (0.2830)	19.65*** (0.7888)	21.27%	0.9568
	3.782*** (0.2738)	지역별차등	-	0.9572
(3) 2017~2020년 표본	3.883*** (0.2719)	22.61*** (0.7139)	17.17%	0.9581
	3.313*** (0.2706)	지역별차등	-	0.9588
(4) (2011~2019년) VS (2021년 6월~2023년6월) 서울지역	7.381*** (0.0427)	42.78*** (1.437)	17.25%	0.9762
	6.831*** (0.0494)	지역별차등	-	0.9725

출처: 송경호(2023)

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모든 표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매매가격 변동이 전세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16~21% 정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분석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송경호, 2023)에서는 panel SVAR 모형<sup>23)</sup>을 이용하여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동학(dynamics)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 방향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겹 투자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줄어든 경우 전세임대에 대한 수요가 매매에 대한 수요로 이동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송경호, 2023)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세가격이 영향을 받아 상승하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매매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그림 10]은 Panel SVAR의 결과로 전세가격 충격(impulse)이 매매가격(response)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세가격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매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는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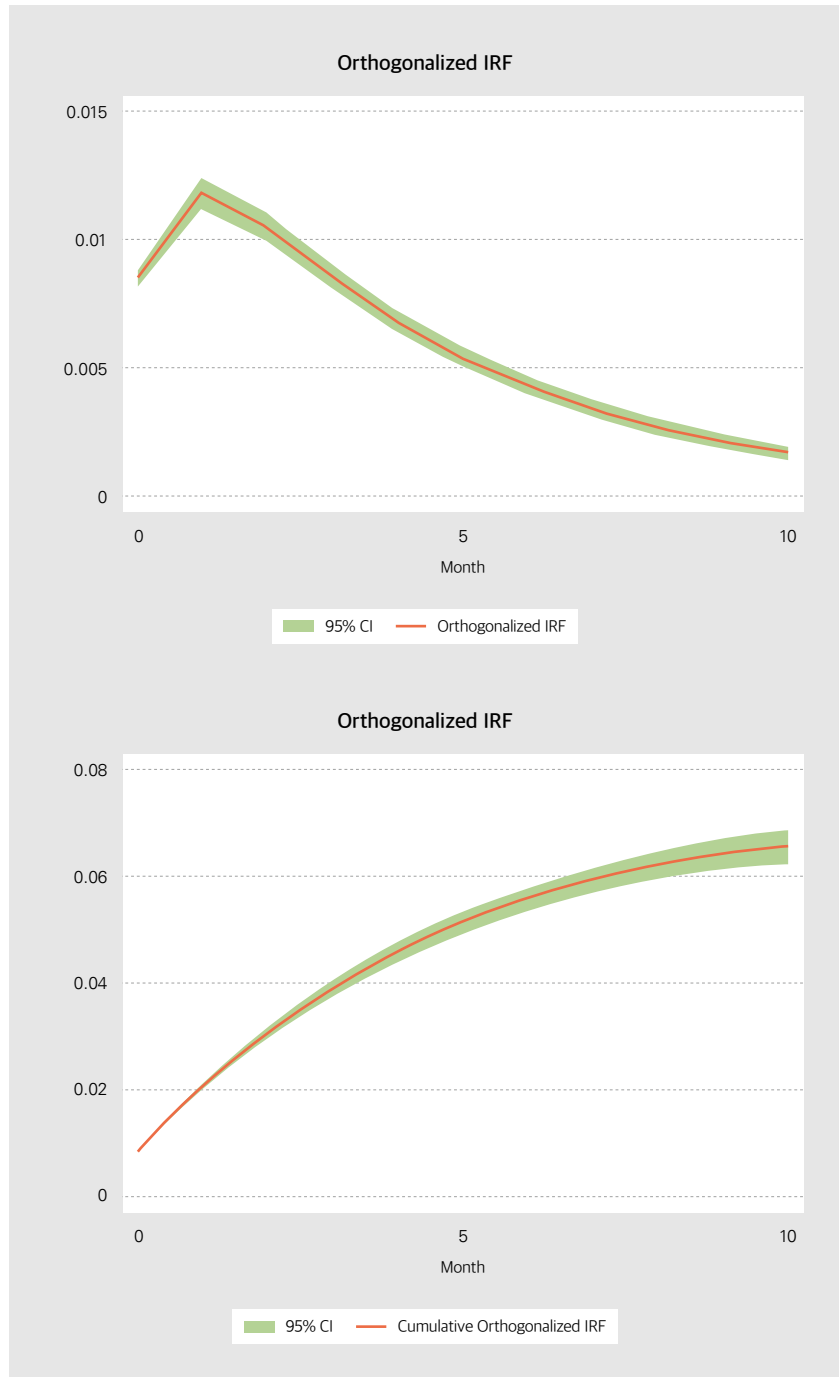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세가격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매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이는 매매가격 변동성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3)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선행연구(송경호, 2023)를 참고

[그림 10]은

Panel SVAR의 결과로  
전세가격 충격(impulse)이  
매매가격(response)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세가격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매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Panel SVAR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 1. 위의 그래프는 직교화된 충격반응함수(충격(전세가격): 반응(매매가격)), 아래 그래프는 반응함수를 누적하여  
그래프로 그린 누적된 직교화 충격반응함수 그래프  
2. 음영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함  
출처: 송경호(2023)

## 2.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실증분석-2)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지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시장 임대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집주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최대 5%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임대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최초 계약에서 최대 5% 인상된 가격으로 재계약에 성공하였다면 법 개정의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임대가격이 오른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사한 매물의 신규계약가격이 대폭 상승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증가하지만 이와 동시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오른 계약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동시에 증가하여 임대인-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올려주지 않으면 임대한 집으로 입주하겠다는 “실거주 사유”를 명분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시군구) 임대가격 상승률을 설명변수, 전체 임대 계약 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을 종속변수로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임대가격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증가하여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시장임대가격이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증가( $\beta > 0$ )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모형의 추정 결과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르지 않거나( $\beta \approx 0$ ) 오히려 음수 값( $\beta < 0$ )이 추정<sup>24)</sup>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국 시도단위 분석

계약갱신청구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 여부를 식별해야하나 법 개정 직후(2020년 7월 31일~2021년 5월 31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시장 임대가격이 오른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사한 매물의 신규계약가격이 대폭 상승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증가하지만 이와 동시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크게 오른 계약 금액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동시에 증가하여 임대인-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4) 추정 계수 값이 음수(-)로 추정된다면 시장임대료가 오를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성공한 임차인의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3만 6,631건의  
전세계약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추정 방식에 따라  
23%(최소식별)~  
29%(최대식별)의  
전세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추정되었다.

않으며 2021년 6월 이후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의 정보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 개정 직후의 실거래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한 재계약 매물을 추정하여<sup>25)</sup>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021년 6월 이후의 계약은 서울 지역의 실거래가 데이터상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23만 6,631건의 전세계약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추정 방식에 따라 23%(최소식별)~29%(최대식별)의 전세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실제로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2021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지역 총 9만 1,406건의 전세계약 중에서 24.5%(2만 2,358건)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된 방법론에서의 추정 값과 그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도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추정 값)과 전세가격 상승률 (2020년 8월~2021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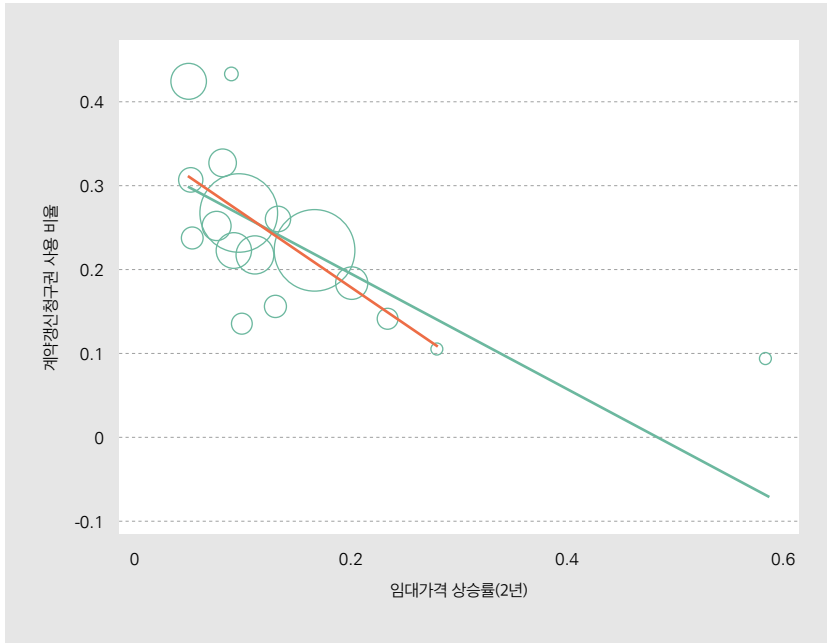
(단위: 건, %)

시도	Method 1 (최소식별)		Method 2 (최대식별)		전체	2년간 상승률 <sup>1)</sup>
세종	306	(9.4)	410	(12.6)	3,253	58.4
울산	395	(10.7)	464	(12.6)	3,682	27.9
대구	1,171	(13.7)	1,367	(16.0)	8,539	10.0
대전	1,058	(14.3)	1,363	(18.4)	7,398	23.4
충남	1,179	(15.8)	1,619	(21.7)	7,453	13.1
인천	2,672	(18.5)	3,650	(25.3)	14,434	20.1
부산	3,670	(22.0)	3,984	(23.9)	16,657	11.2
경기	15,736	(22.5)	20,224	(28.9)	69,989	16.7
경남	2,933	(22.5)	3,387	(26.0)	13,022	9.2
광주	1,276	(23.9)	1,541	(28.8)	5,347	5.5
경북	2,087	(25.3)	2,286	(27.7)	8,256	7.7
충북	1,703	(26.2)	1,967	(30.3)	6,501	13.3
서울	14,263	(26.9)	18,950	(35.7)	53,031	9.7
전북	1,626	(30.8)	1,895	(35.9)	5,274	5.3
강원	1,882	(32.8)	2,186	(38.1)	5,734	8.2
전남	2,965	(42.6)	4,152	(59.6)	6,963	5.1
제주	477	(43.4)	538	(49.0)	1,098	9.0
전국	55,399	(23.4)	69,983	(29.6)	236,631	13.2

주: 1) 2년간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종합지수(아파트)를 활용하여 시도별로 계산

25) 모든 전세거래에 대하여 주소(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유형(type), 층이 모두 동일한 24개월(±3개월) 전 모든 거래를 매칭하여 각 매물별로 전세가격 상승률을 계산하였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계약, 5% 이하인 경우 재계약으로 추정하였으며 위 조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매물이 발견되는 경우 모든 계약이 5% 임대료 상한을 충족시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로 정의하는 방식(method 1), 한 건 이상의 계약이라도 5% 임대료 상한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매물로 정의하는 방식(method 2)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보다 자세한 패널데이터 구축 및 재계약매물 식별 방법에 대해서는 송경호(2023)에 보다 자세히 기술하였다.

[그림 11] 임대가격 상승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의 관계



- 주: 1. <표 2>의 데이터(Method 1)를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원의 크기는 거래량을 의미함
- 2. 전체 데이터에 거래량 가중치를 적용한 회귀선(regression line)의 기울기는 -0.6892\*\*\*, 아웃라이어인 지역(세종)을 제외하는 경우 기울기는 -0.8786\*\*\*으로 추정됨
- 3. (Method 2)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거래량 가중치를 적용한 회귀선(regression line)의 기울기는 -0.8760\*\*\*(전체), -1.133\*\*\*(세종 제외)

<표 2>와 [그림 11]은 광역시도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직후(2020년 8월~2021년 2월) 전국의 전세계약 중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 비율을 추정하여 표와 그래프로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11]은 <표 2>의 데이터(Method 1)를 그래프로 나타냈으며 원의 크기는 각 시도별 거래량을 의미한다. 전체 데이터에 거래량 가중치를 적용한 회귀선(regression line)의 기울기는 -0.6892\*\*\*, 아웃라이어인 지역(세종)을 제외하는 경우 기울기는 -0.8786\*\*\*으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추정되었다. 또한 'Method 2'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는 -0.8760\*\*\*(전국), -1.133\*\*\*(세종 제외)으로 이 역시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즉, 시도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계약 당시 지역의 임대료 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성공한 임차인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적인 사례로 임대가격 상승률이 2년 전 대비 58.4%로 가장 높았던 세종시의 경우는 전체 전세계약 중에

시도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계약 당시 지역의 임대료 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성공한 임차인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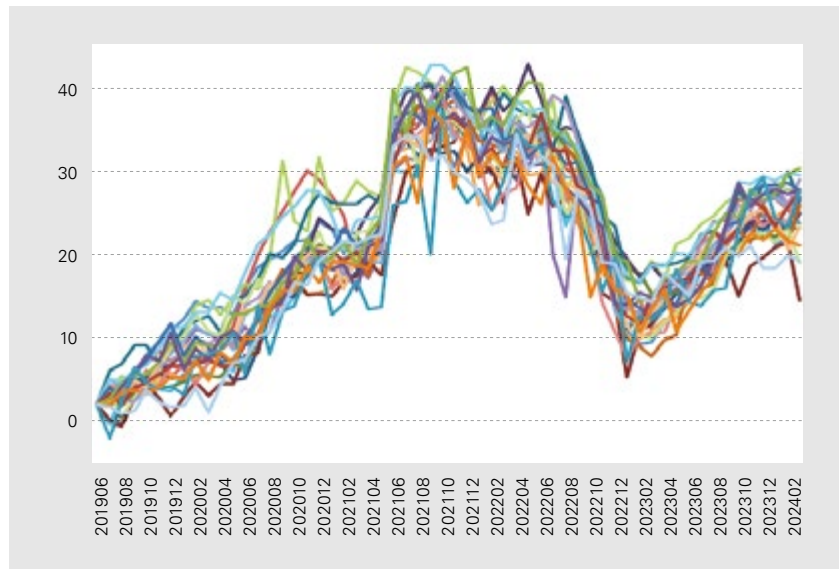
다음으로 2021년 6월 이후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재계약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별주택단위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임대가격 상승률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9~12%만이 이 시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매물로 추정이 되어 해당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미미함을 의미한다.

### 서울 지역구 단위 분석

다음으로 2021년 6월 이후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재계약 여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개별주택단위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임대 가격 상승률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확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실거래 데이터상의 모든 전세거래를 활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sup>26)</sup> 지역별(구 단위) 전세가격변화율을 지수화하여 추정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지역별 전세가격지수를 생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5%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계약(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의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수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없는 신규계약 매물만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대체제의 가격 상승률을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분석목적에도 부합하므로 모든 계약을 활용하는 방식보다 타당한 분석방법이다.

[그림 12] 서울 지역구별 전세가격 지수 변화율(2019년 6월 = 100)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6) 패널데이터 구축 방법에 대해서는 송경호·권성오 (2020)를 참고

[그림 12]는 신규계약만을 이용하여 25개 지역구별로 전세가격지수의 변화율을 추정된 그래프로 2019년 6월을 기준시점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종속변수, 지역별 임대료상승률을 설명변수로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에는 종속변수가 binary(계약갱신청구권 사용(=1) or 미사용(=0))이므로 LPM(linear probability model), Probit, Logi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임대료상승률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강건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임대료상승률이 5% 미만인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의미하므로 지역의 평균적인 임대료상승률이 5% 이상인 경우를 세분화하여(5% 이상, 10% 이상, 20% 이상)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3>에 의하면 다양한 모형(LPM, Probit, Logit)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 시장 임대료상승률이 높아질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LPM 모형의 결과를 해석하면 시장 임대료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법 개정 취지 및 목적과 달리 5% 이상 임대료가 상승한 경우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표 3> 계약갱신청구권의 실효성 분석 결과(개별주택단위 분석)

$\beta \times 100$	종속변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1 / 미사용 = 0								
	LPM			Probit			Logit		
	(1)	(2)	(3)	(4)	(5)	(6)	(7)	(8)	(9)
임대료 상승률	-0.1384 (0.0127)	-0.2946 (0.0157)	-0.3980 (0.0242)	-0.0042 (0.0004)	-0.0089 (0.0004)	-0.0122 (0.0007)	-0.0070 (0.0006)	-0.0149 (0.0007)	-0.0206 (0.0013)
지역구별 고정효과	0	0	0	0	0	0	0	0	0
표본구성	> 5%	>10%	> 20%	> 5%	>10%	> 20%	> 5%	>10%	> 20%
Obs.	203,970	193,010	162,863	203,970	193,010	162,863	203,970	193,010	162,863

IV Regression (IV = L.임대료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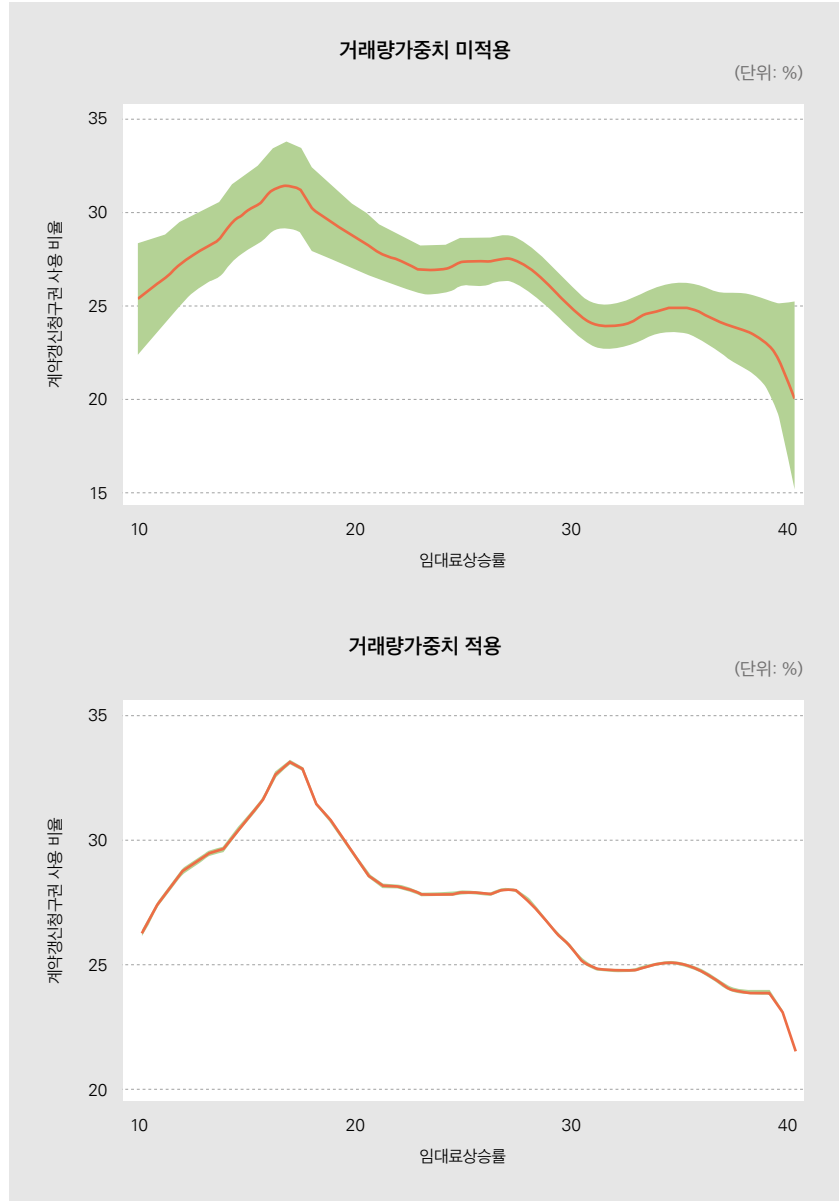
임대료 상승률	-0.0911 (0.0151)	-0.2597 (0.0197)	-0.3749 (0.0342)	-0.0028 (0.0004)	-0.0078 (0.0005)	-0.0114 (0.0010)	-0.0049 (0.0008)	-0.0127 (0.0009)	-0.0155 (0.0014)
지역구별 고정효과	0	0	0	0	0	0	0	0	0
표본구성	> 5%	>10%	> 20%	> 5%	>10%	> 20%	> 5%	>10%	> 20%
Obs.	203,970	193,010	162,863	203,970	193,010	162,863	203,970	193,010	162,863

주: 1. 괄호( ) 안의 값은 지역구 단위 cluster SE

2. 임대료상승률의 계수 값은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 표시는 생략함

[그림 13]은 25개 지역구별로 합산하여 월별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비율을 계산하고 월별 임대료가격 상승률(2년 전 대비)을 이용하여 두 지표 간의 관계를 국소다항회귀(local polynomial regression)로 추정한 결과이다.

[그림 13] 임대료상승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의 관계



주: 1. Local Polynomial Regression 결과, Epanechnikov Kernel, Degree = 0, Bandwidth = 1  
2. 음영은 95% 신뢰구간

27) 분석 대상 전체기간(2021. 6. ~ 2024. 2.) 중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22.3%(전체 전세거래(351,771건))  
28) IV-LPM 모형의 결과를 기준으로 시장 임대료 상승률에 따라 -0.0911(5% 이상 상승), -0.2597(10% 이상 상승), -0.3749(20% 이상 상승)으로 각각 추정됨

가 20%에서 30%로 10%p 상승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3.75%p 하락( $\beta < 0$ )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sup>27)</sup> 모든 모형에서 시장 임대료상승률이 높아질수록 추정된 계수 값은 절대 값이 더 큰 음수(-)로 추정<sup>28)</sup>되었다. 따라서 분

석 결과를 해석하면, 법 개정 취지 및 목적( $\beta > 0$ )과 달리 5% 이상 임대료가 상승한 경우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임대료가 크게 상승할수록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13]은 25개 지역구별로 합산하여 월별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비율을 계산하고 월별 임대료가격 상승률(2년 전 대비)을 이용하여 두 지표 간의 관계를 국소다항회귀(local polynomial regression)로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2년 전과 비교하여 대략 15% 미만으로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증가( $\beta > 0$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상 임대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오히려 감소( $\beta < 0$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소다항회귀를 통해 시장임대료 상승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여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절실한 경우에 이에 대한 사용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분석의 한계점

끝으로 제Ⅲ장의 이론모형 분석과 제Ⅳ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한계점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론모형 분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보이기 위해 이자율 위험, 미래 예측의 부정확성 등에 초점을 맞춰 계약기간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이 외에 저자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추가적인 효과가 수반될 수 있으며 고려하지 못한 요인들이 임대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변화(불완전한 4년(2+2년))를 모형에서 단순화하여 2년 계약과 4년 계약을 비교하였으므로 실제 나타나는 결과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전과 비교하였을 때는 임대 계약기간이 최소한 같거나 (2년) 더 길어지게(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되므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론 모형의 결과와 효과의 방향은 일치할 것으로 판단한다.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2021년 6월 까지 이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

시장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여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절실한 경우에 이에 대한 사용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대부분은  
시장 임대료의 상승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임대료 상한 폭(5%)의  
격차가 커질 때  
발생한다.

간(2021년 6월 이후)은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정보가 존재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 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계약 기간이 기존 2년에서 2+2년(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계약의 임대료 수준과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임대 가격 수준 측면에서는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계약 갱신청구권의 옵션 가치가 임대료에 추가되어 기존 2년 단위 계약과 비교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때 임대료 상승 폭(계약갱신청구권 옵션 가치)은 시장이 예측하는 미래 임대가격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임대 가격의 변동성 측면에서는 계약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임대료 변동성이 커진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한 미래 예측이 임대 계약 가격에 영향을 미쳐 적정 계약 가격과 실제 계약 가격 간의 차이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위험 회피적인 임차인의 임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전적인 기대 효용이 감소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여 초기 계약 가격과 거의 동일한 수준(5% 인상 상한)으로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실제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론적 검토 및 실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대가격의 변동성은 확대되었고, 제도 도입 초기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신규 계약 시 과도하게 상승한 전세금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했으며, 전세 매물의 급감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대부분은 시장 임대료의 상승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임대료 상한 폭(5%)의 격차가 커질 때 발생한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대료를 충분히 올리지 못한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 공

급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대료 외의 비용(관리비, 수선비 등)을 인상하여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효과<sup>29)</sup>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30~40% 급등한 경우와 5%가량 상승한 경우에 동일하게 5%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경직된 법 적용은 시장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임대료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5% 상한을 임대인에게 강요하는 경우,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 임대료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이 하락하여 법 개정이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임대시장 상황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광역시도별) 및 주택 유형별(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전월세임대료 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월세상한제에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을 시장 임대료 상승분의 50%로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가령,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30% 상승한 경우, 전월세상한제에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을 30%의 절반인 15%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전월세상한제의 임대료 상한이 낮게(즉, 강력한 임대료 상한 규제) 설정될수록 단기적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언급한 다양한 부작용 및 편법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경직된 형태의 임대료 상한 규제는 수정 보완이 시급하며, 시장 임대료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최초 2년 계약에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로 2년이 더해져 총 4년(2년+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2년 단기 계약의 형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9) 매일경제, 「싼 월세보고 갔다 관리비 보고 깜짝... 원룸·오피스텔 콤수 인상 차단」, 2023. 8. 2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2년 단기 계약의 형태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옵션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려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계약 형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양측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2년 단기 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4년(2년+2년) 계약의 가격이 조정<sup>30)</sup>되어 두 계약 형태가 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뒤 전월세 임대료가 전월세상한제에서 규제하는 범위보다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신규 계약의 가격이 현 시점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가 더 저렴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2년 단기 계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료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 보다 저렴한 2년 단기 계약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다. 이러한 기존의 단기 계약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 변동성 증가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 정책제언을 토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30) 임대료 상승 기대 시:

$$P_{2+2년} > P_{2년}$$

임대료 하락 기대 시:

$$P_{2+2년} \rightarrow P_{2년}$$

## 참고문헌

-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보도자료, 2020. 7. 30.
- 송경호·권성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 주택시장, 8.2대책, 9.13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송경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 『뉴시스』, 「전세값 뛰자 ‘실거주한다’ 속여 임차인 내보낸 집주인...배상은?」, 2024. 8. 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3\\_0002860818](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3_0002860818), 검색일자: 2024. 9. 9.
- 『매일경제』, 「“나가라” “못나가” 분쟁...집주인도 세입자도 증거확보 살길」, 2024. 5. 30., <https://www.mk.co.kr/news/economy/11029115>, 검색일자: 2024. 9. 9.
- \_\_\_\_\_, 「“내가 살거니 나가라”...임대차법 반년, 집주인·세입자‘웬수’됐다」, 2021. 2. 7., <https://www.mk.co.kr/news/realstate/9740555>, 검색일자: 2024. 8. 29.
- \_\_\_\_\_, 「싼 월세보고 갔다 관리비 보고 깜짝...원룸·오피스텔 꿈수 인상 차단」, 2023. 8. 21., <https://www.mk.co.kr/news/economy/10812126>, 검색일자: 2024. 8. 29.
- 『세계일보』, 「“임차인만 文정부 국민인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논란」, 2020. 8. 2., <https://segye.com/view/20200802505684>, 검색일자: 2024. 9. 9.
- 『조선일보』, 「임대차법 통과, 집주인도 세입자도 대혼란」, 2020. 7. 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24.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24.html), 검색일자: 2024. 8. 29.
- 『연합뉴스』, 「임대차법 2년, 수도권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46% 증가...월세전환 가속」, 2022. 7. 31., [https://www.yna.co.kr/view/AKR20220731001000003?site=mapping\\_related](https://www.yna.co.kr/view/AKR20220731001000003?site=mapping_related), 검색일자: 2024. 8. 29.
- \_\_\_\_\_, 「국토부 장관 “중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2024. 6. 9.,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9014851003>, 검색일자: 2024. 8. 29.
- 『이데일리』, 「심교연, “임대차법 폐지...단계적 추진방안 마련할 것”」, 2022. 3. 2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78406632268240&mediaCodeNo=257&OutLnkChk=Y>, 검색일자: 2024. 8. 29.
- \_\_\_\_\_, 「위헌논란 불사하는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 2020. 10. 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235>, 검색일자: 2024. 8. 29.
- 『중앙일보』, 「임대차 3법 손본다는 인수위 “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할 것”」, 2022. 3. 2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235>, 검색일자: 2024. 8. 29.

『JTBC News』, 「“전세금 안 올려주면...”임대차법 반등 노린 집주인 꼼수」, 2021. 8. 12.,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9842](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19842), 검색일자:  
2024. 8. 29.

『한겨레』, 「임대차 3법? 임대인 실거주 주장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2022. 1. 26.,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28935.html>, 검색일자: 2024. 8. 29.

『한국일보』, 「“실거주하러니 나가라” “못 믿겠다” 임대차 3법 ‘소송 대란’」, 2022. 6. 2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317260001553>, 검색일자:  
2024. 8. 29.

국토교통부, 실거레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검색일자: 2024. 8. 29.

한국부동산원, 전월세통합지수(아파트), <https://reb.or.kr>, 검색일자: 2024. 8. 2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  
보호법](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일자: 2024. 8. 29.

# 특집

**+ “민생 활력, 미래 도약” 2025년 예산안**

김경국 |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01

## “민생 활력, 미래 도약” 2025년 예산안



김경국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 I. 서론

‘순풍에 돛을 단 배’라는 말이 있다. 배가 갈 방향으로 순풍이 불면 순조롭게 일이 풀린다는 뜻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배가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이다. 올바른 민생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2025년 예산안의 지향점은 “책임 있는 민생 해결”이다.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처방이 아닌,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을 택했다. 소상공인 경영 여건을 분석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는 매출 신장을,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는 비용 부담 완화를, 폐업 위기에 처한 업체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자영업자 부실 대출을 회피하거나 이연시키지 않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채무조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했다.

최근 우리 경제지표는 수출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힘들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 저출생 대응, 의료개혁, 잠재생산성 제고 등 구조적 문제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국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커져가는 기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곳 적 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심 끝에 2025년 예산

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II. 2025년 예산안 주요 내용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적 경제를 바탕으로 서민·중산층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② 경제 활력 확산, ③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④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외교라는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했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구조조정, 협업예산이라는 재정운용 혁신도 병행하였다.

### 1. 내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 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먼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연간 생계급여 지급액을 2,3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만원 인상하고(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도 3년 연속 역대 최대치인 6.42% 인상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편입을 위해 일자리에 중점을 두었다. 노인일자리를 110만개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도 75.6만명으로 확대했다.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예산이 강화되었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시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신설하여 자립을 촉진하고자 했다. 누구나 교육

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인원을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연 240만원의 주거장학금도 신설했으며, 서민층의 주거안정 사다리 구축을 위해 공공주택도 역대 최대 수준인 25.2만호로 공급을 확대하였다.

#### 나. 경제활력 확산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반도체, 바이오, AI 등에도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반도체는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금년 5월 발표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면서, 내년도도 반도체 저리대출 4.3조원 등 신규사업을 다수 편성하였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도 3대 게임체인저, 12대 전략기술 등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29.7조원까지 확대했다.

한편 수출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활력 온기가 민생경제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장기간 고금리, 고물가가 누적되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 3중세트와 배달료 30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스케일업을 위한 전용 자금 0.4조원 등을 통해 소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폐업이 불가피한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원활한 채무조정과 폐업, 재창업을 지원한다.

#### 다.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 가정 양립, 돌봄, 주거 관련 예산도 확충하였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250만원으

로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20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출산한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3만호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청년 일 경험을 5.8만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특화 취업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연수의 빈 일자리 3종 패키지도 신설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 2.2%의 저리 청년주택 드림대출을 신설하였으며,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매칭비율도 확대하였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으로 총 20조원 이상을 대규모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재정은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력양성과 인프라 투자에 2조원을 집중 투자하였다. 내과·외과·소아과 등 8대 필수과목에 전공의 교육·실습비와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도 0.4조원을 투자한다.

### 라.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신유형·고강도 재해와 첨단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극한 호우에 대비한 지역단위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35개소로 확대하고, 대형 복합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방수차 등 장비도 다수 구축하였다.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

를 현행 48시간에서 10분 내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AI 영상·음성분석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다.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는 병봉급을 월 205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군 자긍심을 고취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여 국방력이 더욱 튼튼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협력 예산도 증액되었다.

## 2. 재정운용 혁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금까지 소개한 4대 투자 중점을 바탕으로 하는 2025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이다. 이로써 코로나 이후 최초로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를  $\Delta 2.9\%$ 로 축소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안(GDP 대비  $\Delta 3\%$  이내) 내로 안착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3%로 전년 대비 +0.8%p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중기 재정운용계획상에서도 50% 수준으로 안정적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필요한 정책소요를 충분히 뒷받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아래의 2가지 재정운용 혁신 노력에 기인한다.

### 가. 지출 구조조정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 이후로 전 부처가 합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모든 부처가 소관 사업 중에서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관행적 사업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총 24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로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경직적 기관운영 경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지출을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비효율성을 더욱 확실하게 제거하고자 했다. 절감된 재원은 보다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함으로써 중요한 정책과제에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협업 예산

복잡한 경제·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다부처 협업예산도 추진했다. 5월 초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협업 예산 추진 방안을 의결하고, 범부처 논의를 거쳐 16개 과제를 선정했다. 16개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협업과제별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다부처 예산을 공동 기획하고, 공동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여 공동으로 심의했으며, 향후 집행 단계에서도 합동 공모와 성과관리 등을 통해 공동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인 협업예산 사례를 유형별로 한 가지씩 소개해 본다. 첫 번째, 프로젝트형은 특정 목표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투자함으로써 단기간 내 성과를 창출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민간과 지자체가 쇠퇴 상권 발전 전략을 수립해 오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3~4개소를 선정하여 주차장과 상가 리모델링(국토부), 소상공인 판로개척(중기부), 문화행사(문화부) 등 다부처 사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전 주기 협력형은 수요자 관점에서 성장 경로 이행을 위해 다부처 사업을 단계별 이어달리기로 지원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유학생으로 입

국한 외국인력이 최종 정착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수요조사(중기부)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유학생을 유치(교육부)하고 졸업 후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을 매칭(중기부)하면서 비자를 지원(법무부)하는 등 필요한 후속사업을 릴레이로 연계한다.

마지막, 효과제고형은 부처 단위를 넘어 특정 분야 단위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재점검하여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하고 시의성 있는 핵심사업에 재투자한다. 예를 들어 최근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 외교부 등 전 부처 사업을 부처 합동으로 점검해 소규모·저성과·집행부진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다부처 유·무상 연계 또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사업은 증액했다.

### Ⅲ. 맺음말

2025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3년차 예산안이다. 지난 2년간의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초 전환과 재정누수 차단으로 튼튼한 재정의 기초 체력을 마련했다면, 내년 예산안에서는 그간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실전 동작까지 나아가 국민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재정운용의 중심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원칙하에 이번 예산안은 철저히 민생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국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고민했다.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 02

#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sup>1)</sup>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bmrkim@kipf.re.kr

## I. 서론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5년 예산안」은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표방하고 있으며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1)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 2)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 3)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예산안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큰 틀하에, 정부는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② 경제활력 확산, ③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④ 안전화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를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발표한 예산안인 「2025년 예산안」은 그 기본방향 및 투자 중점 분야 등 측면에서 기존에 발표된 예산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예산안의 기본방향에서 건전재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꾸준히 강조하는 한편,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예산안의 투자 중점 분야 측면에서도 약자복지, 역동경제 및 경제활력, 미래준비, 안전, 글로벌 중추 등을 키워드로 반복 제시하고 있다.

한편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

1) 원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박사님, 오종현 박사님, 정다운 박사님, 권성준 박사님과 익명의 논평자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표 1> 2025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투자 중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li> <li>•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li> <li>•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li> </ul>
	경제활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li> <li>•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형 R&amp;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li> <li>•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li> </ul>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으로 저출생 대응</li> <li>•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li> <li>• 인재·산업·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li> </ul>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li> <li>•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자긍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li> <li>•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 창출</li> </ul>

출처: 기획재정부,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4.

<표 2> 최근 정부 예산안의 투자 중점 분야 변화 추이

2023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확산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출처: 기획재정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2.

\_\_\_\_\_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3.

\_\_\_\_\_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4.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 2) 건전재정기조하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지원, 3)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으로 재정운용 효율화 등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기본방향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하여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재정혁신 노력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국방·치안·재난 대비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 본질기능 강화,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 등 혁신생태계 조성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미래 대비 역량 제고가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 효율화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 재정준칙 법제화 및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앞서 논의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 역시 큰 틀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기조와 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필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표 3>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

기본방향	주요 내용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중장기 지출소요 대비 등을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 지속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노력 병행
건전재정기조하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지원	-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과 국방·치안·재난대비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본질기능 강화 -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 등 혁신생태계 조성 과 인구조조 변화 대응 등 미래 대비 역량 제고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으로 재정운용 효율화	- 관행적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유사·중복 정비, 조세·재정지출 연계 등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 -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등 국고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 민자사업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등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 변화

2022~2026년	2023~2027년	2024~2028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기조 견지
우리 경제·사회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은 적극 수행	약자복지 강화, 미래 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 분야에 과감히 투자	건전재정기조하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지원
근본적인 재정제도 개혁,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뒷받침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 지속 추진	지출 재구조화 등 재정혁신으로 재정운용 효율화

출처: 대한민국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_\_\_\_\_,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_\_\_\_\_,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이렇듯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향성이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은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2022년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정운용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탄력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제Ⅱ장에서는 재정총량, 제Ⅲ장에서는 분야별 재원배분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 II. 재정 총량

### 1. 개요

정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총량 관점에서 검토하기에 앞서 현재의 경제 및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던 물가상승률이 원자재 가격 안정,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중기 시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역시 역사적으로는 낮은 수준이지만 3% 초반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사이의 분쟁 가

능성, 이상 기후 등은 잠재적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추세이며, 반도체 등 주요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 및 경제성장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2025년에도 성장세는 다소 둔화 되겠지만 물가안정 및 경기회복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운용 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2023년의 기업실적 악화 등에 기인하여 2024년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총국세수입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국세수입은 최근 개선된 기업 실적의 영향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세수입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및 중기 시계에서의 재정수입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판단

<표 5>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실적치	전망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b>세계 경제성장률</b>	<b>3.3</b>	<b>3.2</b>	<b>3.3</b>	<b>3.2</b>	<b>3.1</b>	<b>3.1</b>	<b>3.1</b>
<b>선진국</b>	<b>1.7</b>	<b>1.7</b>	<b>1.8</b>	<b>1.8</b>	<b>1.7</b>	<b>1.7</b>	<b>1.7</b>
미국	2.5	2.6	1.9	2.0	2.1	2.1	2.1
유로지역	0.5	0.9	1.5	1.4	1.3	1.3	1.2
일본	1.9	0.7	1.0	0.8	0.6	0.6	0.4
영국	0.1	0.7	1.5	1.7	1.7	1.6	1.4
한국	1.4	2.5	2.2	2.2	2.1	2.1	2.0
<b>신흥국 및 개발도상국</b>	<b>4.3</b>	<b>4.3</b>	<b>4.3</b>	<b>4.1</b>	<b>4.0</b>	<b>3.9</b>	<b>3.9</b>
중국	5.2	5.0	4.5	3.8	3.6	3.4	3.3
인도 <sup>1)</sup>	8.2	7.0	6.5	6.5	6.5	6.5	6.5
러시아	3.6	3.2	1.5	1.3	1.3	1.3	1.3
<b>세계 소비자 물가상승률<sup>2)</sup></b>	<b>6.7</b>	<b>5.9</b>	<b>4.4</b>	<b>3.7</b>	<b>3.5</b>	<b>3.4</b>	<b>3.4</b>
선진국	4.6	2.7	2.1	2.0	2.0	2.0	2.0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sup>2)</sup>	8.3	8.2	6.0	4.9	4.4	4.3	4.2

주: 1)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 기준

2) 베네수엘라 제외

출처: 2025년 이전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4 July," 2024, table 1 & annex table.; 2026년 이후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4 April,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April/>, 검색일자: 2024. 9. 5.

된다. 재정지출의 관점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및 각종 의료 및 사회서비스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의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인구구조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고, 기후문제 대응 등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및 재정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가 건전재정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25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651.8조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이후에도 총수입은 연평균 3.9% 증가하면서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의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이 기대되어 견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가입자 확대, 임금상승 등에 따라 지속적 증가가 예상된다. 다만, 일부 기금의 법적 기한 도래 등에 따라 2028년 증가율은 전년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외수입은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 확충 노력으로 중기적으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6년과 2027년에는 일회성 수요가 종료되면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2025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677.4조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총지출 증가율 2.8% 대비 확대된 것이지만, 2025년 총수입 증가율(6.5%)과 경상성장률(5.0%)<sup>2)</sup>에 비해서는 낮아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재정수입, 재정지출, 그리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 2. 재정수입

재정수입은 크게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한 수입 변화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표 8>은 2023~2025년 세목별 수입 실적 및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2025년 국세수입은 382.4조원으로 2024년 예산 대비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14.0%)와 부가가치세(8.1%)가 수입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되며, 증권거래세(-28.6%), 상속증여세(-12.7%) 등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반등하면서 수출 및 기업실적이 개선된 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소득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 배당을

2)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안의 경상 GDP를 이용하여 계산

<표 6> 재정총량(규모)

(단위: 조원, %)

구분	예산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폭 (연평균 규모)			연평균 증가율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5년	2026~2028년	2025년	2026~2028년	2025년	2026~2028년	2025년	2026~2028년	2025~2028년	
총수입	612.2	651.8	677.7	706.4	731.5	39.6	26.6	39.6	26.6	29.8	29.8	6.5	3.9	3.9	
국세수입	367.3	382.4	400.4	421.4	444.3	15.1	20.6	15.1	20.6	19.3	19.3	4.1	5.3	5.1	
세외수입	28.2	36.6	34.5	33.7	34.9	8.4	-0.6	8.4	-0.6	1.7	1.7	29.8	0.6	-1.6	
기금수입	216.7	232.8	242.7	251.2	252.3	16.1	6.5	16.1	6.5	8.9	8.9	7.4	2.0	2.7	
총지출	656.6	677.4	704.2	730.3	756.2	20.8	26.3	20.8	26.3	24.9	24.9	3.2	3.6	3.7	
예산지출	438.3	450.9	465.3	480.1	493.1	12.6	14.1	12.6	14.1	13.7	13.7	2.9	2.9	3.0	
기금지출	218.4	226.5	238.9	250.2	263.0	8.1	12.2	8.1	12.2	11.2	11.2	3.7	4.9	5.1	
의무지출	347.4	365.6	391.4	412.8	433.1	18.2	22.5	18.2	22.5	21.4	21.4	5.2	5.2	5.8	
복지분야	169.2	181.9	193.7	204.9	214.1	12.7	10.7	12.7	10.7	11.2	11.2	7.5	5.1	5.6	
지방이전	139.8	142.4	152.9	161.2	170.1	2.6	9.2	2.6	9.2	7.6	7.6	1.9	5.5	6.1	
이자지출	27.0	29.9	32.2	34.4	36.7	2.9	2.3	2.9	2.3	2.4	2.4	10.7	6.8	7.1	
기타	11.5	11.4	12.6	12.3	12.2	-0.1	0.3	-0.1	0.3	0.2	0.2	-0.9	-1.6	2.3	
재량지출	309.2	311.8	312.8	317.5	323.1	2.6	3.8	2.6	3.8	3.5	3.5	0.8	1.6	1.2	
지방이전 제외 총지출	516.8	535.0	551.3	569.1	586.1	18.2	17.0	18.2	17.0	17.3	17.3	3.5	3.1	3.2	
통합재정수지	-44.4	-25.6	-26.6	-23.9	-24.7	[-25.6]	[-25.1]	[-25.6]	[-25.1]	[-25.2]	[-25.2]	-	-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7.2	52.1	49.2	49.2	47.5	[52.1]	[48.6]	[52.1]	[48.6]	[49.5]	[49.5]	-	-	-	
관리재정수지	-91.6	-77.7	-75.8	-73.1	-72.2	[-77.7]	[-73.7]	[-77.7]	[-73.7]	[-74.7]	[-74.7]	-	-	-	
국가채무	1,195.8	1,277.0	1,353.9	1,432.5	1,512.0	81.2	78.3	81.2	78.3	79.1	79.1	6.8	5.7	5.8	
적자성 채무	792.3	883.4	955.0	1,024.2	1,092.7	91.1	69.8	91.1	69.8	75.1	75.1	11.5	7.0	7.3	
금융성 채무	403.5	393.6	398.9	408.3	419.3	-9.9	8.6	-9.9	8.6	4.0	4.0	-2.5	2.5	2.1	
경상 GDP	2,520.5	2,646.5	2,759.5	2,875.0	2,993.0	126	115.5	126	115.5	118.1	118.1	5.0	4.1	4.2	

주: 1.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2. 음영 부분은 위 표에 보고된 2024~2028년 재정총량 규모를 이용해 계산한 것으로 원자료와 다를 수 있음

3. 2024년은 본예산 확정 당시 GDP를 신개념으로 변환, 2025년 이후는 2024년 7월 전망 기준

출처: 대한민국정부(『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4) 및 이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7> 재정총량(GDP 대비 비중)

(단위: %, %p)

구분	예산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비중			연평균 비중 증감폭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6~2028년	2025~2028년	2025년	2026~2028년	2025~2028년	2025년	2026~2028년	2025~2028년
총수입	24.3	24.6	24.6	24.6	24.4	24.5	24.5	24.5	0.3	-0.1	0.0	0.0	
국세수입	14.6	14.4	14.5	14.7	14.8	14.7	14.6	14.6	-0.1	0.1	0.1	0.1	
세외수입	1.1	1.4	1.3	1.2	1.2	1.2	1.2	1.2	0.3	-0.1	0.0	0.0	
기금수입	8.6	8.8	8.8	8.7	8.4	8.7	8.7	8.7	0.2	-0.1	0.0	0.0	
총지출	26.1	25.6	25.5	25.4	25.3	25.4	25.4	25.4	-0.5	-0.1	-0.2	-0.2	
예산지출	17.4	17.0	16.9	16.7	16.5	16.7	16.8	16.8	-0.4	-0.2	-0.2	-0.2	
기금지출	8.7	8.6	8.7	8.7	8.8	8.7	8.7	8.7	-0.1	0.1	0.0	0.0	
의무지출 (의무지출 비중)	13.8 (52.9)	13.8 (54.0)	14.2 (55.6)	14.4 (56.5)	14.5 (57.3)	14.3 (56.5)	14.2 (55.8)	14.2 (55.8)	0.0 (1.1)	0.2 (1.1)	0.2 (1.1)	0.2 (1.1)	
복지분야	6.7	6.9	7.0	7.1	7.2	7.1	7.0	7.0	0.2	0.1	0.1	0.1	
지방이전	5.5	5.4	5.5	5.6	5.7	5.6	5.6	5.6	-0.2	0.1	0.0	0.0	
이자지출	1.1	1.1	1.2	1.2	1.2	1.2	1.2	1.2	0.1	0.0	0.0	0.0	
기타	0.5	0.4	0.5	0.4	0.4	0.4	0.4	0.4	0.0	0.0	0.0	0.0	
제량지출	12.3	11.8	11.3	11.0	10.8	11.0	11.1	11.2	-0.5	-0.3	-0.4	-0.4	
지방이전 제외 총지출	20.5	20.2	20.0	19.8	19.6	19.8	19.9	19.9	-0.3	-0.2	-0.2	-0.2	
통합재정수지	-1.8	-1.0	-1.0	-0.8	-0.8	-0.9	-0.9	-0.9	0.8	0.0	0.2	0.2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9	2.0	1.8	1.7	1.6	1.7	1.8	1.8	0.1	-0.1	-0.1	-0.1	
관리재정수지	-3.6	-2.9	-2.7	-2.5	-2.4	-2.6	-2.6	-2.7	0.7	0.2	0.3	0.3	
국가채무	47.4	48.3	49.1	49.8	50.5	49.8	49.4	49.4	0.8	0.8	0.8	0.8	
직자성 채무 (직자성 채무 비중)	31.4 (66.3)	33.4 (69.2)	34.6 (70.5)	35.6 (71.5)	36.5 (72.3)	35.6 (71.4)	35.0 (70.9)	35.0 (70.9)	1.9 (2.9)	1.0 (1.0)	1.3 (1.5)	1.3 (1.5)	
금융성 채무	16.0	14.9	14.5	14.2	14.0	14.2	14.4	14.4	-1.1	-0.3	-0.5	-0.5	

주: 의무지출 비중은 총지출 대비, 직자성 채무 비중은 국가채무 대비 비중

출처: <표 5>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표 8> 세목별 수입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2024년 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율
총국세	3,440,711	3,673,140	3,824,296	151,156	4.1
일반회계	3,339,396	3,561,182	3,718,050	156,868	4.4
내국세	3,060,595	3,216,136	3,381,292	165,156	5.1
소득세	1,158,330	1,257,605	1,280,066	22,461	1.8
근로소득세	591,442	620,327	647,310	26,983	4.3
종합소득세	214,368	230,552	225,941	-4,611	-2.0
양도소득세	175,560	224,165	206,011	-18,154	-8.1
배당소득세	40,623	39,038	46,757	7,719	19.8
법인세	804,195	776,649	885,013	108,364	14.0
상속증여세	146,341	146,566	127,879	-18,687	-12.7
부가가치세	737,749	814,068	880,201	66,133	8.1
개별소비세	88,209	101,945	96,663	-5,282	-5.2
증권거래세	60,803	53,829	38,454	-15,375	-28.6
인지세	7,969	8,505	9,085	580	6.8
과년도수입	56,999	56,969	63,931	6,962	12.2
교통·에너지·환경세	108,436	153,258	151,048	-2,210	-1.4
관세	72,883	89,065	84,093	-4,972	-5.6
교육세	51,516	61,625	60,402	-1,223	-2.0
종합부동산세	45,965	41,098	41,215	117	0.3
특별회계	101,314	111,958	106,246	-5,712	-5.1
주세	35,686	35,759	32,093	-3,666	-10.3
농어촌특별세	65,628	76,199	74,153	-2,046	-2.7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보도자료, 2024.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중심으로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5년 국세수입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8월 개최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는 2024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산 대비 23.2조원 낮을 수 있다는 전망 결과가 발표되었다.<sup>3)</sup> 만약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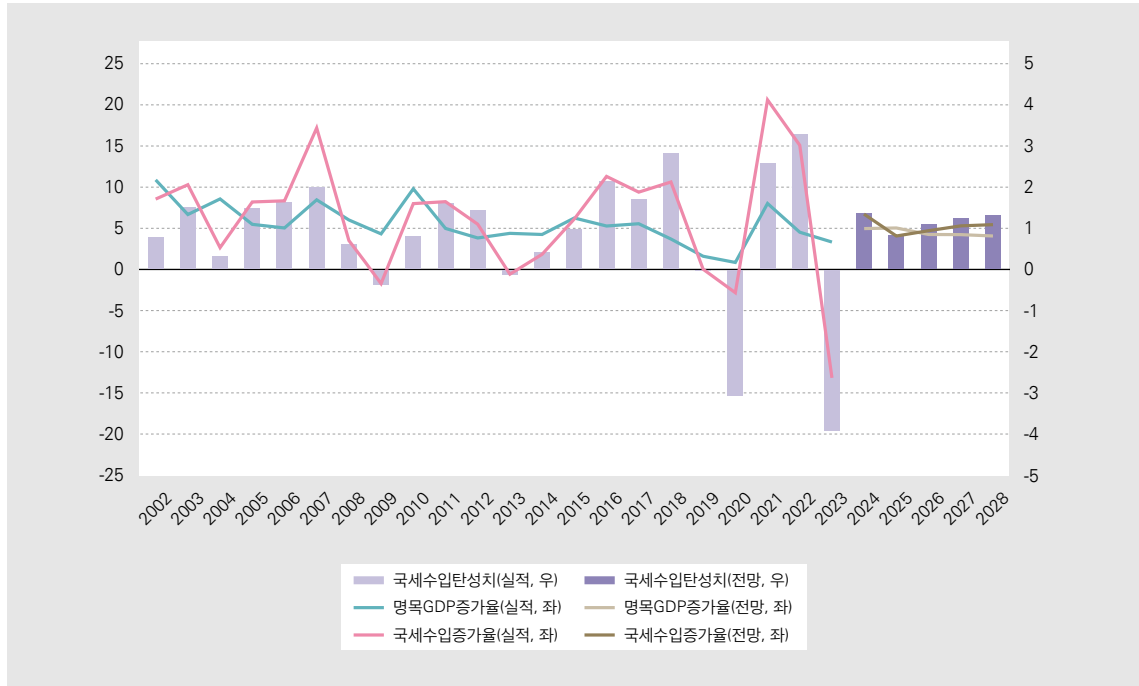
전망과 같이 2024년 세수입 결손이 20조원 내외로 발생한다면, 2025년 국세수입 385.4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국세수입 증가가 필요할 것이다. 2025년의 경상성장률이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5년 국세수입 전망치 달성을 위해서는 국세수입 탄성치가 높은 값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세수입 탄성치는 최근 크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

3) 동 세미나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44.1조원으로 제시

[그림 1] 국세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주: 1) 국세수입탄성치=국세수입증가율/명목 GDP 증가율

2) 2025년 국세수입 증가율 및 국세수입 탄성치는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 전망치에 기반

출처: 국세수입 및 경상 GDP 실적 및 정부 전망치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리나라의 2002~2020년 기간의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감률은 대체로 -3~10% 범위 안에 위치<sup>4)</sup>하였으나 2021년, 2022년, 2023년의 전년 대비 국세수입 증감률은 각각 20.5%, 15.1%, -13.1%로 최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sup>5)</sup> 그 결과, 명목GDP 증가율 대비 국세수입 증가율의 비율로 계산되는 국세수입 탄성치 역시 코로나19 이후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이후 중기적으로 탄성치가 다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2024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해

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전망치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경우 2025년 예산안의 국세수입 전망치 달성을 위한 국세수입 탄성치는 상당히 증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세수입이 2024~2028년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도별 증가율은 2025년 4.1%, 2026년 4.7%, 2027년 5.2%, 2028년 5.4%로 예상된다. 2026년 이후 중기 시계에서의 국세수입 증가율 전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과거 국세수입 탄성치 등을 중

4) 2007년과 2016년은 예외

5) 이는 주로 법인세 변동성 확대에 기인

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 시계에서의 전망치는 2025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대된 국세수입 탄성치, 기업실적 및 수출 개선 흐름 등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2025년 이후의 국세수입 전망치 달성에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대내외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하방으로 작용할 경우 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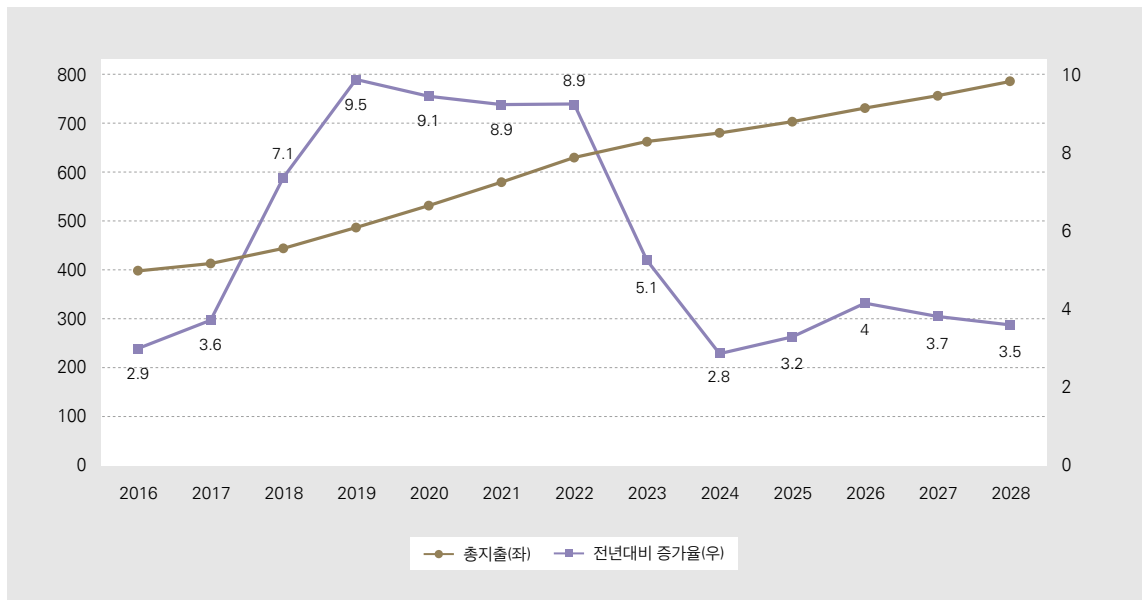
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전제로, 세수 오차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sup>6)</sup>

### 3. 재정지출

2025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677.4조원으로 2024년 확정 예산 대비 3.2% 증가하였다. 2025년의 총지출 증가율 3.2%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던 지난 정부의 증가율보다는 낮고 2024년에

[그림 2] 2016~2028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



주: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는 각 연도 본예산 기준

출처: 총지출: 2024년 이전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7?acntYrFr=2016&acntYrTo=2024&langCd=ko>, 검색일자: 2024. 8. 30.; 2025년 이후는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전년 대비 증가율: 총지출 수치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6)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편성 요건, 세계잉여금에 처리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비해서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을 2025~2028년 기간 연평균 1.2%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건전재정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출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민생안정, 국정과제의 이행 등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 분야별 재원 배분 부분에서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의무지출의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량지출을 크게 늘렸던 2020년을 제외하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의무지출 규모가 재량지출 규모보다 커졌으며, 동 비중은 2024년 52.9%에서 2028년 5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비중도 2016년 75.4%에서 2023년 98.9%까지 추세적으로 증가하였고, 2024~2028년 기간에는 95% 내외의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가가 걷는 세금의 거의 전부를 의무지출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부가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문제는 갈수록 의무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량지출에 대한 조정만으로는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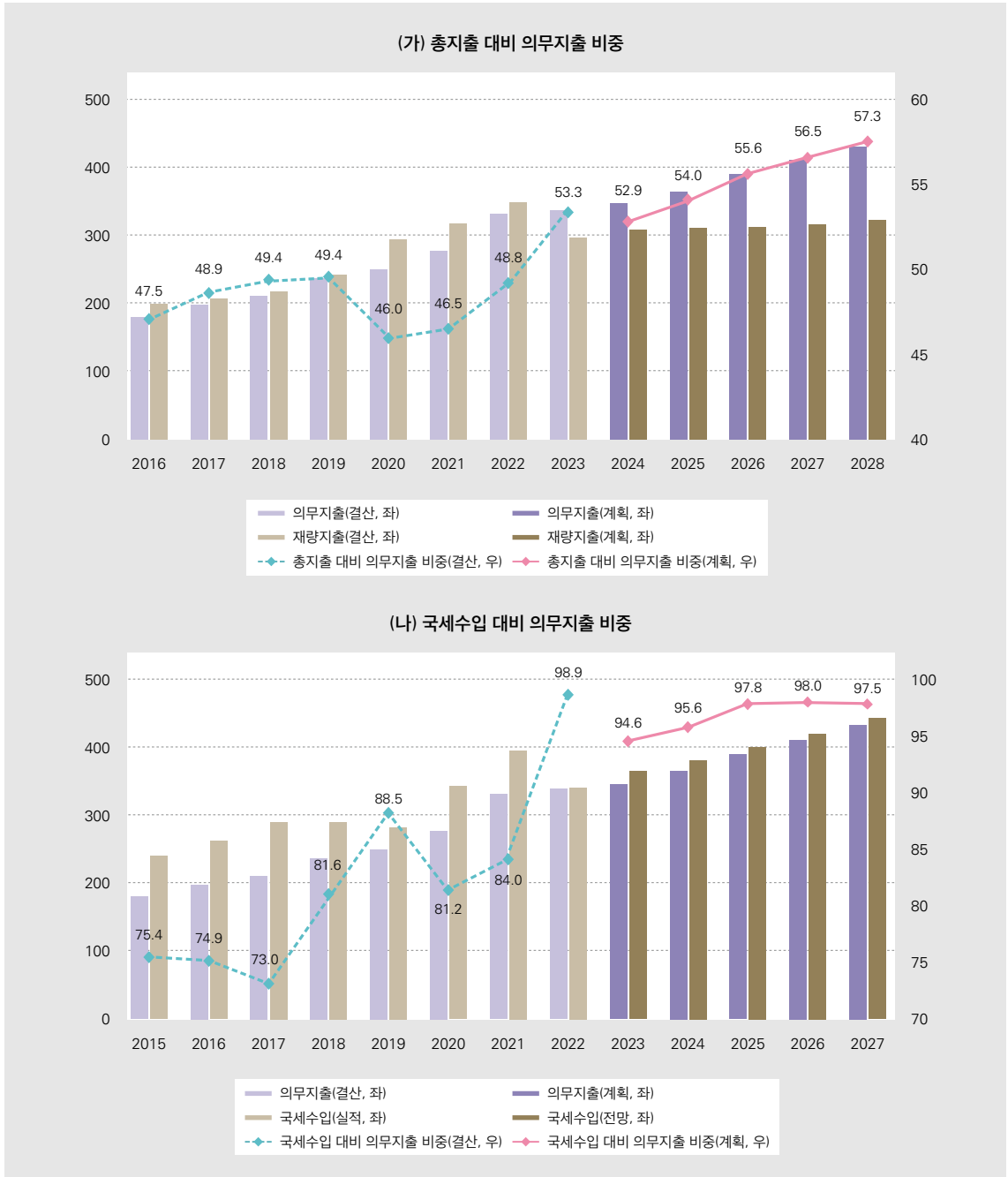
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거나 유연한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량지출의 증가를 상당 부분 억제할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2025~2028년 기간 총지출 증가율(3.7%)이 코로나 19 이전인 2016~201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중단기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은 2025~2028년 기간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5.8%)한 것에 기인한다.

의무지출은 복지분야 법정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로 구분되며, 2025~2028년 각 항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6%, 6.1%, 7.1%, 2.3%로 전망(<표 6> 참조)된다. 작년에 발표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6%, 2.5%, 11.0%, 1.7%였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지방이전재원 증가율은 높아지고 이자지출 증가율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강하게 연동되는 국세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이자지출의 경우 향후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반영하여 증가율이 일정 부분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의무지출 구성 항목 중 복지지출은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정부 정책을 통한 직접적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지지출에는 4대 공적연금, 보건의료, 기초생보 관련 지출과 함께 노인, 아동·보육, 고용·노동, 보훈 부문 지출도 포함된다. 이들 복지지출의 주

[그림 3] 의무지출의 총지출 및 국세수입 대비 비중 추이

(단위: 조원, %)



주: 2022년 이전은 결산·실적 기준, 2023년 의무지출, 재량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출처: 의무·재량지출(결산):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의무·재량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9?acntYrFr=2015&acntYrTo=2023&langCd=ko>, 검색일자: 2024. 8. 30.; 국세수입(실적):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세수입」,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5?acntYrFr=2015&acntYrTo=2024&langCd=ko>, 검색일자: 2024. 8. 30.; 의무·재량지출(계획), 국세수입(전망):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요 구성 항목 대부분은 고령화로 인해 지출 소요가 증가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복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대 공격연금 관련 지출의 경우 2024~2028년 기간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부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금 지출 역시 노인인구 증가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2024~2028년 기간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 관련 지출도 동기간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 아동수당 등 저출생으로 일부 지출이 감소하는 분야도 있으나, 각 항목의 지출 규모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추가적인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복지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sup>7)</sup>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sup>8)</sup>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sup>9)</sup>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교부한다.

재원의 대부분이 내국세 총액의 일부이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은 재정수입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감소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구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재정 여력(fiscal space)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구조 및 활용 방안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sup>10)</sup>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가 경기 상황에 대응하여 탄력적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무지출의 효율화 및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다만,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 개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되어야 한다. 복잡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국가재정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의무지출 효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 2025년까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

8)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부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5%90%EC%9C%A1%EC%9E%AC%EC%A0%95%EA%B5%90%EB%B6%80%EA%B8%88%EB%B2%95>, 검색일자: 2024. 9. 10.

9)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5%90%EC%9C%A1%EC%9E%AC%EC%A0%95%EA%B5%90%EB%B6%80%EA%B8%88%EB%B2%95>, 검색일자: 2024. 3. 10.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동향, 해외사례, 개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김학수(2021), 양정호(2022), 김성은·강만원(2022) 등을 참고

<표 9> 2016~2028년 의무·재량지출 실적 및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의무 지출	182.6	197.0 (7.9)	217.0 (10.2)	239.3 (10.3)	255.6 (6.8)	266.1 (4.1)	303.2 (13.9)	340.3 (12.2)	347.4 (2.1)	365.6 (5.2)	391.4 (7.1)	412.8 (5.5)	433.1 (4.9)
복지 지출	83.3	87.2 (4.7)	95.7 (9.7)	106.7 (11.5)	119.7 (12.2)	131.3 (9.7)	140 (6.6)	154.7 (10.5)	169.2 (9.4)	181.9 (7.5)	193.7 (6.5)	204.9 (5.8)	214.1 (4.5)
지방 이전 재원	77.4	87.6 (13.2)	99.4 (13.5)	111.5 (12.2)	111.6 (0.1)	108.9 (-2.4)	134.9 (23.9)	155.4 (15.2)	139.8 (-10.0)	142.4 (1.9)	152.9 (7.4)	161.2 (5.4)	170.1 (5.5)
이자 지출	16.7	16.1 (-3.6)	16.0 (-0.6)	16.0 (0.0)	17.0 (6.3)	18.3 (7.6)	18.9 (3.3)	22.9 (21.2)	27.0 (17.9)	29.9 (10.7)	32.2 (7.7)	34.4 (6.8)	36.7 (6.7)
기타 의무 지출	5.2	6.0 (15.4)	5.8 (-3.3)	5.1 (-12.1)	7.4 (45.1)	7.6 (2.7)	9.5 (25.0)	7.3 (-23.2)	11.5 (57.5)	11.4 (-0.9)	12.6 (10.5)	12.3 (-2.4)	12.2 (-0.8)
재량 지출	203.8	203.5 (-0.1)	211.9 (4.1)	230.3 (8.7)	256.6 (11.4)	291.9 (13.8)	304.5 (4.3)	298.4 (-2.0)	309.2 (3.6)	311.8 (0.8)	312.8 (0.3)	317.5 (1.5)	323.1 (1.8)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출처: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2024년 이후는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 4.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정부는 2025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9%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24년 -3.6% 대비 0.7%p 개선된 것이다. 2025년 이후에도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 이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더한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025년 기준 GDP 대비 2.0%를 보인 후 2026~2028년에도 1.6~1.8%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발표한 2025~2028년의 재정수지 전망치는 코로나19 위기 직후에 비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이지만, 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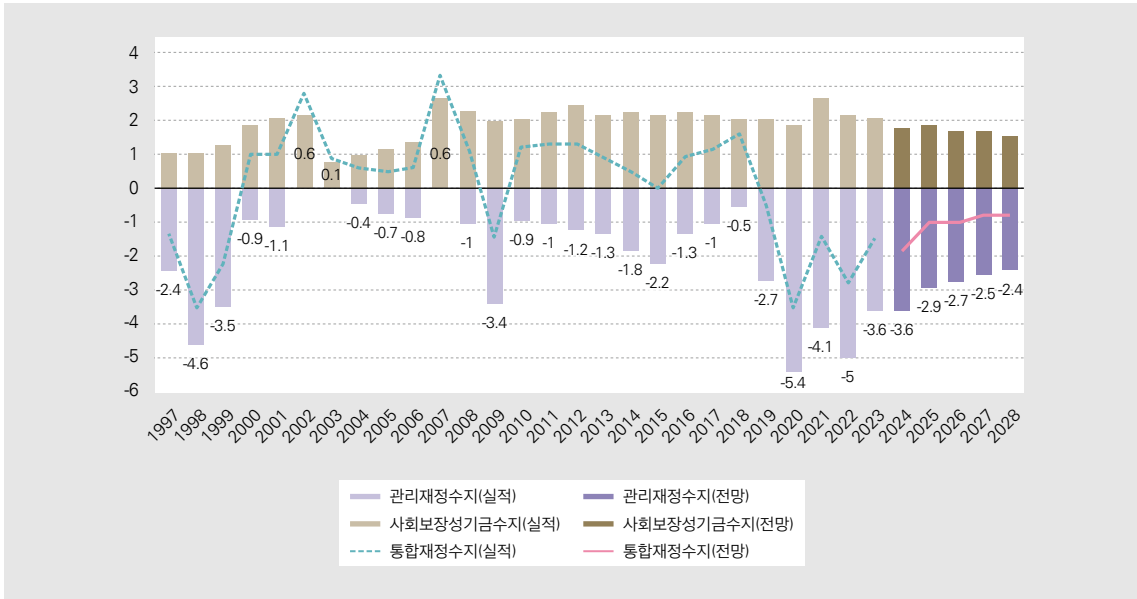
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자 수준이 큰 것이다. 또한 중기적으로 여전히 연평균 70조원 이상의 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재정운용 기조를 긴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정부 계획에 따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중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sup>11)</sup>의 목표를 만족한다.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당장의 재정준칙 준수 여부 자체보다는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운용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인지가

11) 예산안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3% 한도를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하며, 전쟁·재난·경기침체 등의 예외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 또한 준칙 적용이 면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에 상환(평상시에는 세계잉여금의 50%를 상환)하도록 함

[그림 4]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실적 및 전망

(단위: %)



주: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통합재정수지 - 관리재정수지, 표시된 수치는 관리재정수지  
 출처: e-나라지표, 국정모니터링시스템, "통합재정수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04), 검색일자: 2024. 8. 30.;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발표한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적절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필수적인 지출이 삭감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5년 48.3%로 전망되며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2028년에는 50.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sup>12)</sup> 정부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비중의 증가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채무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의 한계도 존재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채무 수준 목표치(debt anchor)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현 시점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여전히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IMF(2024)<sup>13)</sup>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sup>14)</sup> 비중은 미국 122.1%, 영국 101.1%, 프랑스 110.6%, 독일 64.3%, 일본 252.4% 등으로 나타나 우리나라(55.2%)에 비해 높

12) GDP 신계열 기준이며, 이후 논의도 동일한 기준을 따름  
 13) IMF, "Fiscal Monitor," 2024. 4.  
 14)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와 개념상 차이가 존재

았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이로 인한 의무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채무 비중은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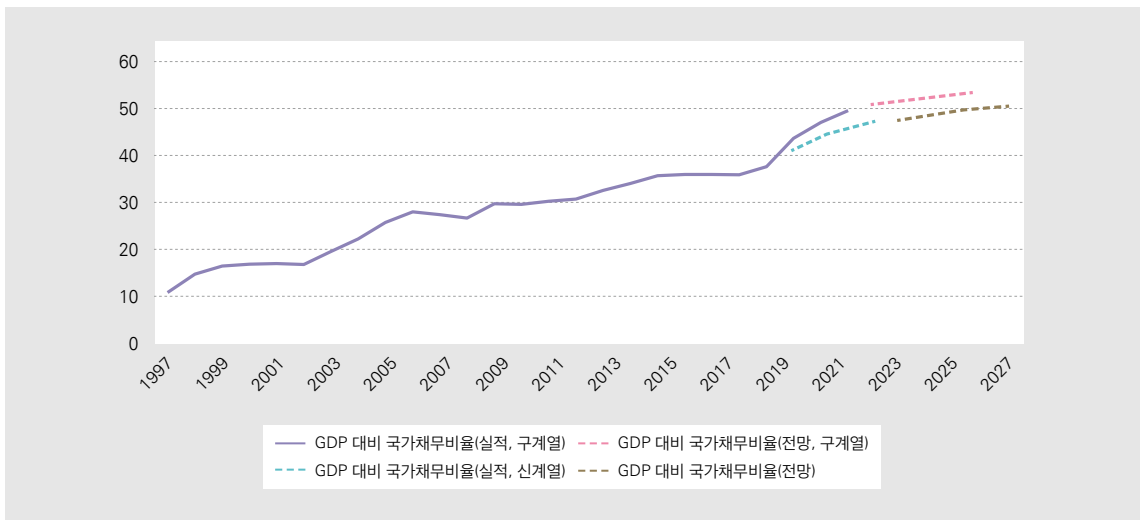
물론 재정건전성이 정부 재정운용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는 필수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목표를 유연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정부는 현재의 재정 제약하에서 필수적인 재정 소요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 구조개혁, 세입 기반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국가채무 비중과 관련하여 적자성 채무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 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33.4%로 2024년 대비 1.9%p 상승하고, 2025~2028년 기간에 전체 국가채무 비중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69.2%에서 2028년 72.3%로 확대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로서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

[그림 5]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실적 및 전망

(단위: %)



출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실적, 구계열): 2022년 이전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상세재정통계, “국가채무(D1),”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검색일자: 2024.8.30.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전망, 구계열): 2023년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실적, 신계열): 기획재정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른 주요 지표 변동』 보도자료, 2024. 6. 5.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전망): 대한민국 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해 향후 세금 등을 통해 상환이 필요한 채무를 의미한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는 향후 조세부담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를 고려할 때 세수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중단기 시계에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Ⅲ. 분야별 자원배분

#### 1. 개요

<표 10>은 2024~2028년 기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을 제시한다. 2025년 지출규모 기준으로는 보건·복지·고용, 일반·지방행정, 교육, 국방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자원배분의 전체적인 모습은 2024년 확정 예산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확인된다. 2026~2028년 기간에도 각 분야 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자원배분의 특징을 총량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지출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6]은 최근 10년(2014년 대비 2024년), 예산안(2024년 대비 2025년), 그리고 국가재정운용계획(2024년 대비 2028년)의 각 분야 지출 증가율을 보여준다.

최근 10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연평균 8.4% 증가하였다. 또한 일반·지방행정(6.8%), 환경(6.8%), 교육(6.5%) 분야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SOC 분야는 동기간 연평균 1.1%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농림·수산·식품(3.1%), R&D 분야(4.1%)의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R&D 분야의 낮은 증가율은 해당 분야의 2024년 예산이 2023년 대비 2.8조원(9.6%) 감소된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sup>15)</sup>

다만, 2025년에는 R&D 예산이 2024년 대비 11.8%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2025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4.8%)을 보일 예정이다. 반면,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SOC 분야는 2025년 모든 분야 중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3.6%)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나타난 분야별 지출은 보건·복지·고용, 일반·지방행정, 교육 등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에서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4대 공적연금, 기초생보 등의 복지 의무지출의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교육 분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구조적으로 국세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동된 데에서 높은 지출 증가율의 원인을 일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상되는 이들 분야의 높은 증가율은 지난 10년과 유사한 패턴이지만, 증가 속도는 대체로

15) 정부는 2024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2023년 R&D 예산 31.1조원 중 OECD 권고기준상 R&D로 분류하지 않는 대학 일반지원 성격 사업 등 1.8조원을 비R&D로 재분류하여 2023년 R&D 예산을 29.3조원으로 재산정하였으며, 본고에서도 2023년 이후 R&D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따름

둔화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지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R&D 분야의 경우 2024~2028년 기간에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분야별 재

원배분의 모습이 큰 틀에서 유사한 것은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다만, 중기적 관점에서 중점투자 방향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적 중 하나이므로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표 10> 2024~2028년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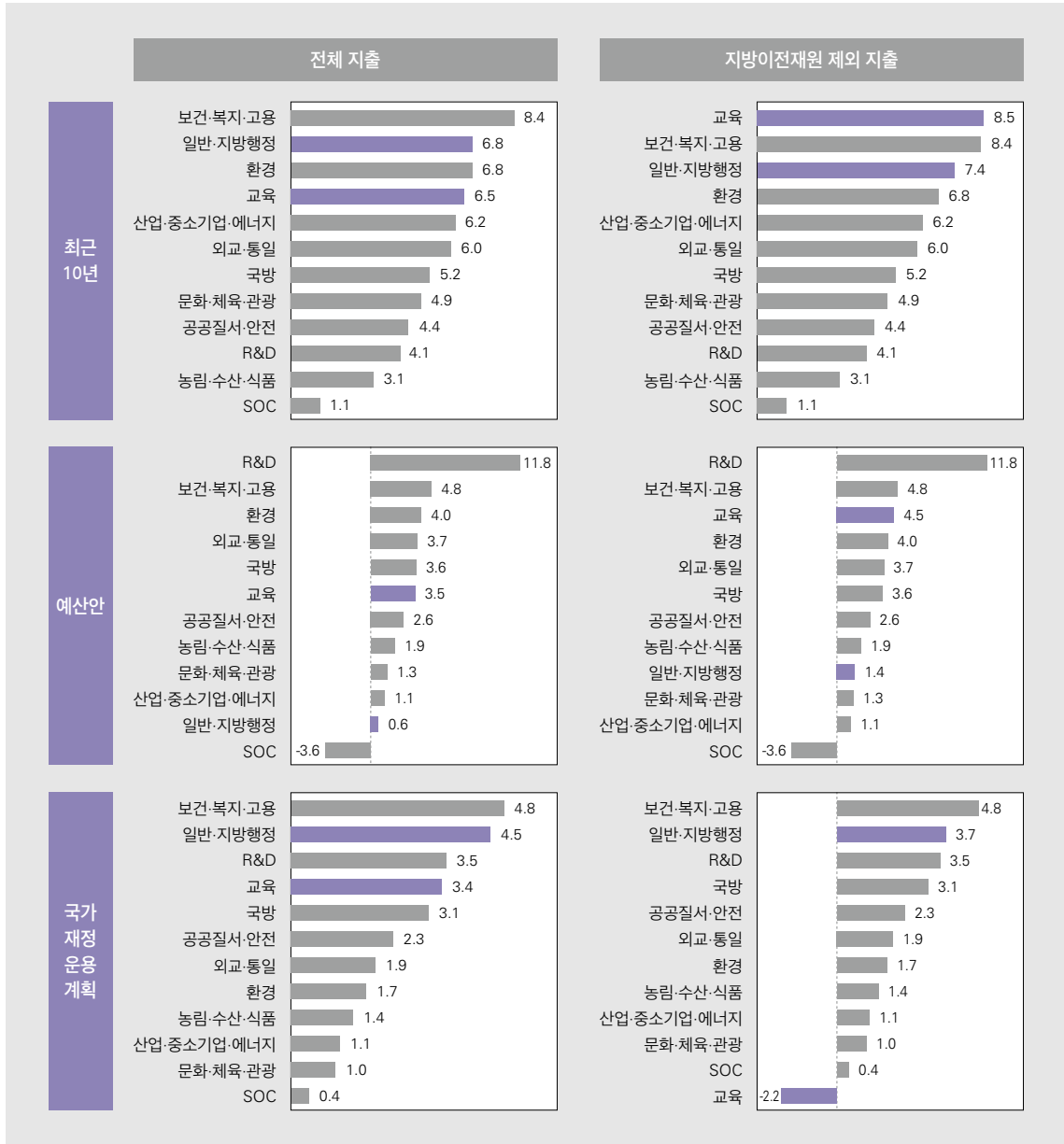
(단위: 조원, %)

분야	예산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지출	656.6	677.4	704.2	730.3	756.2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261.0	273.5	286.3
	(36.2)	(36.8)	(37.1)	(37.5)	(37.9)
교육	95.2	98.5	102.1	105.5	108.9
	(14.5)	(14.5)	(14.5)	(14.4)	(14.4)
문화·체육·관광	8.7	8.8	8.9	9.0	9.1
	(1.3)	(1.3)	(1.3)	(1.2)	(1.2)
R&D	26.5	29.7	30.0	30.3	30.5
	(4.0)	(4.4)	(4.3)	(4.1)	(4.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28.6	29.0	29.3
	(4.3)	(4.2)	(4.1)	(4.0)	(3.9)
SOC	26.4	25.5	26.0	26.4	26.9
	(4.0)	(3.8)	(3.7)	(3.6)	(3.6)
농림·수산·식품	25.4	25.9	26.3	26.6	26.8
	(3.9)	(3.8)	(3.7)	(3.6)	(3.5)
환경	12.5	13.0	13.1	13.3	13.4
	(1.9)	(1.9)	(1.9)	(1.8)	(1.8)
국방	59.4	61.6	63.4	65.4	67.1
	(9.0)	(9.1)	(9.0)	(9.0)	(8.9)
외교·통일	7.5	7.8	7.9	8.0	8.1
	(1.1)	(1.2)	(1.1)	(1.1)	(1.1)
공공질서·안전	24.4	25.1	25.7	26.3	26.8
	(3.7)	(3.7)	(3.6)	(3.6)	(3.5)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118.9	125.4	131.9
	(16.8)	(16.4)	(16.9)	(17.2)	(17.4)

주: 2024년은 본예산 기준, 괄호 안은 각 연도 총지출 대비 비중  
출처: 기획재정부,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4.; 2026~2028년 증가율은 위 수치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6] 분야별 본예산 연평균 증가율

(단위: %)



주: 1. 최근 10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치를 바탕으로 저자가 계산한 2014년 대비 2024년 연평균(기하평균) 증가율, 예산안은 예산안 보도자료의 2025년 예산안 증가율,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기 연평균 증가율  
 2. 지방이전재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언급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고교무상교육증액을 의미  
 3. 2024년 이후 R&D 예산은 OECD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재분류(R&D→ 비R&D 이관)한 수치이며, 2014년 R&D 예산은 분류 전 기준임  
 출처: 기획재정부,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4.  
 \_\_\_\_\_, 『25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편·체질개선을 토대로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2024.  
 대한민국 정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  
 \_\_\_\_\_,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_\_\_\_\_,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 2.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다음으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분야별 재원배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R&D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 일반·지방행정 및 교육 분야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검토한다.

### 가. R&D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지난해 큰 폭으로 삭감되었던 R&D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2025년 R&D 분야 지출은 29.7조 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이는 R&D 분야 예산이 축소되기 이전인 2023년 29.3조원 대비 약 4천억원 높은 규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로 선정하여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sup>16)</sup>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분야가 적절히 선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 지원에 의한 자원의 왜곡을 야기하고 재정지출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내외 기술 발전 동향 등을 참

고하여 중점 기술 분야의 적절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R&D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R&D 사업을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업기획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토 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설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 중인 이공계 대학원생의 학생인건비를 석사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 등으로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R&D 분야는 긍정적 외부성으로 인해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 중 하나이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그간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그 성과가 질적으로 미흡하였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R&D는 결과물의 측정이 어렵고, 실패를 용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특수성도 있어 그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예산이 방만하게 활용될 여지가 큰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응하여 발표한 사전검토 기능 강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재정 지원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정비 및 조세·재정지출 통합심층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절한 정책

16)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방향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복 성격의 지원을 줄이고 통합심층평가가 엄밀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 지원 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해당 이력을 전산자료로 구축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나. 보건·복지·고용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이번 예산안에서 R&D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분야이다. 올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축소,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지원 등 저출생 대응 강화,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개혁 뒷받침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함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월 183만원에서 195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탈수급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뒷받침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지속 인상할 계획이며, 향후 예상되는 노인인구 증가 및 물가 추이까지 반영되어 관련 예산(국비 기준)은 2024년 20.2조원에서 2028년 26.0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전망이다.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적극적 정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누구에게(수급자 범위) 얼마나(수급액 수준)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OECD(2022)는 국민연금 개혁을 전제로, 현재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를 축소하고 수급자당 금액은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sup>17)</sup> 향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안정적 노후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 의료 기반 강화, 보상 공정성 강화라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우수한 필수과목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수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비용을 지원하고(1인당 3,200만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8대 필수과목 전공의 및 소아·분만 전임의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과목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과 함께, 고령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억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할 계획이며,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인상한다. 심각한 저출생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7) OECD, 「한국경제 보고서」, 2022.

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저출생 관련하여 고용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주요 지출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수의료 확충,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응 지원은 국가가 핵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일 것이다. 다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복지 분야 지출의 대부분은 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5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37.6조원,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169.2조원으로 나타났는데, 2028년에는 각각 286.3조원과 214.1조원으로 증가하여 의무지출의 비중이 더욱 확대(2025년 71.2% → 2028년 74.8%)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한편,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 의무지출 관련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다. 교육

교육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추진 및 글로벌 대학 집중 육성, 디지털 교육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RISE 추진을 통해 대학의 자

율적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주도·상향식·성과중심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대학에 대한 행정적 권한을 완전히 이양(중앙→지자체)하고,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및 재투자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 및 지원하여 지방대학 육성에도 힘쓸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무관하게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25년 말까지 유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유아보육·교육 예산을 교육부에 이관하여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가칭)’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처우 개선 등 추가 필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관성 있는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 방안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유보통합 시행 관련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변경을 위해서 법률 개정이 요구되므로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라. 일반·지방행정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공공부문 AI 활용 확산,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스케일업 지원, 영세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확대,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낙후 지역 발전 지원 등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정부 서비스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국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한 자영업자 어려움·부실이 지속됨에 따라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도 발표하였다.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단순히 단기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러한 지원을 소상공인의 재기, 폐업, 재취업·재창업 지원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우리 경제 전반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제시하였다. 지방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정책금융기관 출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2024년 기준 3천억원 규모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중점사업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의 인프라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기금배분잔액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지역 발전도모 정책, 앞서 논의한 RISE 사업 등은 중앙의 권한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안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또한,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V. 결론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난다. 향후 예상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크게 확대된 국가채무 수준,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을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수적인 경기침체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의 지출 억제 노력이 재량지출을 중심으로만 반영된 한계도 드러난다. 총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의무지출에 대한 통제 없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건전재정기조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재량지출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의무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고령화로 인해 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기에,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만큼, 복지분야 법정지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주요 의무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사


회적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의무지출뿐 아니라 경직성 재량지출의 효율화도 건전한 재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박노옥(2024)은 사회보장성 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직성 재량지출로 분류하였으며, 의무지출 및 경직성 재량지출 관리가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 및 재정여력 확보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8)</sup>

지출과 관련된 지표를 현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반영하는 것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및 재정수지의 경우 재정 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지출은 직접적 통제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대안적으로, 오종현(2023)은 재정준칙에서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등의 지표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9)</sup>

한편 이번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조세체계 합리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자연적 세입기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수입 확보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 세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필수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뒷받침할 수 있으

면서도 미래의 재정운용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조세 및 국민부담률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국민과 공유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중단기적 당면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8) 박노옥(2024)은 의무-경직성 지출 관리를 위해 총량한도 설정, 총량한도 위반 시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기제의 설정, 포괄적인 지출 구조조정 체계 수립 및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

19) 오종현(2023)은 국세수입 대비 의무지출 비중과 같은 지표를 준칙에 반영하고, 이를 중기 시계에서 평균적으로 충족하도록 규율하는 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2.

\_\_\_\_\_,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3.

\_\_\_\_\_,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 보도자료, 2024.

\_\_\_\_\_,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에 따른 주요 지표 변동』, 보도자료, 2024.

\_\_\_\_\_, 『25년도 R&D 예산은 시스템 개편-체질개선을 토대로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2024.

\_\_\_\_\_,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보도자료, 2024.

김성은·강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동향』, 국회 예산정책처, 2022.

김학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한국개발연구원, 2021.

대한민국 정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

\_\_\_\_\_,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

\_\_\_\_\_,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

\_\_\_\_\_,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_\_\_\_\_,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

\_\_\_\_\_,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

\_\_\_\_\_,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

\_\_\_\_\_,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

\_\_\_\_\_,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0.

\_\_\_\_\_,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

\_\_\_\_\_,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_\_\_\_\_,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_\_\_\_\_,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_\_\_\_\_,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4.

박노옥,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혁신: 의무·경직성 지출 관리체제 수립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오중현, 『2024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양정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22.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4 July』, 202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4.

IMF, 『Fiscal Monitor』, 2024.

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2022.

IMF,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April/>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가채무,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_\_\_\_\_, 국세수입,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5?acntYrFr=2015&acntYrTo=2024&langCd=ko>

\_\_\_\_\_, 의무재량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9?acntYrFr=2015&acntYrTo=2023&langCd=ko>

\_\_\_\_\_, 총지출,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m/UOPKOSMA05?acntYrFr=2015&acntYrTo=2024&langCd=ko>

e나라지표, 통합재정수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10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104)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미국

#### [팁 소득(Tip Income) 비과세 법안 관련 보고서 발표]

■ 미국 의회조사국(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2024년 7월 31일, 팁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분배적 영향을 다룬 보고서 IF12728을 발표함<sup>1)</sup>

● 미국 의원들은 제118회 의회에서 팁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여러 법안을 제출했고, 이에 의회조사국은 팁 소득의 현행 세무처리와 비과세할 경우의 잠재적 결과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함

● 미국은 현재 팁 소득에 대해 근로자 개인의 소득세와 연방급여세(payroll tax)<sup>2)</sup> 등을 부과함

- 팁 소득이 월 2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보고해야 하고 고용주는 과세대상 금액에 팁 소득을 포함해야 함

- 근로자는 개인소득세와 연방 급여세 중 근로자 부담분, 그리고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고용주는 연방 급여세 중 고용주 부담분과 연방·주(state) 실업보험세를 납부해야 함

● 팁 소득의 비과세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아래와 같음

- (수평적 형평성) 근로자 간 소득수준이 유사한 경우 팁 소득의 비과세로 팁 소득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팁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세후 소득이 높아짐

- (수직적 형평성) 팁을 받는 직종의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소득이 적고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팁 소득 비과세의 영향은 미미함

- (노동공급) 소득의 비과세로 근로자의 추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노동 공급시간에 상향 압력을 가함

- (재정) 세수가 줄고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의 상태를 악화시킴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 캐나다

#### [심플파일(SimpleFile) 세정지원 서비스 확대]

■ 캐나다 국세청은 2024년 7월 30일, 개인납세자 50만명에게 심플파일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 IBF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Examines Consequences of Excluding Tip Income from Taxation," 2024. 8. 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2\\_us\\_4.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2_us_4.html), 검색일자: 2024. 8. 13.

2) 연방급여세는 임금의 6.2%까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부과하는 세금

발표함<sup>3), 4)</sup>

- 국세청은 2024년 초, 150만명 이상의 개인에게 심플파일서비스를 안내했고 동 서비스를 확대하여 50만명에게 추가로 제공하기로 함
  - 심플파일(SimpleFile)이란 자격을 갖춘 개인납세자에게 전화, 디지털방식 등으로 세무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캐나다 국세청의 세정서비스임
- 자격을 갖춘 개인납세자는 2023년 귀속 소득세 신고서를 심플파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자격을 갖춘 개인납세자란 연령, 거주지역,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임계값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노령연금, 고용관련 지원 소득, 일부 이자소득 등 특정 출처에서만 수입이 발생한 조건을 충족한 소득자임
- 국세청은 심플파일을 통해 납세자에게 세무신고의 간소화를 제공하고 중요한 세제 혜택과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음
  - 심플파일은 세무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거나 신고에 공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녀수당, GST/HST 크레딧 등 중요한 세제 혜택을 놓치고 있기 때문임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 영국

## [에너지 이익 부담금 인상안 발표]

- 영국 재무부는 2024년 7월 29일, 에너지 이익 부담금(Energy(Oil and Gas) Profits Levy, EPL) 세율을 2024년 11월 1일부터 기존 35%에서 38%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발표함<sup>5)</sup>
  - 이에 따라 업스트림(upstream)<sup>6)</sup> 석유 및 가스 활동에 대한 기본 세율(headline rate of tax)은 78%에 달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현재 영국은 석유 및 가스 업체에 대해 30%의 링 펜스 법인세율(Ring Fence Corporate Tax, RFTC)에 10%의 추가요금 세율(Supplementary Charge, SC)을 가산한 40%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여기에 에너지 이익 부담금(EPL) 세율 35%를 가산하여 총 75%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금번 발표한 인상안은 에너지 이익 부담금(EPL) 세율 35%를 38%로 3%p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부담금 적용 종료일 또한 2029년 3월 31일에서 203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될 예정임
  - 한편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적격

3) Government of Canada, "Over half a million lower-income individuals will receive a SimpleFile invitation this summer," 2024. 7. 3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24/over-half-million-lower-income-individuals-receive-simplefile-invitation-this-summer.html?utm\\_source=mediaroom&utm\\_medium=eml](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news/newsroom/tax-tips/tax-tips-2024/over-half-million-lower-income-individuals-receive-simplefile-invitation-this-summer.html?utm_source=mediaroom&utm_medium=eml), 검색일자: 2024. 8. 13.

4) IBFD, "Canada Expands SimpleFile Services, Invites 500,000 More Lower-Income Individuals to File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s," 2024. 7. 3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31\\_ca\\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31_ca_1.html), 검색일자: 2024. 8. 13.

5) IBFD, "United Kingdom - Treasury Proposes to Raise Energy Profits Levy Rate to 38%," 2024. 7. 30.,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30\\_uk\\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30_uk_2.html), 검색일자: 2024. 8. 8.

6) 석유산업은 원유의 생산 단계의 부문을 업스트림(upstream), 정제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판매 단계의 부문을 다운스트림(downstream)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음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지출(qualifying expenditure)에 대한 29%의 투자 공제(investment allowance)는 삭제될 예정이다

- 금번 조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24년 10월 30일 발표 예정인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칙에 대한 지침 발표]

■ 영국 국세청(HMRC)은 2024년 8월 1일,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칙(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보고 대상 정보의 성격, 실지조사 요건, 일정 및 과태료 등의 내용이 포함됨<sup>7, 8)</sup>

- 영국의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칙 도입은 OECD가 2020년 발표한 「공유·임시 경제 판매자 관련 플랫폼 보고 모델 규정(OECD Model Rules for Reporting by Platform Operators with respect to Sellers in the Sharing and Gig Economy)」<sup>9)</sup>에 따른 것임
- 디지털 플랫폼 보고 규칙에 따르면, 영국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거나, 관리 장소를 둔 디지털 플랫폼은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와 고

객을 연결하여 상품·서비스를 공급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상품·서비스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디지털 플랫폼 보고 대상이 됨

- 보고 대상 판매자는 영국 또는 다른 국가에 거주하며 플랫폼에서 상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거나 대가를 받아야 함
-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보고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기한 내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
  - 보고 대상 플랫폼 운영자 또는 보고 제외 대상 플랫폼 운영자가 HMRC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파운드<sup>10)</sup>의 금액
  -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파운드<sup>11)</sup>의 초기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일 최대 6천파운드<sup>12)</sup>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됨
  - 부정확·불완전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판매자의 기록을 보고한 것에 대하여 건당 최대 100파운드<sup>13)</sup>의 금액
- HMRC는 디지털 플랫폼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 추가적인 지침이 발표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7) IBFD, "United Kingdom - Tax Authority Publishes Guidance on 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 2024. 8.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6\\_uk\\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6_uk_1.html), 검색일자: 2024. 8. 9.

8) GOV.UK., "Guidance - 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 2024. 8. 1., <https://www.gov.uk/guidance/reporting-rules-for-digital-platforms>, 검색일자: 2024. 8. 9.

9) OECD, *Model Rules for Reporting by Platform Operators with respect to Sellers in the Sharing and Gig Economy*, OECD, Paris, 2020, <https://www.oecd.org/en/topics/sub-issues/international-tax-compliance-policies-and-best-practices/model-reporting-rules-for-digital-platforms.html>, 검색일자: 2024. 8. 9.

10)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5만원임

11)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77만원임

12)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052만원임

13)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만원임



독일

[세법 개정안 연방정부 승인]

- 독일 연방정부는 2024년 7월 24일 소득세 관련 기준액 조정 등을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초안을 승인함<sup>14)</sup>
- 소득세와 관련한 공제액, 면제 기준액 및 한도 금액 등을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함
  - 기본 수당을 2025년 1만 2,084유로<sup>15)</sup>, 2026년 1만 2,336유로<sup>16)</sup>로 인상할 예정임
  - 자녀 공제(Kinderfreibetrag)를 2025년 3,336유로<sup>17)</sup>, 2026년 3,414유로<sup>18)</sup>로 인상함
  - 아동 1인당 월별 아동구조금(Kindergeld)을 현재 250유로<sup>19)</sup>에서 2025년 255유로<sup>20)</sup>로, 2026년에는 259유로<sup>21)</sup>로 인상함
  - 연대 할증료의 면제 한도를 단독 과세의 경우

1만 8,130유로<sup>22)</sup>에서 1만 9,950유로<sup>23)</sup>(2025년) 및 2만 350유로<sup>24)</sup>(2026년)로, (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3만 6,260유로<sup>25)</sup>에서 3만 9,900유로<sup>26)</sup>(2025년) 및 4만 700유로<sup>27)</sup>(2026년)로 인상함

- 적격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의 평가 한도액을 1천만유로<sup>28)</sup>에서 1,200만유로<sup>29)</sup>로 확대함
- 최고 구간(27만 7,826유로<sup>30)</sup> 이상)을 제외한 2025/2026 과세연도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함
- 조세 협정의 통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동산 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변경함
  - 국경 간 조세 협정에 대한 통지 의무를 국내 협정까지 확대함
  - 현재 취득 또는 생산 비용이 250유로<sup>31)</sup>에서 1천 유로<sup>32)</sup> 사이로 설정된 동산 고정자산에 대한

14) IBFD, "Germany - Government Approves Draft Bill on Further Development of Tax Law and Adjustment of Income Tax Brackets," 2024. 7.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7-29\\_de\\_2](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7-29_de_2), 검색일자: 2024. 8. 19.

15)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93만원임  
 16)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831만원임  
 17)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5만원임  
 18)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07만원임  
 19)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만 1천원임  
 20)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만 8천원임  
 21)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8만 4천원임  
 22)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691만원임  
 23)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61만원임  
 24)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020만원임  
 25)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381만원임  
 26)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922만원임  
 27)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040만원임  
 28)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억 4,090만원임  
 29)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8억 908만원임  
 30)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억 1,232만원임  
 31)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7만 1천원임  
 32)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8만원임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선택적 감가상각의 기준액을 800유로<sup>33)</sup>에서 5천유로<sup>34)</sup> 사이의 자산으로 확대함

- 매입 또는 제조된 감가상각비 산출과 관련하여, 동산 자산에 대한 정률법<sup>35)</sup>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생산업체의 초과이익에 대해 9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임

- 해당 부담금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적격 생산업체가 얻은 초과이익에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 네덜란드

#### [전력 생산자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도입 법안 승인]

■ 네덜란드 의회는 2024년 7월 9일, 최근 전력 생산자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도입하는 법안(Tijdelijke wet inframarginale elektriciteitsheffing)을 승인함<sup>36)</sup>

- 법안 도입 배경은 2022년 9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긴급 시장 개입 규정 Regulation on an Emergency Intervention to Address High Energy Prices(2022/1854)에 따라,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를 이행하기 위함임
- 제안된 법안은 메가와트시(MWh)<sup>37)</sup>당 130유로<sup>38)</sup>를 초과하여 판매되는 전기에 대한 전기



### 룩셈부르크

#### [법인세율 인하 관련 세법 개정안 의회 제출]

■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은 2024년 7월 17일, 법인세율 인하 및 혼성불일치(hybrid mismatch) 요건 기준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개정안은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임<sup>39)</sup>

- 과세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각 1%p씩 인하함
  - 과세소득이 20만유로<sup>40)</sup>를 초과하는 경우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함
  - 과세소득이 17만 5천유로 이상 20만유로 이하인 경우, 17만 5천유로를 넘는 소득액(과세소득에서 17만 5천유로를 제외한 금액)에

33)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19만원임

34) 2024년 8월 27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2만원임

35) 고정자산의 기초 장부가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기의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법

36) IBFD, "Netherlands Enacts Temporary Contribution on Surplus Revenues of Electricity Producers," 2024. 7.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25\\_nl\\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25_nl_1.html), 검색일자: 2024. 8. 19.

37) 메가와트시(MWh) : 배터리 용량을 1메가와트(M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하거나 생산한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38)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9만 3,480원임

39) IBFD, "Finance Minister Presents Bill on CIT Rate Reductions, Group Ratio to Parliament," 2024. 7.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9\\_lu\\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9_lu_1.html), 검색일자: 2024. 8. 14.; Le Gouvernement du Grand-Duché de Luxembourg, "Projet de loi portant modification," <https://wdocs-pub.chd.lu/docs/exped/0148/123/297235.pdf>, 검색일자: 2024. 8. 14.

40) 2024년 8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9,909만원임

31%에서 30%로 인하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2만 4,500유로<sup>41)</sup>를 더하여 세액을 산출함 - 과세소득이 17만 5천유로<sup>42)</sup> 미만인 경우 세율을 15%에서 14%로 인하함

<표 1> 룩셈부르크 개정 법인세율

(단위: %)

과세소득	개정 전 세율 (2024년)	개정 후 세율 (2025년)
20만유로 초과	17	16
17만 5천유로 이상 20만유로 이하	31	30
17만 5천유로 미만	15	14

출처: IBFD, "Finance Minister Presents Bill on CIT Rate Reductions, Group Ratio to Parliament," 2024. 7.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9\\_lu\\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7-19_lu_1.html), 검색일자: 2024. 8. 14.

- 혼성불일치 규정의 관계기업<sup>43)</sup>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의결권, 자산 지분권, 이익 분배권의 직·간접적 지분의 보유 기준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개정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 스위스

### [암호화자산 관련 자동정보교환 파트너 국가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2024년 8월 14일, 암호화자산(Crypto Asset) 관련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이하 AEOI)을 위한 파트너 국가 결정에 관한 의견수렴을 개시함<sup>44), 45)</sup>

- 스위스 연방의회는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rypto - Asset Reporting Framework, 이하 CARF)에 따른 요건을 채택할 계획인 기존 111개 파트너 관할권 국가와만 정보 교환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또한 연방의회는 해당 파트너 관할권 국가가 데이터 보안 및 기밀성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금번 의견수렴은 해당 국가 외에도 향후 암호화자산 관련 AEOI를 진행할 추가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됨
- 스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자산 관련 AEOI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정보 교환은 CARF를 기반으로 함
- 금번 의견수렴은 2024년 11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41) 2024년 8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61만원임

42) 2024년 8월 1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6,170만원임

43) 관계기업(entreprise associée)은 납세자가 의결권, 자산 지분권, 이익 분배권의 직·간접적 지분을 보유하는 단체(organisme), 납세자의 의결권, 자산 지분권, 이익 분배권의 직·간접적 지분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단체, 납세자와 재무회계상 동일한 연결 그룹에 속하는 단체, 납세자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임(룩셈부르크 「소득세법」 (Loi modifiée du 4 décembre 1967 concernant l'impôt sur le revenu), Art. 168ter (1) 18.)

44) IBFD, "Switzerland - Switzerland Initiates Consultation on Determination of Partner States for AEOI Concerning Crypto Assets," 2024. 8. 1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15\\_ch\\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15_ch_1.html), 검색일자: 2024. 8. 19.

45) 스위스 연방의회, "Federal Council initiates consultation on determination of partner states for the AEOI concerning cryptoassets," 2024. 8. 14., <https://www.admin.ch/gov/en/start/documentation/media-releases.msg-id-102063.html>, 검색일자: 2024. 8. 19.



이탈리아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침 발표]

- 이탈리아는 2024년 7월 24일,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사항을 발표함<sup>46), 47)</sup>
  - 2024년과 2025년에 이탈리아에 위치한 생산 시설의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는 거주기업과 비 거주기업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생산 시설의 경우 3%, 생산 공정의 경우 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무형 자산에는 에너지 대시보드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며 조건에 따라 생산 공정의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술개발 교육비용도 포함됨
  - 투자세액공제율은 에너지 절감이 클수록 증가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그리스

[2024년 8월 전기 생산자에 대한 특별 징수]

- 그리스 정부는 2024년 8월 한달간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 생산자에게 에너지 전환 기금의 목적으로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 징수 법률을 제정함<sup>48)</sup>
  - 해당 특별 징수는 천연가스의 고열량 메가와 트시(MWh)당 10유로<sup>49)</sup>에 해당하며, 각 전기 생산자가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천연가스 양에 따라 계산함
    - 해당 세수를 통해 2024년 8월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 세금 부과 기간은 환경에너지부 장관과 국가 경제재정부 장관의 공동 결정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정호림 세무사>

<표 2> 에너지 절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단위: %)

투자에 대한 취득비용	에너지 절감률	시설의 3%/공정의 5%	시설의 6%/공정의 10%	시설의 10%/공정의 15%
250만유로 이하		35	40	45
250만유로 ~ 1,000만유로		15	20	25
1,000만유로 ~ 5,000만유로		5	10	15

출처: IBFD

46) 이탈리아 관보(GAZZETTA UFFICIALE), “DECRETO 24 luglio 2024,” 2024. 7. 24., <https://www.gazzettaufficiale.it/eli/id/2024/08/06/24A04160/SG>, 검색일자: 2024. 8. 13.

47) IBFD, “Government Implements Tax Credit for Investments Achieving Energy Savings,” 2024. 8.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12\\_it\\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12_it_2.html), 검색일자: 2024. 8. 13.

48) IBFD, “Government Enacts Special Levy on Electricity Producers for Month of August 2024,” 2024. 8.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7\\_gr\\_2.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7_gr_2.html), 검색일자: 2024. 8. 19.

49) 2024년 8월 19일 환율 기준 14,700원



## 핀란드

## [2025년 예산안 초안 발표]

■ 핀란드 재무부는 2024년 8월 9일, 2025년 예산안 초안을 발표함<sup>50)</sup>

-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육비 공제 혜택 폐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인상 등의 개정 방향을 발표함
- 구체적 개정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세부 사항은 정부의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2024년 9월 중에 공표될 예정임

■ (법인세)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육비 공제 혜택을 폐지할 예정임

- 기존에는 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근무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과세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었음<sup>51)</sup>  
- 최대 3일을 한도로 직원의 평균 일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 (개인소득세) 소득세 세율구간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상향 조정하고, 최고 소득 등급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할 예정임

- 세율 적용 표는 통상적으로 매년 갱신되며, 2025년도에는 연간 2만 1,200유로<sup>52)</sup> 이상의 소득에 대해 6구간으로 나누어 12.64 ~ 4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됨

- 최고 소득 등급은 연간 15만유로<sup>53)</sup> 이상의 소득을 뜻하며, 적용세율을 기존 44%에서 44.5%로 0.5%p 인상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고,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 계획을 발표함

- 2024년 9월 1일부터 표준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24%에서 25.5%로 1.5%p 인상함

- 2025년 1월 1일부터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0%에서 14%로 4%p 상향함

- 2025년 6월 1일부터 과자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기존의 감면 세율인 10%가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생리대, 어린이용 기저귀 등에는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아닌 14%의 감면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혜택을 폐지하고, 기타 혜택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1만 5천유로<sup>54)</sup> 이상에서

50) IBFD, "Ministry of Finance Publishes Its Draft Budget Proposal for 2025," 2024. 8.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9\\_fi\\_1.html](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8-09_fi_1.html), 검색일자: 2024. 8. 19.

51) IBFD, Finland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Tax Guides - 1. Corporate Income Tax (Last Reviewed: 5 August 2024),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fi\\_s\\_1.3.3.%23gtha\\_fi\\_s\\_1.3.3.](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fi_s_1.3.3.%23gtha_fi_s_1.3.3.), 검색일자: 2024. 8. 21.

52)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157만원임

53)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억 2,339만원임

54)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234만원임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2만유로<sup>55)</sup> 이상으로 5천유로<sup>56)</sup> 상향 조정함

### ■ (소비세) 알코올 음료 및 담배소비세를 인상할 예정임

- 2024년 11월 1일부터 청량음료 및 알코올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예정임
- 2025년 7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인상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 호주

### [국세청 내 필라 2 컨설팅 관련 실무단 설치]

### ■ 호주 국세청은 2024년 7월 31일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 시행 관련 컨설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무단 설치를 발표함<sup>57)</sup>

### ■ 본 실무단은 협의를 통해 새로운 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행정적 측면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할 예정임

- 국내의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세금의 평가 및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양식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새로운 세금 신고서 설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함
- 호주 소득 포함 규칙 및 과소 이익 규칙 세금 신고서(Australian income inclusion rule

and undertaxed profits rule tax return, AIUTR)

### - 국내 최저한세 신고서(Domestic minimum tax return, DMTR)

- 각 다국적 기업이 필라 2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 시스템 및 프로세스 등을 검토함
- 국세청은 공개 자문 및 지침, 고객 참여 접근 방식 등 도입 지원 방식에 대해 논의함

### ■ 실무단 가입 희망자에 대해 2024년 8월 9일까지 한 페이지 분량의 의향서(EOI)를 제출 받음

- 의향서에는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 조치와 관련된 가입 지원자의 경험과 지식과 필라 2 관련 규정이 지원자의 조직 또는 조연자로서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55)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79만원임

56) 2024년 8월 19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745만원임

57) Australian Taxation Office, "Pillar Two 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Working Group,"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business-bulletins-newsroom/pillar-two-global-and-domestic-minimum-tax-working-group>, 검색일자: 2024. 8. 19.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EU 이사회, EU 차원의 경제·사회 정책 조정을 위한 연간 European Semester와 함께 올해 재정감독(Fiscal surveillance) 타임라인을 발표 (2024. 7. 26., p. 70 <표 1> 참조)<sup>1)</sup>

※ European Semester는 매년 11월 EU 집행위원회의 경제·사회 우선순위 발표로 시작되고 다음 해 10월 EU 회원국들의 예산초안 제출로 마무리되는 연간 순환 형태로,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존치에 EU 회원국의 재정·경제 정책이 부합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거시경제 안정, 건전한 EU 재정 보장을 목표로 함

- 올해 4월 30일 기존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 조정에서 국가별 4~7년 기간 동안의 지출 경로 및 개혁·투자 우선순위를 담은 중기 재정 구조 계획 제출로 새로운 경제거버넌스 체계 시행
- 연간 European Semester 일정과 함께 경제거버넌스 체계, 초과적자시정절차를 통한 EU 차원의 조정 및 감시를 진행
  - (경제거버넌스 체계) 새로운 체계 시행으로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9월에 제출할 중기 구조계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정에 관한 참조궤적과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였고(6월), 9월 중기 구조계획 발표 후 11월 EU 집행위,

12월 EU 이사회 권고 예정

- (European Semester) 전년 11월 EU 집행위는 가을패키지를 통해 EU 경제·고용·사회 정책 우선순위, 거시경제 불균형을 파악하는 경보체계보고서 등을 발표하였고, 6월 국가별 보고서와 국가별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봄 패키지를 통해 거시경제 불균형 해결 촉구
- (초과적자시정절차) 7월 EU 집행위는 EU 이사회에 초과적자 시정이 필요한 국가들을 선별하여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을 제안하고 이사회 승인 시 시행되며, 10월 유로지역<sup>2)</sup> 국가들은 내년 예산초안을 EU 집행위·이사회에 제출하여 재정준칙 준수 등을 이행



### OECD

- OECD, 2024년 1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4. 8. 12.)<sup>3)</sup>
  - OECD 회원국의 2024년 1분기 1인당 실질가계소득은 전분기 대비 0.9% 증가하였으며, G7 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1분기 동안 실질가계소득 증가세를 보임
    - G7 국가 중 이탈리아가 근로소득 및 현물 사회 이전 증가로 인해 가장 큰 증가율(3.4%)을 기록함

1) EU 이사회, "European Semester 2024: next steps in fiscal surveillance," 2024. 7. 26.,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ropean-semester-2024/#0>, 검색일자: 2024. 7. 29.

2) 유로지역 국가(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채택한 국가)는 총 20개국으로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임(유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EU 회원국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 총 7개국)

3)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irst quarter 2024," 2024. 8. 12.,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08/growth-and-economic-well-being-first-quarter-2024-oecd1.html>, 검색일자: 2024. 8. 14.

<표 1> 2024년 European Semester 재정감독(Fiscal surveillance) 타임라인

■ 경제거버넌스 체계 ■ European Semester ■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일자	분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024. 4. 30.		- 새로운 경제거버넌스 체계 발효	
2024. 6. 19.		- EU 집행위원회, 봄 패키지 발표	- 국가별 보고서(경제·사회 발전과 과제 분석, 국가 정책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과 과제의 해결 범위 및 효과 평가) - 국가별 권고사항(경제, 예산, 고용, 구조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지침/ 국가별 확인된 불균형 시정 조치 권고) -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에 따라 거시경제 불균형이 확인된 국가들에 대한 평가(이전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전년 11월 발표 내용))
2024. 6. 21.		- EU 집행위, 참조궤적(Reference trajectories) 및 기술 정보(Technical information) 발표	- 국가별 제출 예정인 중기 재정 구조계획에 포함될 다년도 지출 목표(Target)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참조궤적 및 기술정보 발표
2024. 7. 8.		- EU 집행위, 초과적자시정절차 시행 제안	- (개시 대상) 7개국 대상 초과적자시정절차 개시(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 (유지 대상) 루마니아 초과적자시정절차 유지
2024. 7. 16.		- EU 경제금융이사회, EU 집행위 초과적자시정절차 제안 사항 동의	- 초과적자시정절차 개시(대상 7개국) 및 유지(루마니아)
2024. 7. 26.		- EU 이사회, EU 집행위 봄 패키지의 국가별 권고사항 동의 /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에 따른 심층검토 결론 승인	- 초과적자시정절차 개시(대상 7개국) 및 유지(루마니아)
2024. 9. 20.		- EU 회원국, 중기 재정 구조계획 제출	- 국가별 4~7년 기간 동안의 지출 경로 및 개혁·투자 우선순위를 담은 중기 재정 구조계획(중기 재정 구조계획은 EU 집행위와 EU 이사회에서 평가받을 예정(유로지역 국가들은 국가별 내년 예산초안과 함께 평가))
2024. 10. 15.		- 유로지역 국가, 2025년 예산초안을 EU 집행위 및 EU 이사회에 제출	
2024. 10. 17. ~ 10. 18.		- EU 정상 이사회, 국가별 권고사항을 논의	
2024. 10월 말		- EU 이사회, 국가별 권고사항 채택	
2024. 11월 말		- EU 집행위, 가을 패키지 발표	가을 패키지 - 연간 지속성장조사(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 -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 유로지역 권고사항을 위한 제안 - 공동고용보고서 초안(Draft joint employment report)
		- EU 집행위, 회원국의 중기재정구조계획에 대한 이사회 권고를 기초로 제안 제시	
		- EU 집행위, 유로지역 국가들의 2025년 예산초안에 대한 의견 발표	
		- 8개국의 초과적자시정을 위한 이사회 권고사항을 제안	- 8개국(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2024. 12. 9.		유로그룹(유로지역 이사회) - 유로지역 회원국들의 2025년 예산초안 및 예산 상황 및 전망 평가 - 2025년 유로지역 권고사항에 대해 논의(2025년 1월 국가별 권고사항 확정 대비)	
2024. 12. 10.		- EU 경제금융이사회, 논의	- 2025년 지속가능성장조사 - 경고체계보고서 - 유로지역 경제정책 정책권고 초안
		- EU 이사회, 중기 재정 구조계획 EU 이사회 권고의 사전 준비	
		- EU 이사회, 초과적자시정절차의 사전 준비	
2025. 1. 20.		- 유로그룹(유로지역 이사회), 2025년 유로지역 경제정책 권고사항 논의	
2025. 1. 21.		- EU 경제금융이사회, 2025년 유로지역의 경제정책에 관한 권고 승인	
		- EU 경제금융이사회, 2025년 연간 지속가능성장조사, 경고체계보고서, 유로지역 경제정책에 대한 권고 초안 결론을 승인	
		- EU 이사회, 중기재정구조계획에 대한 이사회 권고사항 사전 준비 계속 진행	

출처: EU 이사회, "European Semester 2024: next steps in fiscal surveillance," 2024.7. 26,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european-semester-2024/#0>, 검색일자: 2024. 7. 29.

&lt;표 2&gt; 1인당 분기 실질가계소득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1	Q2	Q3	Q4	Q1	Q2	Q3	Q4	Q1
OECD	-1.3	-0.7	0.7	0.2	1.3	0.2	-0.2	0.3	0.9
G7	-1.4	-0.8	0.5	0.0	1.2	0.1	-0.1	0.1	0.5
캐나다	1.7	-1.2	-0.4	0.8	-1.2	-0.1	0.6	-0.5	0.6
프랑스	-1.7	-0.8	1.3	1.3	-1.2	0.0	0.2	0.9	0.6
독일	-0.3	-0.6	0.7	-0.9	-0.6	0.5	-0.5	0.1	1.4
이탈리아	-0.8	0.3	0.1	-3.5	2.2	-0.5	0.9	-0.5	3.4
일본	1.6	-2.7	0.3	-0.1	-0.8	-	-	-	-
영국	-0.4	-1.4	-0.6	1.5	-0.5	1.7	-0.3	0.5	0.3
미국	-2.3	-0.4	0.6	0.1	2.3	0.4	-0.2	0.1	0.2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일본은 2023년 2분기부터 분기별 가구 소득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음

출처: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1st quarter 2024," 2024. 8. 12., p. 3, Table 1

- 독일도 전분기 대비 실질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0.1→1.4%), 이는 부분적으로 근로소득 증가에 기인함
- 캐나다의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감소(-)에서 0.6%로 반등
- 프랑스는 기본 연금 혜택이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증가함에 따라 실질가계소득이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영국과 미국의 실질가계소득 증가율은 각각 0.3%, 0.2%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기타 OECD 국가 중 폴란드는 근로소득, 사회적 급여, 자산소득\*의 증가로 인해 가장 큰 증가율(10.2%)을 기록했으며, 그리스는 가장 큰 감소(-1.9%)를 보임

\* 폴란드의 자산소득은 2021년 말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수익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 OECD,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8. 22.)<sup>4)</sup>
  - OECD의 2024년 2분기 GDP 성장률(잠정)은 1분기와 동일한 0.5%를 기록하였고, G7 국가의 GDP 성장률은 1분기 0.2%에서 2분기 0.5%로 빠르게 증가함
  - 일본은 1분기에 -0.6%로 위축된 후 2분기에 0.8%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주로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에 의해 성장이 주도됨
  - 미국은 민간소비 증가에 기인해 1분기 0.4%에서 2분기 0.7%로 성장이 가속화됨
  - 캐나다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0.4%에서 2분기에 0.5%로 소폭 상승했으며, 프랑스는 1분기와 동일한 0.3%의 성장률을 유지
  - 반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0.2%에서

4) OECD, "OECD GDP growth continues at a steady pace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2024. 8. 22., <https://www.oecd.org/en/data/insights/statistical-releases/2024/08/gdp-growth-second-quarter-2024-oecd.html>, 검색일자: 2024. 8. 23.

<표 3> 분기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분기 대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Q2	Q3	Q4	Q1	Q2	Q3	Q4	Q1	Q2
OECD	0.5	0.5	0.3	0.4	0.4	0.5	0.3	0.5	0.5
G20	-0.1	1.5	0.5	1.0	0.7	0.8	0.7	0.8	-
유럽연합 27개국	0.8	0.4	-0.1	0.1	0.1	0.1	0.0	0.3	0.3
유로지역 20개국	0.9	0.4	-0.1	0.0	0.1	0.0	0.0	0.3	0.3
G7	0.2	0.4	0.3	0.5	0.5	0.5	0.4	0.2	0.5
캐나다	0.9	0.5	-0.2	0.8	0.2	-0.1	0.0	0.4	0.5
프랑스	0.4	0.5	0.1	0.1	0.6	0.1	0.4	0.3	0.3
독일	0.0	0.6	-0.5	0.1	-0.1	0.2	-0.4	0.2	-0.1
이탈리아	1.4	0.4	-0.1	0.4	-0.2	0.3	0.1	0.3	0.2
일본	1.1	-0.3	0.4	1.3	0.6	-1.0	0.1	-0.6	0.8
영국	0.1	-0.1	0.1	0.2	0.0	-0.1	-0.3	0.7	0.6
미국	-0.1	0.7	0.6	0.6	0.5	1.2	0.8	0.4	0.7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출처: OECD, "OECD GDP continues at a steady pace in the second quarter of 2024," 2024. 8. 22., p. 2, Table 1

2분기에 -0.1%로 소폭 위축되었으며, 이는 특히 기계 및 장비와 건설 부문의 충고정자 본형성 감소에 기인함

- 이탈리아와 영국의 경제성장률도 각각 0.2%, 0.6%로 전분기 대비 소폭(-0.1%p) 둔화됨

1.)까지 12개 분야의 정규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2024년 8월 21일 기준)까지 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분야 없음

- (하원 현황) 총 5개 분야(국방, 국토안보, 내무·환경, 군사시설·재향군인, 국무·외교) 세출 예산 통과 완료

- (상원 현황) 세출 심의 완료된 분야 없음
- (정부 입장) 바이든 정부는 현재 하원에서 통과되거나 진행 중인 모든 분야의 세출 예산 법안에 대해 대통령 예산안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었음을 비판하며 부정적 입장을 개진

- (예산결의안\* 진행 여부) 하원의 경우, 예산위



미국

[예산·결산 등]

■ CRS(의회조사처), 2025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진행상황 업데이트(2024. 8. 20.)<sup>5), 6)</sup>

- (최근 현황) 2025회계연도 개시일(2024. 10.

5) CRS, "Appropriations Status Table: FY2025," 2024. 8. 20., <https://crsreports.congress.gov/AppropriationsStatusTable/Index/AppropriationsStatusTable?id=2025>, 검색일자: 2024. 8. 21.

6) CRFB, "Appropriations Watch: FY 2025," 2024. 8. 2., <https://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25>, 검색일자: 2024. 8. 21.

원회(House Budget Committee) 주관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결의안(H.Con.Res. 117) 승인(2024. 3. 7.)<sup>7), 8)</sup>

\* (예산결의안) 「의회예산법(The 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에 근거하여 대통령 예산안이 발표되면 미 의회의 상원과 하원은 예산안을 참고로 해서 각각 예산결의안(의회 예산 심의 청사진) 심의에 착수

- (결의안 주요 내용<sup>9)</sup>) 10년 안에 재정 수지 흑자(440억달러) 달성, 향후 10년 동안 이자 지출 2.7조달러 감축, 부적절지출(improper payments) 50% 감축을 통해 1조달러 재정 절감, 향후 10년간 매해 3% 성장 견인 등

<표 4> 미국 FY2025 12개 세출예산분야 의회 진행 상황

분야	하원		상원	
	법안 번호	통과 여부	법안 번호	통과 여부
농업(Agriculture)	H.R. 9027	×	S. 4690	×
통상·법무·과학(Commerce, Justice and Science)	H.R. 9026	×	S. 4795	×
국방(Defense)	H.R. 8774	○	S. 4921	×
에너지·수자원(Energy and Water)	H.R. 8997	×	S. 4927	×
금융(Financial Services)	H.R. 8773	×	S. 4928	×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H.R. 8752	○	-	×
내무·환경(Interior and Environment)	H.R. 8998	○	S. 4802	×
노동·복지·교육(Labor, Health and Education)	H.R. 9029	×	S. 4942	×
입법부(Legislative Branch)	H.R. 8772	Failed	S. 4678	×
군사시설·재향군인(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H.R. 8580	○	S. 4677	×
국무·외교(State and Foreign Operations)	H.R. 8771	○	S. 4797	×
교통·주택/도시개발(Transportation, HUD)	H.R. 9028	×	S. 4796	×

출처: CRS, "Appropriations Status Table: FY2025," 2024. 8. 20.을 재구성하여 작성

<표 5> 미국 의회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한 예산결의안과 FY2025 대통령 예산안 비교

분야	바이든 정부의 FY2025 대통령 예산안	하원 예산위원회의 FY2025 예산결의안
세금	신규 조세 4.9조달러 부과	신규로 부과되는 세금 없음
채무	경제성장률보다 25% 더 빠른 속도로 증가	경제 성장 속도가 채무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증가
재정적자	역사적 기준으로 높은 수치인 연 평균 1.6조달러 <sup>10)</sup> (GDP 대비 4.6%)	10년 안에 재정 흑자 달성 (바이든 정부 예산안 대비 10.4조달러 낮은 규모의 재정적자)
지출	향후 10년 동안 86.6조달러 지출 발생	향후 10년 동안 정부 예산안 대비 15.1조달러 절감
이자비용	향후 10년 동안 12.2조달러 발생	정부 예산안 대비 2.7조달러 절감

주: 1) 참고로, OMB의 "Mid-Session Review, 2024. 7. 19."에서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 실적치는 1.6조달러로 집계되고 있음

출처: 하원 예산위원회, "House Budget Committee versus President Biden"<sup>10)</sup>

7) 하원 예산위원회, "Chairman Arrington, Speaker Johnson Release Statements After Fiscal Year 2025 Budget Resolution Passes out of Committee," 2024. 3. 7., <https://budget.house.gov/press-release/chairman-arrington-speaker-johnson-release-statements-after-fiscal-year-2025-budget-resolution-passes-out-of-committee>, 검색일자: 2024. 8. 21.

8) 하원 예산위원회, "Markup of The Concurrent Resolution on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25", 2024. 3. 7., <https://docs.house.gov/Committee/Calendar/ByEvent.aspx?EventID=116938>, 검색일자: 2024. 8. 23.

9) 하원 예산위원회, "House Budget Committee versus President Biden", 2024. 3., [https://budget.house.gov/imo/media/doc/hbcr\\_vs\\_biden.pdf](https://budget.house.gov/imo/media/doc/hbcr_vs_biden.pdf), 검색일자: 2024. 8. 27.

10) 관련 링크: [https://budget.house.gov/imo/media/doc/hbcr\\_vs\\_biden.pdf](https://budget.house.gov/imo/media/doc/hbcr_vs_biden.pdf)

[기타]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2024. 7. 31.)<sup>11)</sup>
  -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기존 수준(5.25~5.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다음과 같이

- 현 경제 상황을 평가하고 주안점을 언급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계속하여 확장됨
  - (물가) 물가상승세는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
  - (노동시장) 고용증가세는 완화되었으며, 실

<표 6> 미국 2024년 2분기 주요 경제 지표 I - 물가, 노동시장

(단위: %, 천명)

구분		2024년 4월	2024년 5월	2024년 6월
물가 <sup>1)</sup>	PCE 물가 상승률	2.7	2.6	2.5
	재화	0.1	-0.1	-0.2
	서비스	4.0	4.0	3.9
	PCE 물가 상승률, 식품 및 에너지 제외	2.5	2.3	2.4
노동 시장 <sup>2)</sup>	생산가능인구	268,066	268,248	268,438
	경제활동인구	167,982	167,732	168,009
	경제활동참가율	62.7	62.5	62.6
	취업자 수	161,491	161,083	161,199
	인구 대비 취업률	60.2	60.1	60.1
	실업자 수	6,492	6,649	6,811
	실업률	3.9	4.0	4.1

주: 1.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의미

1) 해당 지표의 6월 수치는 잠정치(preliminary)임

2) 해당 지표는 계절조정된 수치임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June 2024," 2024. 7. 26., Table 7<sup>12)</sup>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Employment Situation Summary," 2024. 8. 2., Table A-1<sup>13)</sup>

<표 7> 미국 2024년 2분기 주요 경제 지표 II - 경제성장률

구분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Q1	Q2	Q3	Q4	Q1	Q2 <sup>1)</sup>
실질 GDP 성장률	1.9	2.5	2.2	2.1	4.9	3.4	1.4	2.8
명목 GDP 성장률	9.1	6.3	6.3	3.8	8.3	5.1	4.5	5.2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의미

1) 해당 수치는 속보치를 사용

출처: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and Year 2024 (Advance Estimate)," 2024. 7. 25., Table 1<sup>14)</sup>

11)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4. 7. 3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40731a1.pdf>, 검색일자: 2024. 8. 8.

12)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07/pi0624.pdf>, 검색일자: 2024. 8. 8.

13) 링크: [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isit\\_08022024.htm](https://www.bls.gov/news.release/archives/empisit_08022024.htm), 검색일자: 2024. 8. 8.

14) 링크: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4-07/gdp2q24-adv.pdf>, 검색일자: 2024. 8. 8.

업률은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를 유지  
- (리스크 관리)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 및 물가 안정의 양대 책무에 대하여 양측 리스크 모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sup>15)</sup> 물가 및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정상화 과정 중이라고 평가
  - (금리 인하) 물가 상승폭이 빠른 하락세로 전환 혹은 예상과 부합하여 움직이고, 강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동시장이 현상 유지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물가) 근원 PCE 지표에서 진전을 얻는 등 최근 수치들로 물가 안정 확신 증가
  - (노동시장) 과열되었던 노동시장이 지난 2년에 걸쳐 정상화되었다고 평가하며 현 노동시장의 여건이 물가 상승의 압력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음
- 회의 이후 시차를 두고 공개된 7월 FOMC 회의 의사록(Minutes)<sup>16)</sup>에서는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하방 위험 및 과대평가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됨
  - (하방위험) 회의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노동시장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언급함과 더불어, 일부 참가자들은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과열 완화가 심각한 악화로 번질 위험에 대해 경고

- (과대평가) 많은 회의 참가자들은 비농업 취업자 수가 과대평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

#### ■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잭슨홀 경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현 경제 상황과 향후 통화정책 관련 기조연설(2024. 8. 23)<sup>17)</sup>

※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은 미국 연방은행 중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주재로 개최 당해의 경제 현안을 주제로 선정하여 진행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으로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경제 전문가들도 참석하여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의논

- (개요) 2024년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통화정책의 실효성과 전달력 재평가’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연설을 발표
- (경제 상황 평가) 물가의 상방 위험은 감소하였으나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증가
  - (물가) 최근 물가 지표를 검토한 결과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인 2%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되며 현재 노동시장 상황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과열에서 상당히 냉각된 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15)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4. 7. 31.,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0731.pdf>, 검색일자: 2024. 8. 8.

16) 미국 연방준비제도,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24. 8. 2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minutes20240731.pdf>, 검색일자: 2024. 8. 23.

17) 미국 연방준비제도, “Speech by Chair Powell on the economic outlook,” 2024. 8. 23.,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powell20240823a.htm>, 검색일자: 2024. 8. 26.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현재의 노동시장 둔화 현상이 일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르는 대규모 해고의 결과는 아님을 덧붙임

- (정책 방향)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추후 지표 및 전망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나, 정책 기조를 조정할 시기이며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고 표현
  - 노동시장이 건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하방 위험에 대한 견제 의사를 강력히 표명



### 일본

####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발표 (2024. 7. 31.)<sup>18)</sup>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40조 2,016억엔, 세출결산총액은 127조 5,788억엔이며, 2024년도 이월 세출예산재원,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재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8,517억엔 규모
    - 세입 순증가액은 -5조 3,316억엔, 세출 불용액은 6조 8,910억엔이며, 세입 순증가액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에서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재원을 공제한 결산 순잉여금 8,517억엔은 「재정법」 제6조<sup>19)</sup>에 따라 최소 2분의 1의 금액이 국채 상환에 충당될 예정

#### [기타]

-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 (2024. 7. 29.)<sup>20)</sup>
  - (경제전망) 2026년도 GDP 성장률은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실질 0.7%, 명목 1.5%,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 실질 1.3%, 명목 2.8%, 고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실질 1.4% 명목 2.8%를 나타낼 전망
    - 2033년도 GDP 성장률은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실질 0.4%, 명목 0.7%를 나타낼 것이며,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1.4%, 명목 2.8%, 고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1.7%, 명목 3.2%를 나타낼 전망
  - (재정전망)<sup>21)</sup>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6년도에 0.5%를 기록한 후 점차 하락하여 2033년도에는 0.1%를 나타낼 전망이며,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2029년도부터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성장이행 시나리오에서 국가 및 지방의

18)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決算概要」,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3/ke060731.pdf](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3/ke060731.pdf), 검색일자: 2024. 8. 5.

19) 재정법 제6조: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금 중 2분의 1을 하회하지 않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다음연도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20)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4. 7. 29.,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r7chuuchouki1.pdf>, 검색일자: 2024. 8. 1.

21) 재정전망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는 관점에서 기준선 시나리오와 성장이행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기술함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6년도에 0.7%를 나타낸 후 점차 흑자폭이 확대되어 2033년도에는 1.8%를 나타낼 전망이며, 국

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채무잔고는 전망 기간 동안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

<표 8> 일본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단위: 억엔)

구분	금액	비고
1. 세입 결산총액	1,402,016	
2. 세출 결산총액	1,275,788	
3. 「재정법」 제41조 <sup>1)</sup> 잉여금	126,227	(1-2)
4. 2022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0	
5. 2023년도 신규발생잉여금	126,227	(3-4)
6. 2024년도 이월 세출예산재원으로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110,632	
7.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신규발생 잉여금	15,594	(5-6)
(1) 세입 순증가액	-53,316	
① 세수	24,651	
② 세외수입	17,032	
③ 공채금	-95,000	
(2) 세출 불용액	68,910	
예비비 <sup>2)</sup>	15,612	
기초연금 기여금 등 연금특별회계에 편입	14,518	
코로나19 대응 지방창생 <sup>3)</sup> 추진비	5,707	
기타	33,072	
8.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재원으로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7,077	
(1)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지방교부세 정산액분)	6,678	
(2) 공항정비 사업비 등 재원(항공기연료세 정산액분)	-	
(3) 부흥 비용 및 부흥채 <sup>4)</sup> 상환 비용 재원(부흥분(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이월분 및 2023년도분)에 대한 잉여금)	68	
(4)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sup>5)</sup> 이행 비용 재원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비용분(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잉여금)	330	
9. 「재정법」 제6조 <sup>3)</sup> 에 의한 순 잉여금	8,517	(7-8)

주: 1. 세외수입에는 부흥분(2011년도 제1·2차 추경예산 이월분) 35억엔 포함

2. 단위 미만 절사

1) 「재정법」 제41조: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시킨다.

2) 예비비 불용액의 내역은 원유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 8,689억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 5,000억엔, 일반 예비비 1,922억엔

3) 지방창생(地方創生)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인구 감소 문제와 의료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모든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해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 내각관방·내각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https://www.chisou.go.jp/sousei/index.html>, 검색일자: 2024. 2.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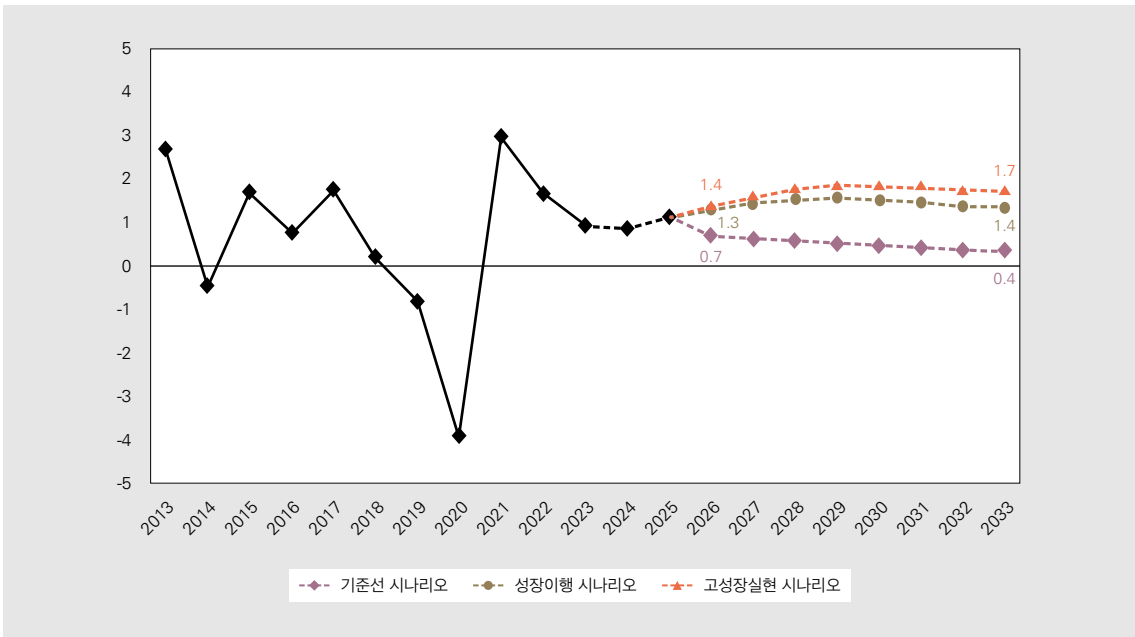
4) 부흥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정책 실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시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됨.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faq/budget/01aa.htm>, 검색일자: 2023. 8. 14.

5)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란 산업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 및 원재료에 관련된 이산화탄소를 원칙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를 의미함.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32\\_20240218.0000000000000000](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32_20240218.0000000000000000), 검색일자: 2023. 8. 14.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決算概要」 2024. 7. 31., p. 2

[그림 1] 일본의 중장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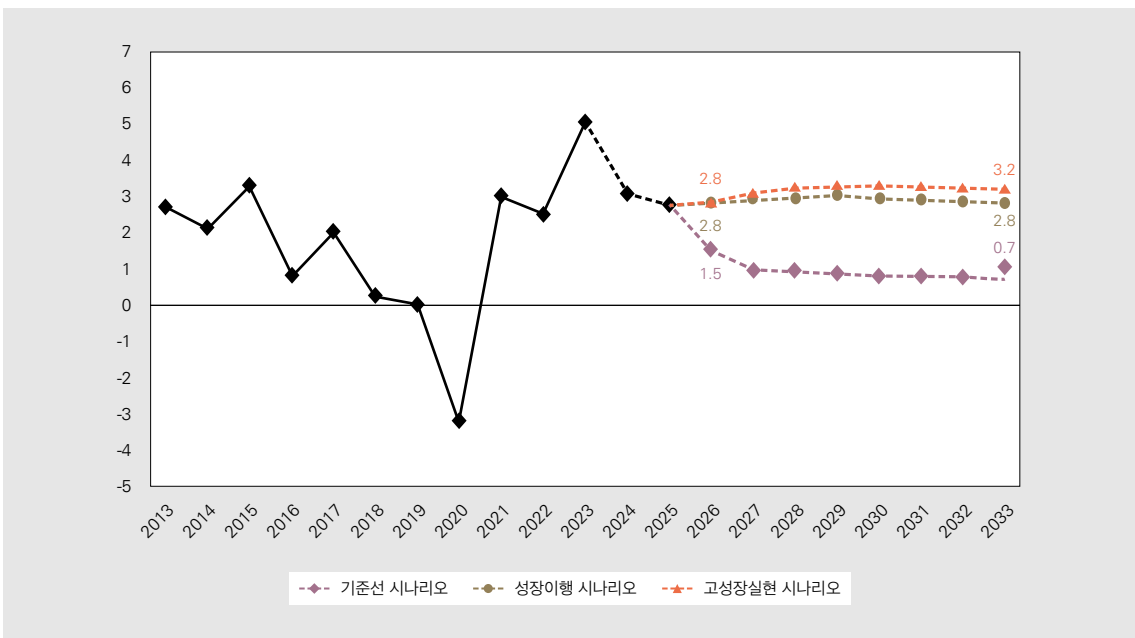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7. 29., p. 4, 그림 3

[그림 2] 일본의 중장기 명목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6年7月29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4. 7. 29., p. 4, 그림 4

■ 일본은행, 금융정책운영방침 변경 발표(2024. 7. 31.)<sup>22)</sup>

- 일본은행은 7월 30~31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금융시장조절방침의 변경과 장기국채 매입 감액 계획을 결정
  - (금융시장 조절방침)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sup>23)</sup>를 약 0.25%로 유지되도록 운용
  - (장기국채 매입) 매월 장기 국채 매입예정액을 분기마다 약 4천억엔씩 감액하여, 2026년 1~3월에는 매입예정액이 약 3조엔에 도달하도록 감액 계획을 결정
- ※ 2024년 7월 장기국채 매입액은 약 5.7조엔 수준
- (기타 제도 적용 이율 변경) 상기 금융정책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보완 당좌예금제도, 기준 대출이자율, 대출 증가 지원 자금 등의 제도 적용 이율을 변경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4. 8. 1.)<sup>24)</sup>

- (경제) 해외 경제의 완만한 성장, 완화적인 금융환경 등에 기인하여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

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sup>25)</sup>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정부 경제 대책 효과의 반작용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4회계연도에는 2.5%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6회계연도에는 '물가안정 목표'인 2%에 근접한 2.1%, 1.9%를 나타낼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4년 4월 전망과 비교) 2024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도 통계 개정 등에 기인하여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2025회계연도에는 이의 반작용으로 소폭 상향 조정

■ 일본 내각부, 2024년 2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4. 8. 15.)<sup>26)</sup>

- 전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8%(연율 3.1%)로 2분기 만에 증가세로

22) 일본은행, 「金融市場調節方針の変更および長期国債買入れの減額計画の決定について」, 2024. 7. 31., [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4/k240731a.pdf](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4/k240731a.pdf) 검색일자: 2024. 8. 5.

23)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無担保コールレート (オーバーナイト物))는 콜시장에서 계약일에 자금을 수령 및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담보자금 대출 및 차입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 출처: 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seisaku/b32.htm>, 검색일자: 2024. 3. 26.

24)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4年7月)」, 2024.8.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407b.pdf>, 검색일자: 2024. 8. 5.

25) 일본은행에서 추계한 2024년 1분기 전년 대비 잠재성장률은 0.64%. 출처: 일본은행, 「需給ギャップと潜在成長率」, 2024.7.3., [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 검색일자: 2024. 8. 26.

26) 일본 내각부, 「2024年4~6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24. 8.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4. 8. 19.

<표 9> 2024~2026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구분		실질 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4 회계연도	2024년 7월 전망	0.5~0.7 <0.6>	2.5~2.6 <2.5>
	2024년 4월 전망	0.7~1.0 <0.8>	2.6~3.0 <2.8>
2025 회계연도	2024년 7월 전망	0.9~1.1 <1.0>	2.0~2.3 <2.1>
	2024년 4월 전망	0.8~1.1 <1.0>	1.7~2.1 <1.9>
2026 회계연도	2024년 7월 전망	0.8~1.0 <1.0>	1.8~2.0 <1.9>
	2024년 4월 전망	0.8~1.0 <1.0>	1.6~2.0 <1.9>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출처: 일본은행, 『經濟 物価情勢の展望(2024年 7月)』, 2024. 8. 1, p. 9, 일부 발췌

전환되었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1.8%(연율 7.4%)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9%p로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1%p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분기 대비 0.8% 증가하여 2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 전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자동차, 의복, 외식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1.0%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과 민간기업 설비 증가율은 각각 1.6%, 0.9%를 나타냄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1%p로, 2024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실질 재고

잔고의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GDP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기여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정부최종소비지출, 공적고정자본형성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 대비 0.9% 증가
  - 전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은 0.1% 증가하여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전분기 대비 공적고정자본형성은 4.5% 증가하여 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
-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자동차 등 수출 증가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은 컴퓨터 등 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1.7% 증가

&lt;표 10&gt;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3년			2024년		2024년 <sup>1)</sup>
	Q2	Q3	Q4	Q1	Q2	
실질 GDP	0.6	-1.0	0.1	-0.6	0.8	3.1
국내수요	-1.0	-0.7	-0.1	-0.1	0.9	3.5
민간수요	-1.1	-1.0	0.0	-0.2	0.8	3.4
민간최종소비지출	-0.8	-0.3	-0.3	-0.6	1.0	4.0
민간주택	1.4	-1.2	-1.1	-2.6	1.6	6.7
민간기업설비	-2.1	-0.1	2.1	-0.4	0.9	3.6
민간재고변동	(-0.1)	(-0.5)	(-0.1)	(0.3)	(-0.1)	-
공적수요	-0.9	0.1	-0.4	0.1	0.9	3.7
정부최종소비지출	-1.2	0.6	-0.1	0.3	0.1	0.3
공적고정자본형성	1.0	-1.9	-1.7	-1.1	4.5	19.5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sup>2)</sup>	(1.7)	(-0.3)	(0.2)	(-0.5)	(-0.1)	-
재화·서비스 수출	3.2	0.1	3.0	-4.6	1.4	5.9
재화·서비스 수입	-4.1	1.3	2.0	-2.5	1.7	7.1
명목 GDP	2.0	-0.1	0.7	-0.2	1.8	7.4
GDP 디플레이터	1.4	1.0	0.6	0.3	1.0	-

주: 1. (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일본 내각부, 「2024년4~6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및 p. 13 표 2-3 재구성



## 독일

###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2분기 독일 고용률 발표 (2024. 8. 16.)<sup>27)</sup>

- 독일의 2024년 2분기 고용률은 약 4,610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0.1%(5만 4천명), 전년 동기 대비 0.4%(16만 7천명) 증가
- 봄철 외부 일자리의 전반적인 증가로 2분기

- 고용률은 계절조정되었으며, 계절조정 없는 2분기 고용률은 1분기 대비 0.5%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서비스업(0.7%)이었으며, 제조업에서는 하락세가 지속되어 -0.5%를 기록
- 유럽 통계청에 따른 EU 및 유로지역의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2분기 고용률은 각각 0.7%, 0.8% 증가하였으며, 이는 독일(0.4%)보다 높은 수치

27) 독일 연방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stagnant in 2nd quarter of 2023," 2024. 8. 1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14\\_1332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14_13321.html), 검색일자: 2024. 8. 19.

<표 11> 독일 고용률 증가율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0.4	0.3	0.2	0.2	0.2	0.2	0.0	0.1	0.1	0.1
전년 동기 대비	1.6	1.6	1.2	1.1	0.9	0.8	0.7	0.5	0.4	0.4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stagnant in 2nd quarter of 2023," 2024. 8. 1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14\\_1332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14_13321.html), 검색일자: 2024. 8. 19.

<표 12>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연간			반기	
	2021년	2022년	2023년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순용자(+·순차입-)	-116.4	-84.9	-107.5	-39.3	-38.1
일반정부 수입	1,747.9	1,852.6	1,917.4	929.4	973.5
일반정부 지출	1,864.3	1,937.5	2,025.0	968.8	1,011.6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Important economic indicators,"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National-Accounts-Domestic-Product/Tables/domestic-product-important-economic-indicators.html>, 검색일자: 2024. 8. 27.; "Government Revenue and Expenditure since 1991 - Semi-annual and annual results," [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National-Accounts-Domestic-Product/Tables/domestic-product-revenue-expenditure1991-pdf.pdf?\\_blob=publicationFile](https://www.destatis.de/EN/Themes/Economy/National-Accounts-Domestic-Product/Tables/domestic-product-revenue-expenditure1991-pdf.pdf?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4. 8. 27.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 적자 통계 발표(2024. 8. 27.)<sup>28)</sup>

※ 연방 통계청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에서 정의하는 재정수지와 재정통계에서 정의하는 재정수지에는 방법론적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국민계정에서는 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대출 및 상환, 자산 매각 및 매입과 같은 금융거래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지만, 재정통계에서는 국가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여 재정수지를 계산<sup>29)</sup>

- (재정수지) 독일의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는 전년 동기 대비 13억유로 감소한 381억유로(GDP 대비 1.8%)
  -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46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주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32억유로 증가한

72억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전년 동기 대비 39억유로 증가한 64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

- 사회보장부문은 2024년 상반기에 20억유로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으나, 2023년 상반기의 96억유로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
- (수입)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 수입은 9,735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 2024년 상반기 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은 2.5%, 소득세 수입은 4.1% 증가

28) 독일 연방 통계청, "Staatsdefizit sinkt im 1. Halbjahr 2024 leicht auf 38,1 Milliarden Euro," 2024. 8. 27.,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26\\_813.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26_813.html), 검색일자: 2024. 8. 28.

29) Otto Dietz, *Finanzierungssaldo des Staates – einige methodische Anmerkungen*, Statistisches Bundesamt, 2006.

- 2023년 7월부터 지속되는 견고한 노동시장, 임금인상, 보험료 인상 등으로 사회공헌 기여금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 (지출) 2024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 지출은 1조 116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 2024년 상반기 보조금은 전년 동기 대비 39.8% 감소하였으며, 주로 2023년 말 종료된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에 기인
- 전년 동기 대비 사회보장 수혜금, 정부 이자 지출, 총투자 역시 각각 6.7%, 31.9%, 9.8% 증가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2분기 독일 GDP 성장률 발표(2024. 8. 27.)<sup>30)</sup>

- (전분기 대비) 독일의 2024년 2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는 전분기 대비 0.1% 감소
- 전분기 대비 정부소비지출은 1.0% 증가한 반면, 민간소비는 0.2% 감소

- 전분기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특히, 기계, 장치 및 차량 부문에서 -4.1%로 크게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독일의 2024년 2분기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
- 장비투자 -6.5%, 건물투자 -3.2% 등 전년 동기 대비 투자가 크게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0.3% 증가, 수입은 2.0% 감소
  - 상품수출은 0.4%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출은 0.3% 감소
  - 상품수입은 3.7% 감소한 반면, 서비스 수입은 2.3% 증가

- 2024년 2분기 EU의 GDP 성장률은 0.3%이며, 독일의 성장률은 -0.1%로 EU전체 및 주요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
- 2024년 2분기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은 각각 0.8%, 0.3%, 0.2%

<표 13> 독일 GDP 성장률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0.4	0.0	0.6	-0.5	0.1	-0.1	0.2	-0.4	0.2	-0.1
전년 동기 대비	4.0	1.2	1.6	-0.1	0.6	-0.4	-0.7	-0.4	-0.8	0.3

주: 1.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계절 및 달력효과 조정 값  
2.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값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2. Quartal 2024," 2024. 8. 27.,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25\\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25_811.html), 검색일자: 2024. 8. 28.

30) 독일 연방 통계청, "Gross domestic product stagnant in 2nd quarter of 2024," 2024. 7. 30.,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7/PD24\\_289\\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7/PD24_289_811.html), 검색일자: 2024. 8. 6.;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2. Quartal 2024," 2024. 8. 27.,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25\\_81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8/PD24_325_811.html), 검색일자: 2024. 8. 28.



프랑스

가치세(+10억유로) 수입의 증가를 반영

■ 프랑스 예산국, 2024년 2분기 중앙정부 예산집행 결과 발표(2024. 8. 2.)<sup>31)</sup>

- (재정수지) 2024년 2분기 프랑스의 총재정수지는 -1,034억 7천만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26억유로 개선
- (재정지출) 2024년 2분기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2,305억 7천만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7억유로(2.1%) 증가
  - 교사 임금 인상, 단기 및 장기 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증가 반영
- (재정수입) 2024년 2분기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1,713억 4,200만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01억 7,600만유로(6.3%) 증가
  - 소득세(+8억유로), 법인세(+9억유로), 부가

■ 프랑스 통계청,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4. 7. 30.)<sup>32)</sup>

- 2024년 2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로, 완만한 성장을 기록
  - 수출이 0.6% 증가하여 대외무역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0.2%p를 기록
  - 가계소비는 전분기 -0.1%에서 0.0%로 0.1%p 증가했고, 국내수요의 실질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0.1%p를 기록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총고정자본형성이 전분기 -0.4%에서 0.1%로 회복

■ 프랑스 통계청, 2024년 2분기 실업률 발표(2024. 8. 9.)<sup>33)</sup>

<표 14> 프랑스 2024년 2분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2년 2분기	2023년 2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61,328	-96,372	-88,573	-
재정지출(Dépenses)	237,987	260,665	263,650	1.1
재정수입(Recettes)	176,659	164,293	175,078	6.6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14,756	-19,810	-14,897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76,084	-116,181	-103,470	-

출처: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0 juin 2024," 2024. 8. 2.

31)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0 juin 2024," 2024. 8. 2.,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23567>, 검색일자: 2024. 8. 19.

32)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by 0.3% in Q2 2024," 2024. 7. 30.,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237184>, 검색일자: 2024. 8. 19.

33)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4,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d by 0.2 points," 2024. 8. 9.,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8239957>, 검색일자: 2024. 8. 19.

<표 15> 프랑스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sup>1)</sup>

(단위: 전분기 대비, %, %p)

구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Q3	Q4	Q1	Q2		
실질 GDP 성장률	0.1	0.4	0.3	0.3	1.1	1.0
가계 소비	0.6	0.1	-0.1	0.0	0.9	0.3
정부 소비	0.4	0.4	0.6	0.3	0.8	1.4
총고정자본형성 <sup>2)</sup>	-0.1	-0.9	-0.4	0.1	0.7	-1.0
수출	-1.2	0.7	0.7	0.6	2.5	1.8
수입	-0.8	-2.1	-0.3	0.0	0.7	-2.0
GDP 기여도	국내수요 <sup>3)</sup>	0.4	0.0	0.0	0.1	0.3
	재고투자	-0.2	-0.6	0.0	0.0	-0.5
	대외무역	-0.1	1.1	0.3	0.2	0.6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출처: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by 0.3% in Q2 2024," 2024. 7. 30.

<표 16>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p)

구분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증감		2024년 2분기 실업자 수(천명)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2	7.4	7.5	7.5	7.3	-0.2	0.1	2,293
15~24세	16.9	17.7	17.5	18.1	17.7	-0.4	0.8	595
25~49세	6.6	6.8	7.0	6.8	6.7	-0.1	0.1	1,191
50세 이상	5.1	5.1	5.0	5.1	5.1	0.0	0.0	507
남자	7.3	7.5	7.6	7.6	7.3	-0.3	0.0	1,168
15~24세	18.0	18.9	18.1	19.0	17.5	-1.5	-0.5	321
25~49세	6.5	6.5	6.9	6.6	6.5	-0.1	0.0	590
50세 이상	5.1	5.1	5.1	5.2	5.1	-0.1	0.0	258
여자	7.1	7.4	7.4	7.3	7.4	0.1	0.3	1,124
15~24세	15.7	16.4	16.7	16.9	17.9	1.0	2.2	274
25~49세	6.7	7.1	7.1	7.0	6.9	-0.1	0.2	601
50세 이상	5.1	5.2	4.9	4.9	5.0	0.1	-0.1	249
장기실업률	1.8	1.8	1.8	1.8	1.7	-0.1	-0.1	539
고용률	68.6	68.4	68.5	68.8	69.0	0.2	0.4	-

출처: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4,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d by 0.2 points," 2024. 8. 9.

- 프랑스의 2024년 2분기 실업률은 7.3%로 전분기 대비 0.2%p 하락하고, 전년 동기 대비 0.1%p 상승함
- 15~24세 실업률은 17.7%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
- 25~49세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1%p 낮은 6.7%, 50세 이상 실업률은 5.1%로 전분기와 동일
- 고용률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69.0%를 기록



영국

- 영국 재무부, 공공지출 감사(audit of public spending) 결과 발표(2024. 7. 29.)<sup>34)</sup>
  - (배경) 지난 7월 4일에 조기 총선을 통해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7월 8일에 신임 재무부 장관 레이첼 리브스는 2024~2025회계연도 공공지출에 대한 감사를 지시
  - (감사 결과) 자원(경상) 부처별 지출한도(RDL)에서 2024년 봄 예산 대비 219억파운드의 초과 지출이 예상되고, 이러한 초과 지출 압력의 원인은 다음 4가지로 제시
    - 2021년 지출검토(Spending Review)<sup>35)</sup> 이후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unfunded) 여러 정

책 결정으로 인해 2024-25회계연도 지출 압력이 총 26억파운드 증가

- 2021년 지출검토에서 2024-25회계연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할 때 예측된 향후 3년의 누적된 물가상승의 영향이 예상보다 커 최소 150억파운드의 지출 압력이 증가
-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망명과 이민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철도 승객 수의 더딘 회복 등 국내외의 최근 이슈로 인해 지출 압력이 상당히 증가
- 2021년 지출검토에서 공공부문 근로자 급여 인상률을 향후 3년 동안 각각 3%, 2%, 2%로 적용하였으나, 실제로는 2022-23회계연도에 5%, 2023-24회계연도에 6% 증가하였고,

<표 17> 공공지출 감사에 따른 즉각적 절감 조치

(단위: 백만파운드)

부처	절감 내용	절감액	
		2024-25 회계연도	2025-26 회계연도
모든 부처	행정 예산 2% 삭감, 커뮤니케이션(의견청취, 공청회 등) 관련 비필수 지출 중단, 2024-25회계연도 컨설팅 관련 비필수 지출 중단, 2025-26회계연도 컨설팅 지출 절반 삭감	3,150	3,150
노동·연금부	2024-25회계연도 겨울부터 동절기 연료 보조금(Winter Fuel Payment) 대상 축소	1,400	1,500
내무부	르완다 이주 파트너십 종료 및 「불법이주법(Illegal Migration Act)의 소급 적용 종료	800	1,400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투자기회기금(Investment Opportunity Fund) 사업 및 기타 소규모 프로젝트 철회	70	50
보건·사회복지부	성인 사회적 돌봄 비용 개혁(adult social care charging reform, 돌봄 비용 부담 상한 설정, 자산에 따른 돌봄 비용 차등 지원 등) 중단	30	1,075
교통부	교통 인프라 포트폴리오 검토, A303 스톤헨지 터널 및 A27 계획 철회, 철도 복원 프로그램 철회	0	785
교육부	A레벨(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대체하는 고급영국표준(Advanced British Standard) 철회	0	185
합계		5,455	8,145

출처: HM Treasury, "Fixing the foundations - Public spending audit 2024-25," 2024, p. 9, Table 2 재구성

34) HM Treasury, "Fixing the foundations: public spending audit 2024-25," Policy paper, 2024. 7. 29.,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ixing-the-foundations-public-spending-audit-2024-25>, 검색일자: 2024. 8. 19.

35) 보통 향후 3년의 기간에 대해 각 연도의 정부 부처별 지출 한도를 설정

이에 따라 2024-25회계연도의 급여 지출 압력 또한 증가

- (즉각적 조치) 보수당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 중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정책을 철회하는 등 향후 2년간 약 135억파운드를 절감
  - (중장기적 조치) 공공지출 통제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시행
    - 추가적인 절감을 파악하고 2024-25회계연도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재확정하여 이를 2024년 10월 30일에 가을 예산안<sup>36)</sup>을 통해 발표
    - 2025년 봄에 지출검토를 통해 중기적인 지출 통제를 시행하고 정부의 광범위한 재정 전략에 따라 지출 정책을 설정
    - 지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고, 재무부와 예산책임청이 공유하는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여 초과 지출 압력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통제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 인하 (5.25 → 5.00%) 결정(2024. 8. 1.)<sup>37)</sup>
- (경제현황 논의) 통화정책위원회는 기준금리 투표에 앞서 세계경제 및 영국경제 전반에 대

해 논의

- (국제 경제) 세계 GDP는 2024년 1분기에 0.5% 성장하였고, 2분기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미국은 가계 소비 강세가 연초 이후 다소 완화되었으나, 강력한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로 상쇄되어 GDP는 1분기에 0.4%, 2분기에 0.7% 성장하였고, 하반기에는 분기별 0.5%씩의 성장 예상
-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의 정점 대비 하락하였으나, 목표(2%)보다 다소 높은 수준(각각 6월 2.5%, 7월 2.6%)을 기록
- (영국 경제) 영국의 GDP 성장률은 1분기에 0.7%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성장세는 2분기에도 지속되었으나 이후 3분기에 0.4%, 4분기에 0.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최근 가계 실질 소득의 강한 성장은 소비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 통화 정책 강화는 수요에 계속하여 부담으로 작용

<표 18>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3년								2024년				
	2.2	3.23	5.11	6.22	8.3	9.21	11.2	12.14	2.1	3.21	5.9	6.20	8.1
금리	4.00	4.25	4.50	5.0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0

출처: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4. 8. 1.

36) 보수당 정부하에서 지난 3월에 봄 예산안이 발표된 바 있음

37) Bank of England, "Bank Rate reduced to 5% - August 2024," News & Events, 2024. 8. 1.,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4/august-2024>, 검색일자: 2024. 8. 5.,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Report - August 2024*, 2024. 8.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5월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연율)은 목표치인 2%를 하회하였고 6월에도 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국내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해 하반기에 2.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리 인하) 통화정책위원회의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4명은 5.25%로 유지할 것을 선호하였으나, 5명은 5.00%로 인하 의견을 제시

- 질소득 증가에 따른 가계지출 증가 등이 성장 회복의 주요 요인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2024년 4.3%, 2025년에는 4.4%로 전망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5년 하반기 중앙은행의 목표범위인 2~3%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물가상승률 목표범위의 중간지점에 도달할 전망
  -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예상했던 속도보다 느리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생계비 완화 조치<sup>39)</sup>로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8월 회의에서 중앙은행 이사회는 기준금리 목표를 4.35%로 동결하기로 결정



### 호주

- 호주 중앙은행(RBA), 2024년 8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동결 발표(2024. 8. 6.)<sup>38)</sup>
  - (경제) 호주의 2025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2.3%)보다 상향조정된 2.5%로 전망
    - 예상보다 강한 공공수요, 소비수준 증가, 실

<표 19>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4년 6월	2024년 12월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26년 6월	2026년 12월
GDP 성장률	0.9	1.7	2.6	2.5	2.5	2.4
(5월 전망)	(1.2)	(1.6)	(2.1)	(2.3)	(2.4)	(n/a)
실업률	4.0	4.3	4.4	4.4	4.4	4.4
(5월 전망)	(4.0)	(4.2)	(4.3)	(4.3)	(4.3)	(n/a)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3.0	2.8	3.7	3.2	2.6
(5월 전망)	(3.8)	(3.8)	(3.2)	(2.8)	(2.6)	(n/a)

주: 전망은 7월 31일 기준. 기준금리는 2025년 초까지 현재 목표수준인 4.35%를 유지한 후 2026년 말 약 3.3%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 인구증가율은 2023년 3분기 2.6%로 정점을 찍은 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1.4%로 감소할 것으로 가정. 실업률은 분기별 평균

출처: 호주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August 2024," 2024. 8. 6., p. 6, Table 발췌

38)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August 2024," 2024. 8. 6.,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4/aug/contents.html>, 검색일자: 2024. 8. 19.

39) 개인소득세 감면, 에너지 요금 지원, 임대료 지원, 의약품 비용 지원, 학자금 이자 상환 지원 등 2024-25회계연도 예산에 포함된 조치



## 네덜란드

### ■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CPB), 2025년 거시경제전망 발표(2024. 8. 16.)<sup>40), 41)</sup>

※ 정부는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9월 셋째주 화요일 예산의 날(Budget Day)에 발표될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거시경제 전망치를 예측하며, 중앙정책기획국(CPB)은 예산의 날에 2025년 거시경제전망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

- (경제전망) 네덜란드 경제는 지난 몇 분기 동안 경기침체를 겪은 후 임금 상승과 세계 무역의 회복으로 향후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며, GDP 성장률은 2024년 0.6%, 2025년 1.6%로 전망
  - 경제성장은 부분적으로 가계소비 증가에 기인하며 임금증가율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게 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회복되어

2024년과 2025년 구매력이 각각 2.5%,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2.2%, 2025년 2.6%, 2026년 3.3%,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4년 45.3%, 2025년 46.9%, 2026년 48.4%로 재정상태가 점차 악화될 전망
  - 향후 몇 년 동안 재정적자는 확장적 재정정책, 인구고령화,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여 EMU 한도 값인 GDP 대비 3%를 초과할 것이며, 추가적인 정책이 없다면 현 정부 임기 이후에도 재정적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임
    - 이는 향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급격

<표 20> 주요 거시경제 및 정부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내총생산(GDP)	5.0	0.1	0.6	1.6
가계소비	6.9	0.8	0.7	2.8
정부소비	1.3	2.9	2.6	1.3
기업투자	5.6	-9.1	-3.2	3.9
주택투자	1.1	-1.5	-1.1	5.0
수출	4.4	-0.5	-0.4	2.4
수입	4.4	-1.8	-0.7	3.7
인플레이션(HICP)	11.6	4.1	3.5	2.8
임금증가율	3.2	6.6	7.1	5.2
실업률	3.5	3.6	3.7	3.0
일반정부 재정수지	-0.1	-0.4	-2.2	-2.6
국가채무	48.3	45.1	45.3	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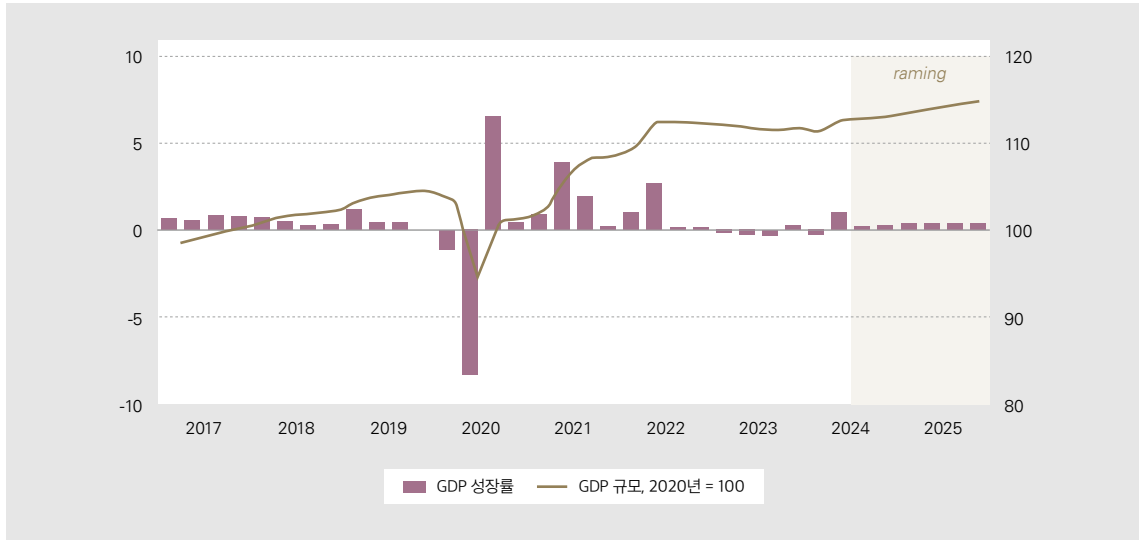
출처: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Augustusraming 2024," 2024. 8. 16.

40)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Augustusraming 2024(cMEV 2025)," 2024. 8. 16., <https://www.cpb.nl/augustusraming-2024-cmev-2025>, 검색일자: 2024. 8. 19.

41) 경제전망은 2024년과 2025년 단기 전망치, 재정전망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중장기 전망치를 제시

[그림 3] 실질 GDP 성장을 추이

(단위: %)



출처: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Augustusraming 2024,” 2024. 8. 16.

한 긴축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sup>42)</sup>

- 국가채무는 상승추세에 있으며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8년에는 채무가 GDP 대비 70%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EMU 기준인 60% 한계치를 초과함\*

• 상승세인 국가채무는 현재의 정책이 미래 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는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

\* 네덜란드는 유럽연합의 안정성장 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규정한 GDP 대비 60%의 국가채무 비율을 재정목표로 설정



스웨덴

[예산·결산 등]

■ 스웨덴 재무부, 스웨덴 경제 현황 및 2025년 예산 계획 발표(2024. 8. 21.)<sup>43)</sup>

● (경제 현황)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목표치인 2.0%(CPIF 기준)<sup>44)</sup>를 약간 밑도는 1.9%로 전망

- 스웨덴 경제 성장은 지난 2년간 정체되었으며 2024년 2분기 GDP가 감소했지만, 2024

42) 연립내각합의에서는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로 인해 구조적 개혁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여 즉흥적인 긴축 조치를 마련해야 할 위험이 있음

43) 스웨덴 재무부, “Lågkonjunktur i svensk ekonomi, men ljusare framtidsutsikter,” 2024. 8. 22.,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8/lagkonjunktur-i-svensk-ekonomi-men-ljusare-framtidsutsikter/>, 검색일자: 2024. 8. 23.

44) 스웨덴 통계청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계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스뱅크(Riksbank)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사용. CPI와 CPIF의 차이점은 CPIF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이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 또한 에너지요금을 제외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XE)도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자주 사용(‘재정동향’ 2024년 1월호 참고)

- 년 말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
- 2025년과 2026년에는 민간 소비와 특히 주택 투자 증가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노동 시장은 2023년부터 실업률이 증가하고, 2024년까지 낮은 노동 수요를 유지하겠으나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6월 경제 전망의 전반적인 전망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며, 스웨덴 경제는 아직 침체에 있으나 앞으로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보임
  - 금융 시장의 혼란, 해외 경제 및 지정학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존재
  - (2025년 예산) 2025년 스웨덴 개혁 예산에 약 600억크로나가 투입될 계획
    - 더욱 부유하고 안전한 스웨덴을 건설하는데 집중하여 ① 가계 구매력 및 노동 우선 원칙<sup>45)</sup>을 회복하고, ② 인프라·연구 및 교육에 대하여 투자하며, ③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에 투자
  -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부 장관은 “스웨덴 경제는 현재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스웨덴을 더 강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조치에 초점을 맞춰 2025년 개혁 예산에 약 600억크로나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언급

&lt;표 21&gt; 2023~2027년 스웨덴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연간 변화율, %)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4. 6. 24.	GDP	-0.2	1.4	2.4	3.1	2.2
	CPI	8.5	2.8	0.9	1.7	2.1
	CPIF	6.0	1.9	1.7	2.0	2.0
	민간소비	-2.3	1.0	2.6	3.8	3.2
	실업률(15~74세 노동력)	7.7	8.4	8.3	7.8	7.6
	고용률(15~74세 노동력)	69.4	69.1	69.4	69.8	70.0
	정책 금리	3.46	3.73	2.70	2.25	2.25
2024. 8. 22.	GDP	-0.2	0.8	2.5	3.2	2.4
	CPI	8.5	2.8	0.9	1.4	2.1
	CPIF	6.0	1.9	1.7	2.0	2.0
	민간소비	-2.3	0.3	2.9	4.1	3.1
	실업률(15~74세 노동력)	7.7	8.3	8.3	7.9	7.6
	고용률(15~74세 노동력)	69.4	69.3	69.6	69.9	70.2
	정책 금리	3.46	3.66	2.57	2.00	2.00

출처: 스웨덴 재무부, “Key indicators forecast 22 August 2024,” 2024. 8. 22., <https://www.government.se/contentassets/c0c47d4b1a534b1bb574c73530a096f8/key-indicators-forecast-22-august-2024.pdf>, 검색일자: 2024. 8. 23.

45)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2024년 4월호 “스웨덴 재무부, 2024년 춘계재정정책법안 발표(2024. 4. 15.)” 참고

■ 스웨덴 노동부, 소득 기반 실업 보험에 대한 설명  
(2024. 8. 13.)<sup>46), 47), 48)</sup>

- 지난 6월 18일 스웨덴 의회는 소득 기반 실업 보험 개혁 법안을 통과시킴
  - 실업 보험 개혁은 40년 만에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실업 보험이 소득 기반으로 된다는 점이며, 보상 수준은 신청자의 소득 손실을 기준으로 제공
    - 즉, 보상의 기초가 되는 계산이 근로 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확실하며 확인이 어려운 근로 시간보다 일정한 수입을 얻었는지를 쉽게 계산 가능
    - 따라서 새로운 실업 보험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하고, 현대화·간소화<sup>49)</sup>되며 부정 수급을 줄여 모두에게 더 많은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새로운 제도는 2025년 10월 1일에 도입될 예정
- 정부의 실업 보험 기금 개혁은 무엇보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상을 확실하게 삭감하여

노동 우선 원칙을 강화

- 실업자가 된 사람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능한 짧은 기간에 실업에서 고용으로 이동하도록 장려
  -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실업 전의 소득과 실업 보험 가입 기간, 실직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보상을 받게 됨
    - 실업급여 한도는 3만 4천크로나로 인상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도 높아짐
  - 실업급여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실직 기간이 길어지면 급여가 줄어듦
    - 실업급여는 지급일 100일 이후부터 10%p 줄어들고, 200일이 지나면 5%p가 더 줄어듦
  - 실업급여 지급 기한인 300일이 지나도 실직 상태인 사람은 활동 지원금(최대 3만크로나)을 받을 수 있으며 100일마다 5%p씩 감액되어 365크로나까지 지원
    - 활동 지원금의 최소 수준이 1일 기준 223 크로나에서 365크로나로 인상
- 정부는 새로운 실업 보험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5천만크로나를 지원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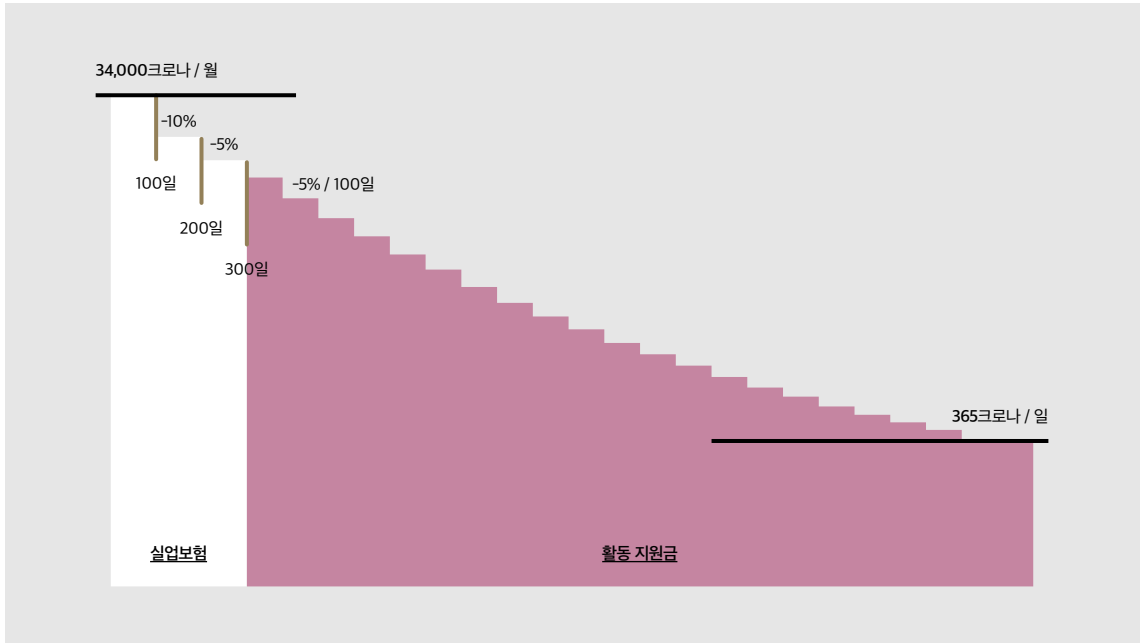
46) 스웨덴 노동부, "Så stärker den nya a-kassan arbetslinjen," 2024. 8. 13.,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8/sa-starker-den-nya-a-kassan-arbetslinjen/>, 검색일자: 2024. 8. 14.

47) 스웨덴 노동부, "Sveriges a-kassor får 50 miljoner kronor till systemutveckling för den nya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2024. 6. 27.,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6/sveriges-a-kassor-far-50-miljoner-kronor-till-systemutveckling-for-den-nya-arbetsloshetsforsakringen/>, 검색일자: 2024. 8. 22.

48) 스웨덴 노동부, "Frågor och svar om en inkomstbaserad arbetslöshetsförsäkring," 2024. 2. 14.,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2/fragor-och-svar-om-en-inkomstbaserad-arbetsloshetsforsakring/>, 검색일자: 2024. 8. 22.

49) 보상의 기준이 근로 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주가 스웨덴 국세청에 제출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그림 4] 스웨덴 소득 기반 실업 보험 및 활동 지원금 지급 기준



출처: 스웨덴 노동부, “Så stärker den nya a-kassan arbetslinjen”의 동영상상을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https://video.qbrick.com/play2/embed/qbrick-playerr?accountid=3175841&mediald=aca8a329-0c08-47bb-81b5-61d04ee95e9c&configid=qbrick-player&pageStyling=adaptive&autoplay=false&repeat=false&sharing=true&volume&language=sv&pageTitle=regeringen.se>, 검색일자: 2024. 8. 28.

# 재정포럼

2024년 9월호 통권 제339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24년 9월 19일 발행 / 통권 제339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온디자인 TEL: 042-255-6225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